議政白書

제3집 [제2대 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 3 집

議政白書

- 제2대 후반기-

(2000. 7. 7 ~ 2002. 6. 30)

蔚山廣域市北區議會

▲ 신청사 본회의장 전경

▲ 구청사 본회의장 전경

구의상징물

우리구의 마크

- 녹색부분 : 산, 육지-자연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의　　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중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우리구의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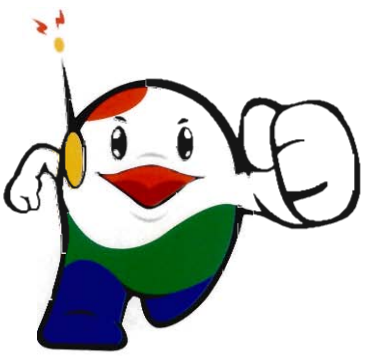

차돌이

- 컨　　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 돌고래
- 의　　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의미

구 화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 목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 조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발 간 사

제3집 의정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구성된 제3대 북구의회가 문을 활짝 연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제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앞으로 의정운영의 지침이 될 세 번째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북구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3만 구민여러분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빛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고를 다하여 알차게 마무리 하신 진한길 의장님을 비롯한 제2대 후반기 의원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북구청장 이하 400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7년 7월 첫 발을 내딛은 우리 북구의회가 걸어온 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북구의회의 역사가 짧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방자치의 경륜을 한 단계씩 쌓아온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난 초대와 2대 의회를 거치면서 열악한 현실과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대적인 사명을 충실히 다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2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모든 면을 고스란히 담은 제3집 의정백서를 통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뒤돌아보고 자성의 기회를 갖는 한편 과거를 발판삼아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제3집 의정백서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의회를 보다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21세기 북구의회의 발전적인 운영모델을 정립하는데 지침서로서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김 진 영

축 간 사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제2대 의회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의정백서 제3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북구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모두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봉사를 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주민의 소망을 수렴하는 의회로서 그 위상을 정립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97년 최초 개원하여 비록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의원님들께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주심으로써 주민화합의 구심체 역할 및 의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셨습니다.

의정백서는 북구의회의 살아 숨쉬는 영광과 시련의 극복과정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아울러 13만 북구 구민의 의지를 한 데 모아 세계 속으로 웅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번 의정백서의 발간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이 상 범

축 간 사

북구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사료가 되길 …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의정활동의 기록보존 및 의정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2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정백서의 출간을 13만 북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해 오신 북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백서는 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든든한 기초 자료가 되고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통해 영광스런 모습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정백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 · 현직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국회의원 윤 두 환

의장단(재임기간:2000. 7. 7 ~ 2002. 6. 30)

의 장

진 한 걸(양정동)

부 의 장

박 광 식(강동동)

의 원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농소1동	 김 수 헌 ('57. 11. 15)	**학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농소 새마을금고 상무 역임 • 농소청년회장,청소년지도위원회장 역임 •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북구생활체육협의회축구연합회 부회장 • 북구도시계획 심의위원 • 농소자율방범대장 • 농소1동 새마을지도자 • 농소새마을금고 감사	(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46-5 성우현대101/802 ☎ 286-4231 (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40-1 ☎ 295-4232 (E-mail) 21gim@hanmail.net 011-837-4231
농소2동	 강 혁 진 ('61. 10. 1)	**학력** • 부산 소년의집 기계공업학교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1,12대 대의원 • 재울 부산소년의집 기계공업학교 동문회장 역임 • 울산참여연대 집행위원 • 울산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 1/1209 ☎ 298-7612 (사) ☎ 280-6845 (E-mail) agnt@simmani.com 018-562-3850
농소3동	 박 춘 환 ('52. 1. 11)	**학력** • 농서초등학교 졸업 • 농소중학교 졸업 • 학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 울산배구협회이사 • 농서초등학교 진흥회 회장 역임 • 농소중학교 육성회 회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농소3동 체육회 부회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쌍용아진 4차 404/1301 ☎ 286-8324 (사) ☎ 282-5229 (E-mail) pchunh@yahoo.co.kr 018-584-7374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소 · 전화
강동동	 박 광 식 ('55. 11. 15)	**학력** • 강동초등학교 졸업 • 강동중학교 졸업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과정) 재학 **경력**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경남도청 기획관리실, 내무국 근무 •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 기산식품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35번지 ☎ 298-6677 011-569-7474
효문동	 류 재 건 ('61. 2. 5)	**학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경력** • 동울산 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역임 •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효문동 주민자치위원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 효문동 방위협의회 위원 • 울산광역시유도회 이사 • 북구도시계획 심의위원 • 효문동 청소년환경봉사단 단장 • 재성종합상사 대표 • 무룡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 288-0203 (사) ☎ 287-5060 ☎ 288-2922 (E-mail) 0203rj@hanmail.net 017-558-8931
송정동	 김 진 영 ('64. 10. 11)	**학력** • 송정초등학교 졸업 • 울산중학교 졸업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엔진노동조합 대의원 역임 • 현대엔진노동조합 4대 부위원장 역임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직전문위원 • 송정초등학교 21회 동기회 고문 •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 송정동 청년회 총무 • 화봉조기회 부회장 • 현대중공업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41-7 ☎ 298-8793 (HomePage) http://kimjinyoung.pe.kr (E-mail) kim8793@liso.net 018-592-1003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전 화
양정동	 진 한 걸 ('53. 11. 15)	**학력** • 미국 TRINITY UNIVERSITY 노동정책과정 수료 **경력** • 현대자동차 노사위원 역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초대 부위원장 역임 • 울산지역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 제2대 울산시의원 역임 • 울산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번지 현대자동차사원 숙소 차/202 ☎ 942-8063 (사) ☎ 219-3185 (E-mail) jinhangul@hanmail.net 011-860-9025
염포동	 윤 종 오 ('63. 8. 14)	**학력** • 부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총무부장 역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실장 역임 • 현대그룹 총연합 조직국장 역임 • 울산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울산핵발전소반대 공동집행위원회 사무국장 • 염포주민문화센타 소장 • 염포초등학교 운영위원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23-5 기산빌라102/402 ☎ 287-8670 (사) ☎ 288-6006 (HomePage) http://yoonjongo.com (E-mail) jongo21@hanmail.net 011-857-0814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 진한걸 의장 개회사 (제34회정례회)

▲ 후반기원구성기념 (본회의장)

▲ 후반기원구성기념 (의원8명)

▲ 회의진행광경 (본회의장)

▲ 행정사무감사실시상황 (소회의실)

▲ 증인선서 (소회의실)

▲ 약수마을진입로공사 현장확인

▲ 농소3동사무소신축부지 현장확인

▲ 강동채석허가지역 현장 (2000. 7)

▲ 태풍 "사오마이" 벼세우기 (2000. 9)

▲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2000. 12)

▲ 신청사의사당 신축현장 (2001. 2)

▲ 농소운동장조성공사 현장 (20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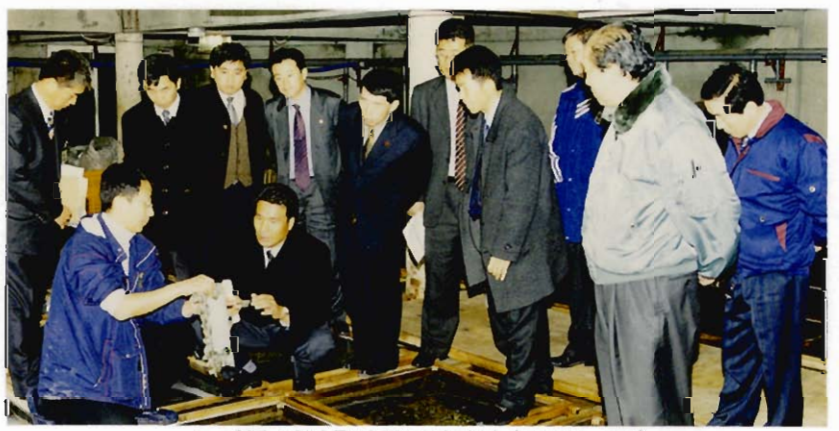

▲ 강동 전복육상종묘배양장 (2001. 12)

▲ 신청사의사당개원기념 (제45회 임시회)

▲ 신청사개청식 진한걸의장 인사

▲ 금목서나무 기념식수

▲ 고흥석문주석앞 기념촬영

▲ 심완구시장등내빈 의사당시찰

▲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2001. 2)

▲ 화장장결사반대 농소3동주민간담회 (2001. 3)

▲ 서산시의회의원내방 접견행사 (2001. 11)

▲ 의원정수조정(강동동)관련 기자회견 (2002. 1)

▲ 공명선거 및 공선법 교육이수 (2001. 2)

▲ 의회방문학생 의회현황설명

▲ 청소년의회학교운영 2000~2001

▲ 제3대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200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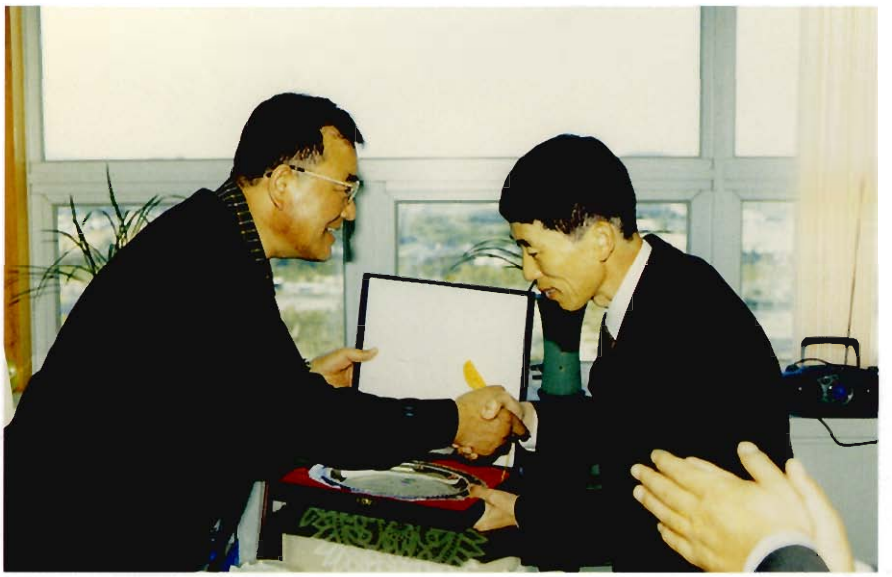

▲ 임기만료기념패전달 (2002. 6. 27 실과장협의회)

目　　次

■ 발간사

■ 축간사

■ 제2대(후반기)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43

제2절 의회연혁 45

제3절 의회일반현황 47

1. 제2대(후반기)의회 원구성 47
2. 의회기구 48
3. 의원현황 48
4. 의회예산(당초)현황 49
5.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49
6. 구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50
7. 신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50
8. 의회의 권한 51
9. 의회의 역할 52

제4절 구정기본현황 53

1. 지역여건 53

2. 구정현황 53
3. 구민생활 54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56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57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61
1. 의회대별 집회현황 61
2. 연도별 집회현황 61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62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63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64

제3장 회의개최사항

제1절 제34회 제1차정례회 107
1. 개최배경 107
2. 개회사 107
3. 의사일정 10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11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11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2
□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113

제2절 제35회 임시회 115
1. 개최배경 115
2. 개 회 사 115
3. 의사일정 11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19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9
□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0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21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3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4
□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125
□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6
제3절 제36회 임시회 129
1. 개최배경 129
2. 개 회 사 129
3. 의사일정 131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33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33
○약수초등학교 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상황 133
□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4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5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36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136
□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강혁진의원) 137

제4절 제37회 임시회 140

1. 개최배경 140

2. 개 회 사 140

3. 의사일정 14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44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144

□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145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6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8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9

□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0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1

제5절 제38회 제2차정례회 153

1. 개최배경 153

2. 개 회 사 153

3. 의사일정 15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57

□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57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8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59

□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60

제6절 제39회 임시회 161
1. 개최배경 161
2. 개 회 사 161
3. 의사일정 16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66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6
□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 167
제7절 제40회 임시회 168
1. 개최배경 168
2. 개 회 사 168
3. 의사일정 17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70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70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보고 170
제8절 제41회 임시회 173
1. 개최배경 173
2. 개 회 사 173
3. 의사일정 17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77
□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 177
□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8
제9절 제42회 임시회 180
1. 개최배경 180
2. 개 회 사 180

3. 의사일정 18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86
□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6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8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89
□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0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93
제10절 제43회 임시회 196
1. 개최배경 196
2. 개 회 사 196
3. 의사일정 19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98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98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198
○농소운동장조성사업 추진상황 199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 200
○2001년도 방역업무 추진상황 201
제11절 제44회 임시회 203
1. 개최배경 203
2. 개 회 사 203
3. 의사일정 20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06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 206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7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10
○ 문예회관건립관련업무 210
○ 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 212
제12절 제45회 임시회 214
1. 개최배경 214
2. 개 회 사 214
3. 의사일정 21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16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6
제13절 제46회 제1차정례회 218
1. 개최배경 218
2. 개 회 사 218
3. 의사일정 22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22
□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 222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24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25
○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 225
○ 2001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 226
제14절 제47회 임시회 228
1. 개최배경 228
2. 개 회 사 228
3. 의사일정 23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34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4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6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38
□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39
제15절 제48회 임시회 242
1. 개최배경 242
2. 개 회 사 242
3. 의사일정 24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45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45
제16절 제49회 제2차정례회 246
1. 개최배경 246
2. 개 회 사 246
3. 의사일정 24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49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9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51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51
□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254
제17절 제50회 임시회 256
1. 개최배경 256
2. 개 회 사 256
3. 의사일정 25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60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60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61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63
제18절 제51회 임시회 265
1. 개최배경 265
2. 개 회 사 265
3. 의사일정 26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69
□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269
□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270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271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2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75
□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276
제19절 제52회 임시회 278
1. 개최배경 278
2. 개 회 사 278
3. 의사일정 28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83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83
□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 건 284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85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86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87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관련 추진상황 287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88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93
제 2절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96
제 3절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8
제 4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02
제 5절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4
제 6절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8
제 7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322
제 8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325
제 9절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7
제10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0
제11절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1
제12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5

제5장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351

1. 감사개요 351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352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353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353
제2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356
1. 감사실시 개요 356
2. 감사실시 경과 357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360
제3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374
제4절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75
1. 시정·건의요구사항 현황 375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76
3.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41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435
1. 감사개요 435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436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437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438
제6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440
1. 감사실시 개요 440
2. 감사실시 경과 441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444
제7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458
제8절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460
1. 시정·건의 요구사항 현황 460
2.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461

제6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511
1. 구정질문 현황 511
2. 서면질문현황 512
3.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512
4. 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539
제2절 4분 자유발언 546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사항 549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571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571
2. 울산시내버스요금 실사일정 조정건의 573
3. 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제정 575
4. 북구지역화장장 유치관련 업무추진상황 576
5.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 586
6.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 588
7.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 촉구 결의 590
제5절 의정활동일지 592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637
2. 초대의원 명단 638
3. 초대의원 사진 639
4. 제2대의원 명단 640
5.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641
6. 역대 구청장 명단 642
7.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642
8. 역대 전문위원 명단 642
9. 구청 간부공무원 명단 643
10. 사무과직원 명단 646
11. 지방선거현황(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647
12. 문화재 현황 651

제1장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의회연혁

제3절 의회일반현황

제4절 구정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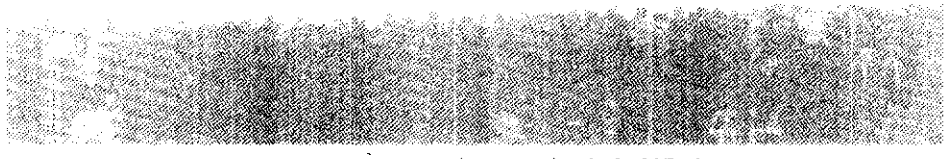

▲ 2001. 1. 1. (07:31) 정자해돋이

제1절 우리 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구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
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 → 8개동

○ 2001. 6. 1 : 청사 소재지 변경
(남구 신정3동 585-9 → 북구 연암동 1004-1)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02. 7. 1 ~ 2006. 6. 30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2대〈후반기〉의회 원구성

○ 의장단 선거 【전반기 의장 임기중 선거】

2000년 7월 1일 10시30분에 개회된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인 박춘환의장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진한걸의원, 부의장에 박광식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8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구 분	1 차	2 차	3 차(결선)	비 고
의 장	진한걸 8표			
부의장	박광식 4표 류재건 4표	박광식 4표 류재건 4표	박광식 4표 류재건 4표	· 연장자 당선

- 의장은 과반수를 얻어 진한걸의원이 당선되었음.
- 부의장은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박광식의원이 당선되었음.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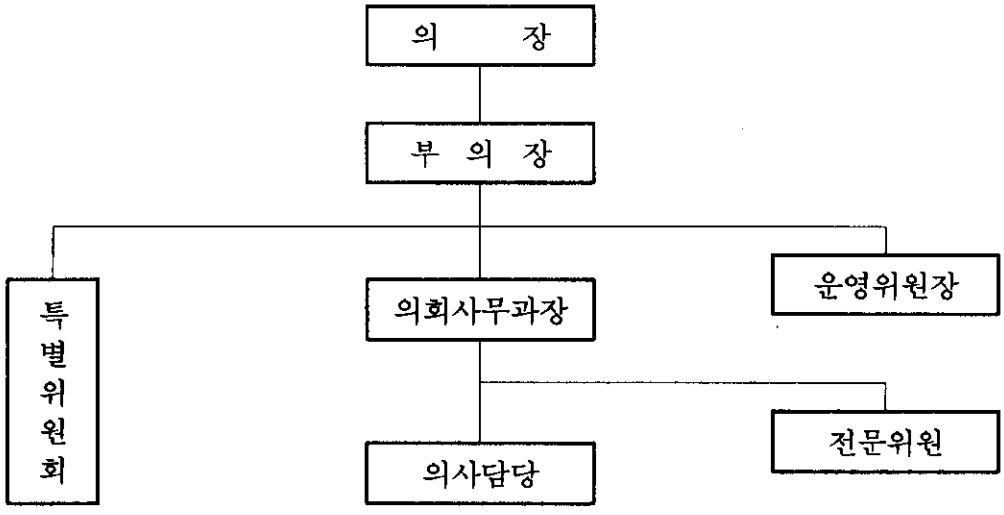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8	1	1	1	1	1	1	1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금융업	회사원	기 타
8	2	1	1	4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독학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수료
8				3	1	3	1

□ 연령별

의원수 \ 연령별	35세미만	35-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8		2	3	3			

□ 성 별

의원수	계	남	여	비고
8	8	8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2000년도	623,408	436,056	187,352
2001년도	688,460	490,488	197,972
2002년도	687,154	483,094	204,060

5. 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원	현원	비 고
계	12	12	
5급(사무과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7급(행 정 직)	3	2	
8급(행 정 직)	0	1	
9급(행 정 직)	1	1	
기 능 직	5	5	필기원2, 운전원1, 속기원2

6. 구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5-9(한국담배인삼공사 임대청사)

○ 면적 : 북구청 7층 346㎡ (105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108.1(32.7)	
소 회 의 실	73.1(22.0)	
의 장 실	45.2(13.6)	
부 의 장 실	29.1(8.8)	
의 원(전 문 위 원)실	27.1(8.2)	
의 회 사 무 과 사 무 실	63.4(19.1)	

7. 신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 (2001. 6. 4 이전)

○ 면적 : 북구청 5층 1,052㎡(318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208.4(63.1)	
방 청 객 실	60.2(18.2)	
소 회 의 실	108.0(32.7)	
의 장 실	70.5(21.3)	
부 의 장 실	60.7(18.4)	
의 원 사 무 실	129.1(39.0)	2인1실 3개
민 원 접 견 실	72.0(21.8)	
의 회 사 무 과	117.4(35.5)	
전 문 위 원 실	36.0(10.9)	
방 송 실 등 5 실	189.4(57.3)	

8.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9.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기본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 시설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02. 6. 30.현재)

□ 면 적

○ 행정구역 —— 157.27㎢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21.74㎢	9.91	0.7	9.22	101.57	0.34

※개발제한구역 80.41㎢(51%)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37,860세대	124,952명	65,016	59,936	569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 황	3국 1실 13과 53담당	1사업소(보건소-1과4담당)	8개동

○ 공 무 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 건 소	동
374명	275	12	29	58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2000년도	39,298	37,774	1,524	37.9%
2001년도	41,132	39,443	1,689	45.0%
2002년도	39,676	39,099	577	49.2%

3. 구민생활(2002.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료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명)				1일 쓰레기 수거량 (수거물)	1일분뇨 수거량 (수거물)
		기관	병상수	소계	일반	조건부	시설		
개소 1,811	개소 369	64	164	698 / 1,515	680 / 1,311	16 / 16	2 / 188	119ton (100%)	88ton (100%)

□ 지역경제

경지면적				5인이상기업체 종업원수	금융기관 (지점수)
소 계	전	답	과수원		
2,850ha	1,006	1,710	134	403개업체 40,514명	35개소

□ 도시건설

도로				주택	상수도			하수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1일당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km	%	km	%	37,006	ton/일	191 ℓ	%	명	41,734	%
178	8.6	197	94.22	95.5%	28,900		66.6	124,952		33.4

□ 교 통

자동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40,408대	30,474	3,093	6,543	298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22개소 25,963명	11 16,002	5 4,779	4 4,836		2 346

4. 동별 인구 · 면적현황

(2002. 6. 30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세대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27	27	124,952 (37,860)	
농소1동	14.90	4 (2개동중복)	17,092 (5,098)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농촌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 있는 **공단 배후의 주거지역**
농소2동	11.42	3 (2개동중복)	23,762 (6,819)	
농소3동	31.01	5	24,633 (7,074)	
강동동	60.65	9	5,468 (1,954)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8	4	18,800 (5,715)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많은 **준공업지역**
송정동	10.79	2	14,076 (3,868)	큰노송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
양정동	6.68	1	11,510 (4,042)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있고, **3,700여평의 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1	9,611 (3,290)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인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와 부산포와 함께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회사가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2002.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6.1	1,061,540	544,960	516,580	5,035
중 구	37.0	233,244	119,615	113,629	435
남 구	71.4	346,112	176,221	169,891	1,259
동 구	35.6	186,233	96,886	89,347	1,336
북 구	**157.2**	**124,952**	**65,016**	**59,936**	**569**
울주군	754.9	170,999	87,222	83,777	1,436

□ 재정규모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1,048,898	706,163	342,735	60.8%
중 구	60,603	58,266	2,337	26.9%
남 구	75,770	70,134	5,636	61.5%
동 구	43,263	42,330	933	48.4%
북 구	**39,676**	**39,099**	**577**	**49.2%**
울 주 군	160,072	119,623	40,449	58.5%

제2장

의회운영현황

- 제1절 집회현황
-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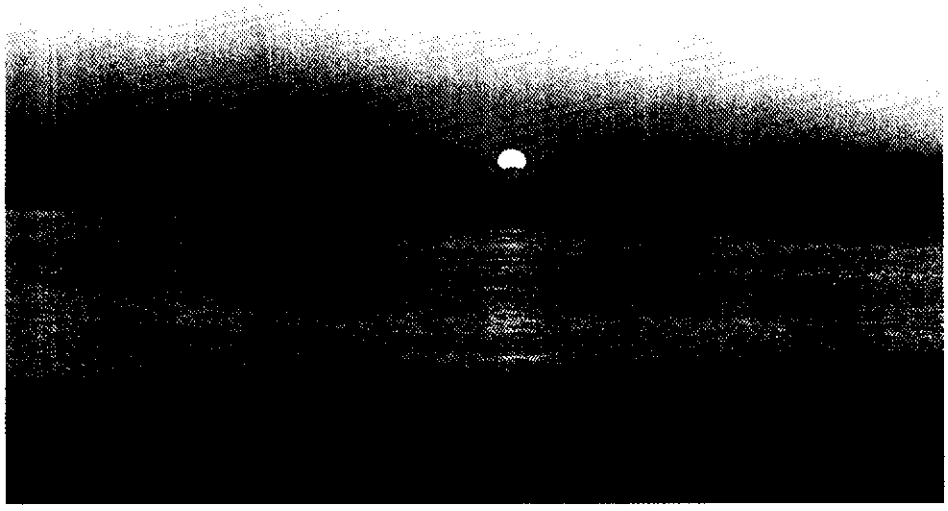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대별 집회현황

구분	연도	정례회		임시회		합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제1대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계	6	140	36	184	42	324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2	35	8	45	10	80
	2001	2	35	9	45	11	80
	2002			2	18	2	18

2. 연도별 집회현황

연도	정례회		임시회		합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7	175	45	209	52	384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2	35	8	45	10	80	〃 (정례회 35일이내)
2001	2	35	9	45	11	80	〃
2002			2	18	2	18	〃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집요구인	집회공고일	집회기간	회기
제34회	정례회		2000.7.3	2000.7.7~7.14	8
제35회	임시회	김진영의원외2인	2000.8.29	2000.9.4~9.7	4
제36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0.10.4	2000.10.10~10.12	3
제37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0.11.7	2000.11.13~11.18	6
제38회	정례회		2000.11.20	2000.11.25~12.21	27
제39회	임시회	윤종오의원외2인	2000.11.16	2000.12.22~12.29	8
제40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1.1.16	2001.1.19~1.19	1
제41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1.2.2	2001.2.8~2.15	8
제42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1.3.22	2001.3.28~4.4	8
제43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1.5.4	2001.5.11~5.12	2
제44회	〃	김진영의원외2인	2001.5.16	2001.5.22~5.23	2
제45회	〃	강혁진의원외2인	2001.6.21	2001.6.27~6.27	1
제46회	정례회		2001.7.2	2001.7.7~7.16	10
제47회	임시회	강혁진의원외2인	2001.9.8	2001.9.15~9.25	11
제48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1.11.3	2001.11. 9~11.13	5
제49회	정례회		2001.11.20	2001.11.26~12.20	25
제50회	임시회	윤종오의원외2인	2001.12.15	2001.12.21~12.27	7
제51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2.1.23	2002.1.29~2.6	9
제52회	〃	윤종오의원외2인	2002.4.4	2002.4.11~4.19	9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2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후반기〉(2000.7.7~2002.6.30)　　2000~2002년도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154	205	8	2	85	9	2	3	0	19	5	72
소계	2000년도	56	82	3	1	42	3	0	1	0	5	0	27
제34회	2000.7.7~7.14	8	12		1	3	1				1		6
제35회	2000.9.4~ 9.7	4	19			14					1		4
제36회	2000.10.10~10.12	3	14			7			1		2		4
제37회	2000.11.13~11.18	6	17	1		10							6
제38회	2000.11.25~12.21	27	11	1		2	2				1		5
제39회	2000.12.22~12.29	8	9	1		6							2
소계	2001년도	80	90	4	1	25	5	2	0	0	11	4	38
제40회	2001.1.19~1.19	1	4								1		3
제41회	2001.2. 8~2.15	8	8			1		2			1	1	3
제42회	2001.3.28~4.4	8	11	1		5	1					1	3
제43회	2001.5.11~5.12	2	7								4		3
제44회	2001.5.22~5.23	2	10			3					2		5
제45회	2001.6.27~6.27	1	3			1							2
제46회	2001.7.7~7.16	10	10		1	2	1				2		4
제47회	2001.9.15~9.25	11	11	1		8							2
제48회	2001.11.9~11.13	5	8			1						1	6
제49회	2001.11.26~12.20	25	12	1		1	3				1	1	5
제50회	2001.12.21~12.27	7	6	1		3							2
소계	20002년도	18	33	1	0	18	1	0	2	0	3	1	7
제51회	2002.1.29~2.6	9	14			8					1	1	4
제52회	2002.4.11~4.19	9	19	1		10	1		2		2		3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 제34회제1차정례회 : 2000. 7. 7~7. 14(8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61	'99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0.6.29 구 청 장	○'9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양정새마을 APT뒤 법면 복구공사외 4건 - 지출결정액 : 225,664,000원 - 지 출 액 : 222,764,630원 - 잔 액 : 2,899,370원	2000.7.14 (제4차) 승인가결
162	1999(1.1~12.31)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0.6.29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63,943,161,806원 - 세출결산액 : 46,626,902,700원 - 세계잉여금 : 17,316,259,106원	2000.7.14 (제4차) 승인가결
16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7.3 구 청 장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 대상조정(안 제2조) - 1급 내지 6급 → 1급 내지 7급	2000.7.14 (제4차) 원안가결
165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000.7.4 구 청 장	○농소2동사무소청사를 냉천마을회외 2인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기 위함. 가. 토지 : 4필지 1,052㎡(318평) - 냉천마을회 : 2필지 829㎡(251평) - 강성한외1명 : 1필지 65㎡(20평) - 유경렬 : 1필지 157㎡(47평) 나. 건물 : 3동 연면적 337㎡(101.94평) ○신축계획	2000.7.10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 신축기간 : 200.7~2001.3월(9개월) - 신축규모 : 지상3층, 270평정도 (1층 민원실과 사무실, 2층주민자치센터와 사무실, 3층 동대본부)	
16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0.7.7 강혁진외2명	○출석일시 : 2000.7.7~7.14(8일간) ○출석사유 : 제1차 정례회	2000.7.7 (제1차) 원안가결
16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7.8 김수헌외2명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7~8월 → 9~10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 변경 : 매년12월1일 → 매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변경 : 제1차정례회 → 제2차정례회	2000.7.13 (제3차) 원안가결

2. 제35회임시회 : 2000. 9. 4~9. 7(4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164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2000.7.3 구 청 장	○기금조성 : 구의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 시비 1억원 지원 ○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증진 사업 또는 활동 ○기금의 관리 : 계좌별도관리, 이자수입금 범위내 지출, 이자수익금의 10%이상 적립 ○기금관리계획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계획안 구의회 제출	2000.7.14 (제4차) 심의보류 2000.9.7 (제4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기금의 결산 :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결산 보고서 제출	
168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7.27 구 청 장	○공유(행정)재산 사용허가제한 사항중 비현실적인 규제폐지 ○토석채취의 목적으로 공유재산대부시 토석채취료의 산정기준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폐지	2000.9.5 (제2차) 원안가결
169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조례안	2000.7.27 구 청 장	○수입증지 취급기관(판매인 포함)에 대한 표시판 설치, 일정량의 증지비치, 정가로 판매토록 의무를 규정한 사항 폐지 ○수입증지관리와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증지취급자에 대하여 장부의 비치·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중 일반판매인에 대하여는 제외	2000.9.5 (제2차) 원안가결
170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7.27 구 청 장	○관련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 검사할 수 있는 규정 폐지	2000.9.7 (제4차) 원안가결
17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4 구 청 장	○한시기구설치(13실과→14실과 단, 증1) - 기구 : 주민자치센터운영단(총무국소관) - 존속기한 : 2001. 6. 30	2000.9.4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72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21 구 청 장	○주민공개의 제한규정 삭제	2000.9.4 (제1차) 원안가결
173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21 구 청 장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규정삭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규정 삭제 ○감독 및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완화	2000.9.4 (제1차) 원안가결
174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21 구 청 장	○채무보증서의 변경·이행절차 개선	2000.9.4 (제1차) 원안가결
175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21 구 청 장	○전보에 관한 일부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단서규정 신설	2000.9.5 (제2차) 원안가결
176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0.8.21 구 청 장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전문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	2000.9.5 (제2차) 원안가결
177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	2000.8.21 구 청 장	○계약서 상의 개인이 구입한 비품 등도 구청장에게 귀속하던 것을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재산은 개인 귀속	2000.9.7 (제4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규정 신설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의 일부 삭제 ○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181	울산광역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 신설 ○시장사용허가 취소요건 완화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 ○사용료 납기 완화"1년분 선납"→"반기납" ○위탁징수자의 보증인 완화 3인→1인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폐지 ○실효성없는 과태료 처분규정 폐지	2000.9.7 (제4차) 수정가결
184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위원의 구성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세분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을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하여 전문인력의 참여를 보장 ○소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규정	2000.9.6 (제3차) 원안가결
185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하역주차구간내에서 일반이용자 주·정차 금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삭제 ○부설주차장의 설비비용에 관한 규정 삭제	2000.9.6 (제3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 폐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 중 상위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	
187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건	2000.8.30 구 청 장	○취득재산 : 건물(5동) - 염포어린이집(양정동 산109번지) - 상방경로당(연암동 378번지) - 재활용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 (연암동 361-1번지) - 호계공설시장 재건축 (호계동 869-1번지)	2000.9.5 (제2차) 원안가결

3. 제36회임시회 : 2000. 10. 10~10. 12(3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신천동 625-1번지 차고지 설치 업무 추진상황보고	2000.10.11 (제2차)
131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999.12.23 구 청 장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건축법령에 의거 광역시 조례로 통일 (※ 1999.12.28(제6차) 심의보류)	2000.10.11 (제2차) 원안가결
178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	2000.10.12 (제3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179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2000.10.12 (제3차) 원안가결
180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이동도서관직원의 임용에 있어 구청장과 협의 규정 삭제 ○이동도서관직원의 인건비 이중규정 삭제 ○수시 지도감독→반기1회로 완화	2000.10.12 (제3차) 원안가결
182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개정 ○융자대상의 이중적 규제제한 삭제 ○융자액 상한 조정	2000.10.11 (제2차) 원안가결
183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광역시 승격과 고교평준화 실시로 범위 삭제 ○장학금 지급정지와 용도가 맞지 않은 규정 삭제	2000.10.11 (제2차) 원안가결
186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8.30 구 청 장	○"대부받은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금지" 규정 삭제 ○"감독관청의 지시엄수" 규정 삭제 ○"관리소홀시 반환을 명함" 규정 삭제	2000.10.11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처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2000.10.12 구 청 장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2000.10.12 (제3차) 보 고
	약수초등학교 앞시내버스차고지 설치반대 결의안	2000.10.12 강혁진의원	○이 지역은 약수초등학생의 유일한 통학로로서 안전문제와 차고지 설치 후의 각종 환경오염과 상습교통체증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정서를 감안하여 차고지설치 반대 결의함.	2000.10.12 (제3차) 원안가결

4. 제37회임시회 : 2000. 11. 13~11. 18(6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처수)
19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 조례안	2000.11.4 윤종오외7명	○적용범위 : 의원임기중 국외연수 ○위원회구성 : 위원장은 부의장, 의장이 추천한의원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5인 ○기 능 : 연수의목적및 필요성, 연수목적지의 적합성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정성등	2000.11.18 (제6차) 원안가결
192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0.11.6 구 청 장	○구청제출예산액 : 62,153,364천원 - 일반회계 : 당초에서 증 10,546,842천원 - 특별회계 : 당초에서 증 479,779천원 - 심사기간 : 2000.11.13~11.16 (4일간) ○삭감내역	2000.11.16 (제4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세 출 : 575,447천원 ○확정예산액 : 62,153,364천원 - 일반회계 : 59,339,031천원 - 특별회계 : 2,814,333천원	
19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기구조정 - 국명칭변경 : 도시개발국→도시건설국 - 과명칭변경 : 건축과→허가과 ○분장사무조정 - 총무국의 지역정보화, 통계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기획감사실 - 도시건설국(허가과 사무는 기존 건축과 사무 포함)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19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372명→374명 (증2명,한시정원) ○연도별 정원 - 2001.7.31까지 : 376명→378명 (증2명) - 2001.8. 1이후 : 374명 (△4명 : 2단계구조조정 3차년도 감축인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 2002.12.까지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195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동 존치 사무 - 기록물(문서 등)의 보존 및 이관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	2000.11.17 (제5차) 부 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장애인 등록 및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 매·화장신고 및 개장신고 -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교부 등 ○강동동 존치 사무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등 - 건축신고수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9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지방세 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및 구세의 징수금 징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197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 삭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 폐지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중개업법 및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폐지 또는 신설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198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판매소의 지정취소 사유중 "봉투판매대금을 구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삭제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199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동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폐지 ○"농소1동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사무위임" 규정 삭제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00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 지정등에 대한 홍보" 규정 삭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대한 홍보" 규정 삭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등에 대한 홍보" 규정 삭제	2000.11.17 (제5차) 원안가결
201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00.11.6 구 청 장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삭제로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 및 여비를 규정한 조례안 폐지	2000.11.13 (제1차) 원안가결
202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2000.11.6 구 청 장	○사업명 : 북구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액 : 4,050백만원 ○회계명 : 일반회계 ○자금의종류 : 청사정비기금 ○차입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융자조건 : 이율 연3% 2년거치10년 균등상환 ○상환재원 : 구비(울산광역시보조금)	2000.11.16 (제4차) 원안가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000.11.18 의장제의	○감사기간 : 2000.11.27~12.3(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2000.11.18 (제6차) 원안가결

5. 제38회제2차정례회 : 2000. 11. 25~12. 21(27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2001년도 중기
재정계획보고</td><td>2000.11.20
구 청 장</td><td>(단위 :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6">중기재정계획('99 - 2003)</th><th rowspan="2">평 균
신장율
(%)</th></tr><tr><th>계</th><th>'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277,339</td><td>53,865</td><td>56,030</td><td>52,833</td><td>55,868</td><td>58,743</td><td>2.3</td></tr><tr><td>일반
회계</td><td>268,036</td><td>51,403</td><td>53,695</td><td>51,403</td><td>54,365</td><td>57,170</td><td>2.8</td></tr><tr><td>특별
회계</td><td>9,303</td><td>2,462</td><td>2,335</td><td>1,430</td><td>1,503</td><td>1,573</td><td>△8.6</td></tr></table></td><td></td></tr>
<tr><td></td><td>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구성의건</td><td>2000.11.21
의장제의</td><td>○위원장 : 류재건의원, 간사 : 김진영의원
○위 원 :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윤종오의원</td><td>2000.11.25
(제1차)
구 성</td></tr>
<tr><td>204</td><td>2001년당초예
산일반특별회
계세입세출예
산안</td><td>2000.11.20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43,926,027천원
- 일반회계 : 42,237,061천원
- 특별회계 : 1,688,966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
- 심사기간 : 2001.12.4~12.20
(14일간)
- 심사내역 : 세입 감2,793,827천원
세출 감3,749,574천원
○확정예산액 : 41,132,200천원
- 일반회계 : 39,443,234천원
- 특별회계 : 1,688,966천원</td><td>2000.12.21
(제4차)
수정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05</td><td>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결의건</td><td>2000.11.20
구 청 장</td><td>(단위 : 천원)
<table><tr><th>기 금 명</th><th>운 영 규 모</th></tr><tr><td>계</td><td>402,936</td></tr><tr><td>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td><td>79,954</td></tr><tr><td>노인복지기금</td><td>108,700</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7,960</td></tr><tr><td>재해대책기금</td><td>155,062</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51,260</td></tr></table></td><td>2000.12.21
(제4차)
원안가결</td></tr>
<tr><td>207</td><td>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의건</td><td>2000.11.23
구 청 장</td><td>○ 우가경노당 신축 : 기부채납취득
(소유자 : 김두조,김작지,김성완)
○사회복지관건립(호계동166-1,126-1,
147,146,145번지 3,671㎡)
○ 농소3동사무소 신축
(천곡동421-12번지 966㎡)
○ 냉천마을회관 건립(신천동 480-11,
481-10번지 160㎡)
※ 수정내용 : 농소3동사무소 신축건
불승인</td><td>2000.12.4
(제2차)
수정가결</td></tr>
<tr><td>208</td><td>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0.11.30
구 청 장</td><td>○기록물(문서등)의 보존 및 이관(총무과)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지방세과)
○장애인등록및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사회복지과)
○매.화장 신고 및 개장신고(사회복지과)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교부등(농림수산과)</td><td>2000.12.4
(제2차)
원안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09</td><td>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td><td>2000.11.30
구 청 장</td><td>○ 운영차량 확보(1대 이상)
○ 사업범위 규정
○ 자료복사료 납부(공무상면제,B5·A4 단면30원, B5·A4단면40원)
○ 운영위탁범위 규정(필요시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td><td>2000.12.4
(제2차)
원안가결</td></tr>
<tr><td></td><td>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td><td>2000.12.20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0.11.27~12.3(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
<tr><th>감사대상
부 서</th><th>감사자료
제출건수</th><th>증인출석
인 원</th><th>참고인
출석인원</th><th>주요감사
실시건수</th></tr>
<tr><td>계</td><td>203</td><td>19</td><td>9</td><td>203</td></tr>
</table>
○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
<tr><th>감사대상
부 서</th><th>계</th><th>시정요구사항</th><th>건 의
사 항</th></tr>
<tr><td>계</td><td>69</td><td>39</td><td>30</td></tr>
</table></td><td>2000.12.21
(제3차)
원안가결</td></tr>
</table>

6. 제39회임시회 : 2000. 12. 22~12. 29(8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10</td><td>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td><td>2000.12.12
구 청 장</td><td>○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업무위탁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처리할 수 없음.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td><td>2000.12.29
(제6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구체적 명시(입주계약체결 등 12개항)	
211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2.12 구 청 장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 기본요금(0.75㎥)11.045원⇒15,209원(37.7%증) 초과요금 (0.1㎥당)772원⇒1,062원(37.5%증) 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177원⇒201원(13.5%증)	2000.12.28 (제5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21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2.12 구 청 장	○보건지소 규정 삭제 ○제증명발급수수료 상향조정 - 500원⇒1,000원(6건) :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기타증명서 - 5,000원⇒10,000원(1건) : 사체검안서	2000.12.29 (제6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213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2000.12.14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62,750,006천원 - 일반회계 : 60,006,166천원 - 특별회계 : 2,743,840천원	2000.12.26 (제3차) 원안가결
214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2.18 구 청 장	○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 조정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대상 조정 총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2000.12.27 (제4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1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12.18 구 청 장	○2000.12.31만료조례 2001.1.1부터 2003.12.31로 연장 또는 조정조례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2000.12.27 (제4차) 원안가결
216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	2000.12.18 구 청 장	○2001. 1. 1 폐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	2000.12.29 (제6차) 원안가결

7. 제40회임시회 : 2001. 1. 19~1. 19(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2001.1.19 구 청 장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보고	2001.1.19 (제1차) 보 고

8. 제41회임시회 : 2001. 2. 8~2. 15(8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18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	2001.1.19 구 청 장	○위원장 변경(구청장⇒부구청장) ○구성위원 변경(기관및단체의장⇒기관	2001.2.12 (제4차)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단체의관계자) ○실무위원회 폐지	원안가결
220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	2001.1.8 윤종오외7명	○화장장유치 사전에 북구주민전체(20세 이상)의 주민투표실시 - 시설규모, 조감도 사전제시 - 인센티브금액 및 배분기준 제시 - 진입전용도로개설 유무 제시 - 주민투표실시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울산광역시장, 북구청장에게 촉구	2001.2.8 (제1차) 원안가결
22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	2001.2.9 윤종오외5명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직사회 내부불신 및 전체사기 저하 우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법 보완 또는 예산범위내에서 일률적 지급 건의 ○건의처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2001.2.10 (제3차) 원안가결

9. 제42회임시회 : 2001. 3. 28~4. 4(8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22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1.3.22 구 청 장	○위원회 위원장1인→2인으로 기능강화 ○위원장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수정가결)	2001.3.28 (제1차) 수정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23</td><td>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1.3.22
구 청 장</td><td>○구성위원 추천 자격범위 확대조정
-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
○ 시행일 : 2001. 4. 27</td><td>2001.3.28
(제1차)
원안가결</td></tr>
<tr><td>224</td><td>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1.3.22
구 청 장</td><td>○가정용 단독주택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차등가격분 50% 인상
<table>
<tr><th rowspan="2">용량별</th><th colspan="2">봉투판매가격
(가정용 단독주택)</th></tr>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10ℓ</td><td>140원</td><td>170원</td></tr>
<tr><td>20ℓ</td><td>280원</td><td>340원</td></tr>
<tr><td>50ℓ</td><td>670원</td><td>830원</td></tr>
<tr><td>100ℓ</td><td>1,330원</td><td>1,650원</td></tr>
</table></td><td>2001.4.2
(제5차)
부 결</td></tr>
<tr><td>225</td><td>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1.3.22
구 청 장</td><td>○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
○명칭 :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
○위치 : 북구 연암동 361-1번지</td><td>2001.4.2
(제5차)
원안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26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2001.3.22 구 청 장	○사업운영 - 재활용품교환판매장의 운영사업 - 민간단체 운영가능, 제경비는 자체수입금의 충당원칙 ※ 수정내용 • 제5조(운영의 위탁)②위탁방법 및 수탁자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 제6조(수탁자 선정) 및 제7조(위·수탁협약) 사항 신설 • 제6조(운영비)① ~ 다만, 구청장은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운영비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 다만, 구청장은 재활용교환 판매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때는 인력·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 제6조(운영비)②인건비·시설물수리비등 중요한 경비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1.4.2 (제5차) 수정가결
227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001.3.22 구 청 장	○보건소신축 ○농소3동사무소신축 ○사회복지관 위치변경및 노인복지관 신축 - 2000년도 의결변경사항임. ○공장용지 지정업체 처분 - '99년 기의결 2년 경과에 따른 재의결사항임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2001.3.29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2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01.3.22 구 청 장	○연안정비사업 계획 - 위치 : 울산광역시북구정자동 639번지선 일대 - 사업종류 : 해안도로 및 호안개설 및 보수, 보강340m ○연안정비사업지인 공유수면 매립계획 - 매립계획 면적 : 4,100㎡ - 매립폭 : 도로폭 평균 10m 개설	2001.4.3 (제6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229	2001년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3.24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49,833,402천원 - 일반회계 : 당초에서 증 8,695,413천원 - 특별회계 : 당초에서 증 5,789천원 - 심사기간 : 2001.3.28~4.4(8일간) ○삭감내역 - 세입 : 2,665,896천원(일반) - 세출 : 2,880,711천원 (일반2,876,011, 특별4,700) ○확정예산액 : 47,167,506천원 - 일반회계 : 45,472,751천원 - 특별회계 : 1,694,755천원	2001.4.4 (제7차) 수정가결

10. 제43회임시회 : 2001. 5. 11~5. 12(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1.5.11 ~ 5.12	○울산광역시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	2001.5.11 ~5.12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구 청 장	○농소운동장조성사업 추진상황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 ○2001년도 방역업무 추진상황	(제1.2차) 보 고

11. 제44회임시회 : 2001. 5. 22~5. 23(2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32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	2001.5.14 구 청 장	○사용자 범위와 사용신청 절차 규정 ○사용료 징수금액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사용면제자의 범위 지정 ○시설물과 대시설을 훼손,망실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토록 규정 ○대회의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2001.5.22 (제1차) 원안가결
23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5.14 구 청 장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인적담보만으로 규제완화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 조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수정내용 • 융자금 대부신청시 "2명의 연대보증인을 하여야 한다" → "주민1명의 보증인 또는 대부신청액에 상응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수정	2001.5.23 (제2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34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5.14 구 청 장	○북구청사 2001.5.22 준공예정으로 청사이전을 위한 북구청의 소재지를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5-9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2001.5.22 (제1차)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1. 5.19 구 청 장	○문예회관건립관련 업무추진상황 ○강동신명 채석허가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2001.5.22 ~5.23 (제1.2차) 보 고

12. 제45회임시회 : 2001. 6. 27~6. 27(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36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 6.27 구 청 장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타운영단의 존속기한 연장 - 당초 : 2001년 6월 30일까지 - 변경 :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1.6.27 (제1차) 원안가결

13. 제46회제1차정례회 : 2001. 7. 7~7. 16(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1.7.7 의장제의	○위원장 : 윤종오의원, 간사 : 김진영의원 ○위 원 :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류재건의원	2001. 7. 7 (제1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처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1.7.13 구 청 장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계획 ○2001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	2001.7.13 (제2차) 보 고
237	2000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6.30 구 청 장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77,442,130,766원 - 세출결산액 : 56,035,325,840원 - 세계잉여금 : 21,406,804,926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 심사기간 : 2001.7.9~7.12(4일간) - 심사결과 : 가결	2001. 7.16 (제4차) 승인가결
238	2000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1. 6.30 구 청 장	○200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 지출사업건수 :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사업 외 6건 - 지출결정액 : 234,691,000원 - 지 출 액 : 197,268,380원 - 잔 액 : 37,422,62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 심사기간 : 2001.7.9~7.12(4일간) - 심사결과 : 부결	2001. 7.16 (제4차) 승인가결
240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	2001.7.6 구 청 장	○준농림지역안 음식점 설치허용 기준 제시(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지역과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만미터이내인 지역	2001.7.14 (제3차)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처수)
			- 하천법에의한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 1만제곱미터당 10호미만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공포한 날부터 6월간 한시적 음식점 설치 허용 ※수정내용 • 제4조(음식점의 설치제한 특례) →삭제	
241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 7. 6 구 청 장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제3조(점용허가신청) - 제6조(부당이익금징수) - 제8조(점용료의감면)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시면적의 정의 조정	2001.7.14 (제3차) 원안가결
24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 7. 12 윤종오외2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지정 - 기능직중서무, 인사, 비서, 경리, 감사, 조사, 비밀, 물품출납, 교환, 속기, 노무자의 감독, 보안, 경비, 승용차운전원, 구급차, 산불진화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공무원	2001.7.16 (제4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14. 제47회임시회 : 2001. 9. 15~9. 25(11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4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5 구 청 장	○실과 조정 - 통폐합 : 자치행정과+주민자치센타운영단(한시기구)→자치행정과(한시기구) - 신 설 : 문화공보과 ○보건진료소 위치 등 변경 - 신명진료소 : 신명동 153-6 →신명동 145-2 - 어물진료소 : 어물동 58 →어물동 58-13 ※수정내용 - 환경위생과의 물관리에 관한사무(신설)→삭제	2001.9.17 (제2차) 심의보류 2001.9.19 (제4차) 수정가결
244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5 구 청 장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인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 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2001.9.17 (제2차) 심의보류 2001.9.19 (제4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245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5 구 청 장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문구 수정 -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1.9.17 (제2차) 원안가결
246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5 구 청 장	○용어 조정 -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보험진료비기준액→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2001.9.19 (제4차) 원안가결
247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폐지조례안	2001.9.5 구 청 장	○조례 폐지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일치시켜 진료비 적용의 혼란을 예방	2001.9.19 (제4차) 원안가결
248	200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9.5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52,122,669천원 - 일반회계 : 증4,691,658천원 - 특별회계 : 증263,505천원 - 심의기간 : 2001.9.19~9.25(6일간) ○확정예산액 : 52,122,669천원 - 일반회계 : 50,164,409천원 - 특별회계 : 1,958,260천원	2001.9.25 (제9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49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19 구 청 장	• 전자이미지공인사용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증명서류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 추가	2001.9.24 (제8차) 원안가결
250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19 구 청 장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사용 규정신설 -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징수 -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	2001.9.24 (제8차) 원안가결
251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9.19 구 청 장	○규정 신설 -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2001.9.24 (제8차) 원안가결

15. 제48회임시회 : 2001. 11. 9~11. 13(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5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0.29 구 청 장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 도모	2001.11.12 (제3차) 원안가결

16. 제49회제2차정례회 : 2001. 11. 26~12. 20(25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2002년도중기
재정계획 보고</td><td>2001.11.26
구 청 장</td><td>(단위 : 백만원)
<table><tr><td rowspan="3">구 분</td><td colspan="6">중기재정계획(2001~2004)</td><td rowspan="3">비고</td></tr><tr><td rowspan="2">합 계</td><td colspan="2">기준년도</td><td>예산편성
기준제시</td><td colspan="2">발전계획</td></tr><tr><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계</td><td>306,938</td><td>62,749</td><td>52,122</td><td>58,744</td><td>64,248</td><td>69,075</td><td></td></tr><tr><td>일반
회계</td><td>296,295</td><td>60,006</td><td>50,164</td><td>56,813</td><td>62,258</td><td>67,054</td><td></td></tr><tr><td>특별
회계</td><td>10,643</td><td>2,743</td><td>1,958</td><td>1,931</td><td>1,990</td><td>2,021</td><td></td></tr></table></td><td></td></tr>
<tr><td></td><td>구정에 관한 질문</td><td>2001.11.23
윤종오의원</td><td>1. 강동해맞이 축제에 관한 질문
2.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3.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td><td>2001.11.27
(제2차)
질문·답변</td></tr>
<tr><td></td><td>예산결산특별
위원회구성의건</td><td>2001.12.4
의장제의</td><td>○위원장 : 류재건의원, 간사 : 김진영의원
○위 원 :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윤종오의원</td><td>2001.12.4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254</td><td>2001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td><td>2001.11.5
구 청 장</td><td>○공유재산 취득(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와 면적 변경)
- 당 초 : 상안동827-2번지, 833번지
- 변 경 : 상안동380번지, 381번지
• 변경사유 : (상안동 377-2번지 박재환)
기부채납</td><td>2001.12.4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256</td><td>2002년도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td><td>2001.11.19
구 청 장</td><td>○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약수마을회관신축부지 기부채납
(중산동 932-4번지) - 가결</td><td>2001.12.4
(제3차)
수정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td><td></td><td>• 약수마을회관 신축
(중산동 932-4번지) - 가결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중산동 829번지) - 부결
• 효문운동장 조성
(연안동 산101-1번지일원) - 가결</td><td></td></tr>
<tr><td>257</td><td>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td><td>2001.11.20
구 청 장</td><td>○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제정기관 변경(시·도 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
-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신설)
-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 1건당 5,000(신설)</td><td>2001.12.4
(제3차)
원안가결</td></tr>
<tr><td></td><td>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td><td>2001.12.19
의장제의</td><td>○감사기간 : 2001.11.27~12.3(7일간)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table>
<tr><th>감사대상부서</th><th>감사자료제출건수</th><th>증인출석인원</th><th>참고인출석인원</th><th>주요감사실시건수</th></tr>
<tr><td>계</td><td>217</td><td>80</td><td></td><td>207</td></tr>
</table>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table>
<tr><th>감사대상부서</th><th>계</th><th>시정요구사항</th><th>건의사항</th></tr>
<tr><td>계</td><td>8</td><td>32</td><td>26</td></tr>
</table></td><td>2001.12.20
(제4차)
원안가결</td></tr>
</table>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259</td><td>2002년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td><td>2001.11.20
구 청 장</td><td>○요구예산액 : 43,809,712천원
• 일반회계 : 43,232,814천원
• 특별회계 : 576,898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
• 심사기간 : 2001.12.4~12.19
(16일간)
• 심사내역 : 세입 감4,133,851천원
세출 감4,731,874천원
○확정예산액 : 39,675,861천원
• 일반회계 : 39,098,963천원
• 특별회계 : 576,898천원</td><td>2001.12.20
(제4차)
수정가결</td></tr>
<tr><td>258</td><td>2002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td><td>2001.11.20
구 청 장</td><td>○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전심사(원안가결)
• 심사기간 : 2001.12.4~12.19
(16일간)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table>
<tr><th>기 금 명</th><th>금 액</th></tr>
<tr><td>계</td><td>485,487</td></tr>
<tr><td>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td><td>79,371</td></tr>
<tr><td>노인복지기금</td><td>111,392</td></tr>
<tr><td>식품진흥기금</td><td>28,355</td></tr>
<tr><td>재해대책기금</td><td>202,005</td></tr>
<tr><td>재난관리기금</td><td>64,364</td></tr>
</table></td><td>2001.12.20
(제4차)
원안가결</td></tr>
</table>

17. 제50회임시회 : 2001. 12. 21~12. 27(7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차수)
253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001.10.29 구 청 장	○수도법 개정(2001.3.28)으로 간이상수도 등 관리권자가 구청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정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관리 : 간이상수도 - 구청장, 소규모 급수시설 - 사용자협의회 대표자 • 보수 : 구청장이 지원	2001.12.27 (제5차) 부 결
26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2.4 구 청 장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 - 광역시에서 수행하던 상수도업무중 일부업무가 구·군으로 이양 ○분장사무 조정 • 경제사회국 -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01.12.27 (제5차) 부 결
26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2.4 구 청 장	○2001.9.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 ○정원조정 : 증 1명	2001.12.27 (제5차) 부 결
264	2001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12.17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54,717,244천원 • 일반회계 : 기정에서 증 1,322,819천원 • 특별회계 : 기정에서 증 263,505천원 • 심의기간 : 2001.12.21~12.27(7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 세 출 : 32,000천원(일반 32,000천원) ○확정예산액 : 54,717,244천원 • 일반회계 : 51,487,228천원 • 특별회계 : 3,230,016천원	2001.12.27 (제5차) 수정가결

18. 제51회임시회 : 2002. 1. 29~2. 6(9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구정에 관한 질문	2002.1.23 류재건의원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와 관련 질문	2002.1.29 (제1차) 질문·답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2.1.28 구 청 장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2.1.29 (제1차) 보 고
267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2002.1.10 구 청 장	○과태료 납부기한 : 30일이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 ○기타사무의 준용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2백만원 이하	2002.02.02 (제5차) 원안가결
26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10 구 청 장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구축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200원 삭제	2002.2.2 (제5차) 원안가결
270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2002.1.21 구 청 장	○명예구민증은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함.	2002.2.2 (제5차)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
(차수)</th></tr>
<tr><td></td><td></td><td></td><td>○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자가 그 수여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td><td></td></tr>
<tr><td>272</td><td>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td><td>2002.1.24
구 청 장</td><td>○농소운동장 준공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 지정
<table>
<tr><th>구 분</th><th>하계
(3월~10월)</th><th>동계
(11월~2월)</th></tr>
<tr><td>주간(전)
주간(후)</td><td>08 : 00 ~
13 : 00
13 : 00 ~
18 : 00</td><td>08 : 00 ~
13 : 00
13 : 00 ~
17 : 00</td></tr>
</table>
○기타 체육시설의 사용료
• 경기장 사용료
- 주경기장 :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 45,000원
- 보조경기장 : 무료
※ 수정내용
• 제3조(사용신청·허가등)③항신설
③사용신청·허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시간)
<table>
<tr><th>구 분</th><th>하계
(3월~10월)</th><th>동계
(11월~2월)</th></tr>
<tr><td>주간(전)
주간(후)</td><td>06 : 00~
12 : 00
13 : 00~
18 : 00</td><td>07 : 00~
12 : 00
13 : 00~
17 : 00</td></tr>
</table></td><td>2002.2.2
(제5차)
심의보류

2002.2.6
(제8차)
수정가결</td></tr>
</table>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65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12.19 구 청 장	○주요내용 •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신설, 개정 및 삭제 • 청결유지책임제 개정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수집·운반 가능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확대 등	2002.2.6 (제8차) 수정가결
266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	2001.12.19 구 청 장	○제안이유 •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제정 ○주요내용 •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 농촌용수계획 수립 •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 용수시설물의 관리 • 운영관리위원회 구성사항 등	2002.2.6 (제8차) 원안가결
269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10 구 청 장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 정비 및 보완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있어 전용 봉투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함 • 수수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당 1,000원/월,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1,000원/월을 징수하고 감량의무사업	2002.2.6 (제8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장과 일반사업장(음식점, 생선가게 등)은 배출량에 따라 부과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제작, 판매 등 관련사항 삭제	
273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24 구 청 장	○주요내용(제3조제2항에 단서신설)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함에 있어 행정적 낭비요인이 많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결정코자 함. • 단,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의 사항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정내용 • "영향이 적다"→"영향이 작다"	2002.2.6 (제8차) 수정가결

19. 제52회임시회 : 2002. 4. 11~4. 19(9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80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4.3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1.9.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 - 광역시에서 수행하던 상수도업무중 일부업무가 구·군으로 이양 ○주요내용	2002.4.11 (제1차) 심의보류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분장사무 조정 • 경제사회국 - 간이상수도 등 수도(水道)에 관한 사무(신설)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28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4.3 구 청 장	○제안이유 • 2001.9.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 ○주요내용 • 정원조정 : 증 1명	2002.4.11 (제1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282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2.4.3 구 청 장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신설 ○전염병예방법 등과 관련한 사무 정비 • 1~3종 전염병 → 1~4군 지정 전염병으로 개정 ○의료법과 관련하여 의원 등의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 등	2002.4.11 (제1차) 원안가결
274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2002.3.28 구 청 장	○제안이유 •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 문화의 집 사업범위를 규정 •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시설 및 자료는 연장 무료로 개방하되, 공휴일은 제외	2002.4.12 (제2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 시설 사용은 사용예정일 7일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할 동장에게 위임	
275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3.28 구 청 장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 → 2/1000로 세율인하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	2002.4.12 (제2차) 원안가결
276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3.28 구 청 장	○감면 설치목적 내용보완과 음성나환자를 한센나환자로 자구 수정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 추가 ○임대주택에 대한 확대(전용면적 60㎡→ 85㎡)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조문 용어조정	2002.4.12 (제2차) 원안가결
279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	2002.3.28 구 청 장	○송정동사무소 신축 • 취득재산 : 부지 1,650㎡, 건물 지상 2층 728㎡(220평) • 취득대상 토지현황 - 물건표시 : 북구 화봉동 555번지 답 2,552㎡중 1,650㎡ • 취득시기 : 2002년5월~2003년12월	2002.4.12 (제2차) 원안가결
28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2002.4.3 구 청 장	○주 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002.4.12 (제2차)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정조례안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277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3.28 구 청 장	○의료보호법이 2001.10.1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관련조항을 정비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2002.4.13 (제3차) 원안가결
278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3.28 구 청 장	○협의회 기능을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총회기능 삭제 ○예산 편성을 회계연도 개시6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은 30일전까지 승인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제출과 15일 이전 승인	2002.4.13 (제3차) 원안가결
284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002.4.3 구 청 장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2001.3.28)으로 간이상수도 등 관리권자가 구청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정 ○주요내용 •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관리 : 간이상수도-구청장, 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대표자 - 보수 : 구청장이 지원	2002.4.13 (제3차) 심의보류 2002.6.30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2.4.12 구 청 장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관련 추진상황 (북구 양정동 산 1번지 일원(효문, 어물포함)(공군 8991부대 5부대))	2002.4.15 (제4차)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2.4.16 구 청 장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02.4.17 (제6차) 보 고
285	200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 4. 3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45,934,438천원 • 일반회계 : 45,205,369천원 (증 6,106,406천원) • 특별회계 : 729,069천원 (증 152,171천원) • 심의기간 : 2002.4.16~4.19(4일간) ○삭감내역 • 세 입 : • 세 출 : 121,530천원 (일반 121,530천원) ○확정예산액 : 45,934,438천원 • 일반회계 : 45,205,369천원 • 특별회계 : 729,069천원	2002.4.19 (제8차) 수정가결
286	공직사회개혁을위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	2002.4.16 윤종오외2명	○제안이유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촉구함. ○주요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함. •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구속, 수배, 징계 등의 탄압을 즉각 중단 ○조치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이송.	2002.4.19 (제8차)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차수)
287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 촉구결의안	2002.4.16 류재건외2명	○북구 양정동 산1번지 일원(효문, 어물 포함)에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업무추진을 즉각 철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 행위임. ○조치사항 • 국방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이송.	2002.4.19 (제8차) 원안가결

제3장

회의개최사항

- 제 1 절 제34회 제1차정례회
- 제 2 절 제35회 임시회
- 제 3 절 제36회 임시회
- 제 4 절 제37회 임시회
- 제 5 절 제38회 제2차정례회
- 제 6 절 제39회 임시회
- 제 7 절 제40회 임시회
- 제 8 절 제41회 임시회
- 제 9 절 제42회 임시회
- 제10절 제43회 임시회
- 제11절 제44회 임시회
- 제12절 제45회 임시회
- 제13절 제46회 제1차정례회
- 제14절 제47회 임시회
- 제15절 제48회 임시회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제19절 제52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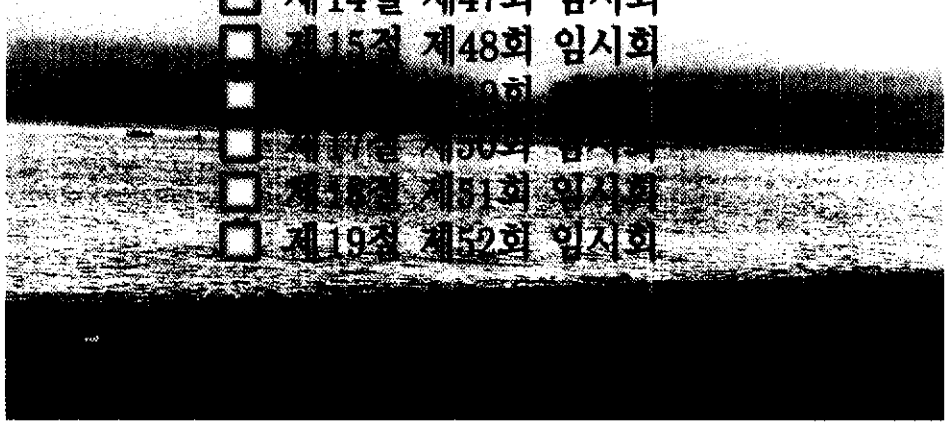

제1절 제34회 제1차정례회

1. 개최배경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

나. 개회일시 : 2000. 7. 7. 09 : 00

다. 회　　기 : 2000. 7. 7 ~ 7. 14(8일간)

라. 부의안건

- o '99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검사위원)
-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o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o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 o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 외 2인 발의)
- o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o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o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후반기 의회 출범으로 제34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제2대의회 후반기 의장이란 중임을 맡게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장단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끝에 지난해 8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9년도예비비승인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가 신설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으며, 제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 한지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 의원이 합심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선진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지향점은 모든 주민의 차등 없는 정보공유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섬세한 정책기능의 작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외계층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정책으로 농어민과 노동자 서민층이 구정에 주인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은 정의와 평등의 기반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실천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리는 자가 대접받고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0. 7. 7 ~ 7. 14(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7.7 (금) 09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원안가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3. '99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검사위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원안가결
		5. 제3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0.7.8 (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0.7.9 (일)		일 요 일	
2000.7.10 (월) 10 : 30	2	1.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 청취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원안가결
2000.7.11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0.7.12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0.7.13 (목) 10 : 30	3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0.7.14 (금) 10 : 30	4	1.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	승인가결 승인가결 원안가결 심의보류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6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7. 4(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7. 10 (제34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0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공용(2동사무소) 청사를 냉천마을회 외 2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농소2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 농소2동사무소 신축사업

• 토지 : 4필지 1,052㎡(318평)

- 냉천마을회 ..... 2필지 829㎡(251평)
- 강성한외1명 ..... 1필지 65㎡(20평)
- 유경렬 ..... 1필지 157㎡(47평)

• 건물 : 3동 연면적 337㎡(101.94평)

○ 신축계획

- 예산확보 : 715백만원 (공사비 675, 설계비 20, 감리비 20)
- 신축기간 : 2000.7~2001.3월(9개월)
- 부지확보 : 현재의 위치에서 건물철거 후 신축
- 신축규모 : 지상3층, 270평정도(1층 민원실과 사무실, 2층 주민자치센터와 사무실, 3층 동대본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소2동사무소 청사를 냉천마을회 외 2인으로부터 부지 4필지 1052㎡

를 기부채납 취득하여 건물 337㎡를 신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7. 8(김수헌의원 외 2명 발의)

○ 심의일자 : 2000. 7. 13 제34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0.7.1 대통령령 제16879호)되어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가 종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의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정례회 개최시기변경 : 7~8월 → 9~10월

○ 제2차정례회 집회일시변경 : 매년12월1일 → 매년11월25일

○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변경 : 제1차정례회 → 제2차정례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된 것을 2차정례회에 실시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 개최 시기를 7~8월중에서 9~10월로 변경하며, 2차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변경.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2차정례회에 실시함이 합당하고,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12월1일에서 11월25일로 앞당기고, 총선이 실시되는 해는 새로 선출된 의원의 업무 파악을 고려하여 9~10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7. 3(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7. 14 (제34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기금의 조성 :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증진 사업 또는 활동

○ 기금의 관리

- 계좌 별도관리, 이자수입금 범위내 지출, 이자수익금의 10%이상 적립

o 기금관리 계획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계획안 구의회 제출

o 기금의 결산 : 다음 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결산보고서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o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제2절 제35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진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9. 4. 10 : 30

다. 회　　기 : 2000. 9. 4 ~ 9. 7(4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구청장 제출)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채석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 울산~농소간도로4차선축조공사업무추진상황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숭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의 문턱 9월을 맞아 제35회 임시회를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우리 울산지역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가 그래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해예방에 힘써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실시한 2000년 을지포커스랜즈 연습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제2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간의 화해물결이 치열한 국제경쟁 등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최근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유해식품이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추석대비 물가안정과 유해식품 근절 등 주민생활안정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5회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전 한 걸

3. 의사일정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9. 4 ~ 9. 7(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9. 4 (월) 10 : 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원안가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3. 제3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9. 5 (화)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총무과〉 4.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5.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민원봉사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 9. 6 (수) 10 : 30	3	1.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2.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ㅇ 채석허가신청에따른업무추진상황〈농림수산과〉 ㅇ 울산~농소간도로4차선축조공사업무추진상황 - 신상안교와구국도7호선연결공사〈건설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 9. 7 (목) 10 : 30	4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수정가결

- 당일의사일정 -

○ 제3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0. 9. 7. 10 : 30)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3.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계속〕〈사회복지과〉
4.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4(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4(제3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 본청 기구보강 방침에 의거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을 전담할 한시기구 설치로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운영 조기 정착으로 구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설치(13실·과 → 14실·과·단, 증 1)

• 기　　구 : 주민자치센터운영단(총무국소관)

• 존속기한 : 2001. 6. 30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분청기구를 현재 13실·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을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설하여 14실·과·단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단을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21(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5(제3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전보에 관한 일부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미적용 단서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보에 관한 복무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울산광역시 조례준칙안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 미적용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30(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5(제3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0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공공건물(염포어린이집, 상방경로당, 재활용판매장 및 교육장, 호계시장)건립을 의회 의결을 득하여 취득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재산 : 건물(5동)

• 염포어린이집

- 위　　치 : 양정동 산 109번지
- 층수 및 구조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 연 면 적 : 264㎡(80평)
- 소요금액 : 191,400천원(국 76,560, 시 57,420, 구 57,420)

• 상방경로당

- 위　　치 : 연암동 378번지
- 층수 및 구조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 연 면 적 : 163.9㎡(50평)
- 소요금액 : 125,000천원(구비)

• 재활용상설판매장 및 교육장 건립

- 위　　치 : 연암동 361-1번지외 1개소
- 층수 및 구조 : 지상2층, 철골조립식 및 경량철골조
- 연 면 적 : 702㎡(212평)
- 소요금액 : 256,000천원(시 128,000, 구 128,000)

• 호계공설시장 재건축

- 위　　치 : 호계동 869-1번지
- 층수 및 구조 : 지상1층 철골조
- 연 면 적 : 1,089㎡(329평)

- 소요금액 : 312,000천원(구비)

○ 취 득 자 : 울산광역시 북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한 사항 중 비현실적인 규제폐지, 토석채취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시 토석채취료 산정기준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실현성 있는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2조,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107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 정비를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10조2항의 경우에는 제10조3항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제23조 의안의 폐지는 제23조1항으로 가능함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30(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6(제3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의 구성을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이외에 기타위원은 토지의 이

용·교통·환경·건축·방재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세분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여 전문인력의 참여를 보장

- ㅇ 소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위임사항 중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결정 및 전문성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ㅇ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2/3이상 전문가를 두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속한 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ㅇ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가를 2/3이상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1) 심의경과

-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21(구청장 제출)
- ㅇ 심의일자 : 2000. 9. 7(제3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공립보육 시설의 재산관리방법과 계약해지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에는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방법 중 개인이 구입한 비품 등도 계약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귀속시키던 것을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계약서 제4조)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효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

○ 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를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률에 위임이 없는 조례로 규정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10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7. 3(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7(제3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기금의 조성 :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증진 사업 또는 활동
- 기금의 관리 : 계좌 별도관리, 이자수입금 범위내 지출, 이자수익금의 10%이상 적립
- 기금관리 계획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계획안 구의회 제출
- 기금의 결산 : 다음 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결산보고서 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기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30(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9. 7(제3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호계시장 재건축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및 완화 함으로써 시장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 신설

○ 시장사용허가 취소요건 완화

○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

○ 사용료 납기 완화 "1년분 선납" → "반기납"

○ 위탁징수자의 보증인 완화 3인 →1인

○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폐지

○ 실효성 없는 과태료 처분규정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호계시장 재건축으로 북구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시장 사용료 납기를 1년분 선납하던 것을 반기납으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별표】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2조의2 관련)

형 태	시장명	위 치	개시일자	주요 판매품
삼설	호계시장	호계동 869-1번지	매일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
정기시장	정자시장	정자동 669번지	매월 2,7,12,17,22,27일	어물, 채소류, 양곡, 육류 등

(수정안)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2조의2 관련)

형 태	시장명	위 치	개시일자	주요 판매품
삼설 및 정기시장	호계시장	호계동 869-1번지	매 일	일용품, 어물, 채소, 육류, 양곡, 잡화 등
정기시장	정자시장	정자동 669번지	매 월 2,7,12,17,22,27일	어물, 채소류, 양곡, 육류 등

제3절 제36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10. 10. 10 : 30

다. 회　　기 : 2000. 10. 10 ~ 10. 12(3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약수초등학교앞버스차고지설치업무추진상황

○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외 6건 (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강혁진의원)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환수문제는 지난 95년 도·농통합 당시 울산시에 귀속되었던 현재 우리 북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소, 강동지역의 공유재산으로서 이미 울주군에서는 환수요구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의 입장도 울주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우리의 자치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공유재산 환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초등학교 앞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문제는 주변여건과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민원입니다.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오고가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일뿐만 아니라 아파트 진입로 개설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가며 버스차고지를 짓는 업자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도 어느덧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역사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곳곳에서 행사를 가지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들뜬 기분에 혹시나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때의 마음가짐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고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의약분업의 폐해로 특히 서민층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폐업사태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길

3. 의사일정

제3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10. 10 ~ 10. 12(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0.10 (화) 10 : 30 개회식 직 후	1	개 회 식	
		1. 제3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3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현장확인의건 신축청사현장 〈건축과〉 약수초등학교앞버스차고지현장 〈건축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처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0.11 (수)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약수초등학교앞버스차고지설치업무 추진상황〈건축과〉	
		2.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계속〉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 조례(안) 〈농림수산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
2000.10.12 (목) 14 : 00	3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공유재산 환수업무 추진상황〈총무과〉	

- 당일의사일정 -

제3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10. 10 ~ 10. 12(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0.12 (목) 14 : 00	3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원안가결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총무과〉	
		5.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 반대결의안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약수초등학교 앞 버스차고지설치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0. 10. 5(구청장 제출)

○ 보고일자 : 2000. 10. 11(제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건축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김병규, 건축과장 김환조

2) 주요내용

○ 건축허가개요

• 건 축 주 : (주)남진여객 대표 배진수

- 건축면적 : 275.5㎡(83평)
- 구조및층수 : 경량철골조, 2층 1동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 설계변경허가 신청내역

- 건축면적 : 275.5㎡(83평) → 395.2㎡(119평)
- 층　　수 : 2층 1동 → 1층 1동

○ 추진경위

- 2000. 9. 7 건축허가
- 2000. 9. 26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차고지로 사용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보행안전문제 등 계획서 제출) 요구
- 2000. 9. 27 공사중지 및 고발조치
- 2000. 9. 30 설계변경 허가신청서 반려
- 차고지 건립시 학생들의 보행안전문제 등 제반사항 해결시 허가 여부 검토

○ 조치사항

- 부지가 1992년 잡종지로 변경된 것 등 여러 가지 특혜의 의문이 있고, 현 상태에서는 차고지 설치는 부적당하므로 대책강구

□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30(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0. 11(제3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타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광역시 승격과 고교평준화 실시로 범위 삭제

○ 장학금 지급정지와 용도가 맞지 않은 규정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 중 타 시·군으로 전학할 때 장학금을 학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는 것임.

○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가 울산광역시승격과 고교평준화 실시로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과 '장학금을 학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30(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0. 12(제3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을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는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

○ 잘못 표기된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과 용어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하고 용어가 맞지 않는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로 바꾸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공유재산환수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0. 10. 12(구청장 제출)

○ 보고일자 : 2000. 10. 12(제3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 해당부서 : 총무과

○ 보 고 자 :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2) 주요내용

○ 200㎡미만 토지 중 시유재산으로 된 토지현황

• 전체 460필지 46,874㎡(14,179평)

: 농소 41필지 7,943㎡(2,403평), 강동 40필지 4,935㎡(1,493평), 기타동 379필지 33,966㎡(10,275평)

○ 울산광역시와 자치구·군간의 재산조정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기초확립과 재산수입의 배분, 공공시설의 관리비용의 확보 및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유권 구분기준 제시

○ 조정대상 가능 필지는 정확한 실태조사 후 시에 조정토록 조치

3) 조치사항

○ 시유재산 중 우리구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시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200㎡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 및 자료확보 후 구유재산으로 재조정 요구 조치

○ 조정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토록 지속적 추진

4) 조치결과

○ 2000. 11. 7 조사 실시결과 154필지 26,725.5㎡에 대하여 시에 조정 요구 하였음.

□ 약수초등학교앞시내버스차고지설치반대결의안(강혁진의원)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0. 12(강혁진의원)

○ 심의일자 : 2000. 10. 12(제3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 신천동 625-1 약수초등학교 앞 자연녹지 지역에 (주)남진여객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코자하는데, 이 지역은 약수초등학교 학생 2,700여명이 등·하교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학생들의 보행안전 문제

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그 주변이 수만평의 비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각종 소음과 오·폐수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할 것이 극히 우려되며, 이곳과 연결되는 국도 7호선은 평시에도 상습교통체증 지역으로 차고지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배가 될 것이며, 약수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입로 확장도 반대할 만큼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정서를 감안하여 북구의회에서는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ㅇ (주)남진여객은 이 지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 ㅇ 울산광역시 등 행정당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편익만 생각하려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약수초등학교 앞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반대 결의안

북구 신천동 625-1 약수초등학교 앞 자연녹지 지역에 (주)남진여객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코자하여, 우리 북구의회는 차고지 설치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첫째, 이 지역은 약수초등학교 학생 2,700여명이 등·하교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학생들의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둘째, 이 지역은 그 주변이 수만평의 비옥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차고지가 들어설 경우 각종 소음과 오·폐수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할 것이 극히 우려되며,

셋째, 이곳과 연결되는 국도 7호선은 평시에도 상습교통체증 지역으로 차고지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배가 될 것이며,

넷째, 약수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입로 확장도 반대할 만큼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정서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주)남진여객은 이 지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울산광역시 등 행정당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편익만 생각하려 말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0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제4절 제37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11. 13. 11 : 00

다. 회　　기 : 2000. 11. 13 ~ 11. 18(6일간)

라. 부의안건

-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8건(구청장 제출)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의장제의)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윤종오의원외7인 발의)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연초에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요즈음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로자 서민층이 대부분인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25일이면 제38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감사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 정보획득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발전 및 공공책임성을 고취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집행부 행정감시 역할중 하나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행 의회감사제도가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하여 현장에서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과 '검토해 보겠습니다'란 천편일률적인 답변 자세를 버리고 진실한 자세로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감사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11. 13 ~ 11. 18(6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1. 13 (월) 11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본회의 산회후	1	1.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원안가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제3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5.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 〈총무과〉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보건소〉	원안가결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원안가결
		8.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세입분야(총무국,기획감사실) ◈ 세출분야 (기획감사실,보건소)	
2000.11.14 (화) 10 : 30	2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주민자치센터운영단)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1.15 (수) 13 : 30	3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000.11.16 (목) 10 : 30	4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건축과)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종합의결	수정가결
2000.11.17 (금)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5.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6.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7.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부 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원안가결
2000.11.18 (토) 11 : 00	6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원안가결

- 당일의사일정 -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2000. 11. 18 11 : 00)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1. 4(윤종오의원 외 7명 발의))

○ 심의일자 : 2000. 11. 18(제37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 공무로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연수전 사전평가를 거쳐

○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호화관광이라는 여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적용의 범위 : 의원임기 중 국외연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부의장,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5인

○ 기　　능 :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연수목적지의 적합성,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절성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12조의 수당여비규정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단체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북구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20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1. 16(제37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청사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원 부족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북구청사 건립비로 사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2000 지방채 수시분발행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회계명	자금의 종류	차입선	융자조건		상환재원
					이율	상환조건	
북구청사 신축사업	4,050	일반 회계	청사정비 기금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연3%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	구비 (울산광역시 보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으로는 북구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나 차입선 융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무에 대한 창구일원화 및 일부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하여 구민중심의 봉사행정 추진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구조정

• 국명칭변경 : 도시개발국 → 도시건설국

• 과명칭명칭 : 건 축 과 → 허 가 과

○ 분장사무조정

• 총무국

- 지역정보화, 통계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삭제 (기획감사실 이관)

○ 도시건설국 (허가과 사무는 기존 건축과 사무 포함)

- 건축허가 및 신고 (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인·허가사무 범위

-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무
-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등에 관한 사무
-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 협의 및 대체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신고,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울산광역시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개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과를 허가과로 명칭 변경하여 인·허가 사무의 창구 일원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군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372명 ⇒ 374명(증2명 : 한시정원)

• 집행기관의 정원 : 361명 ⇒ 362명(증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 12명(증1명)

○ 연도별 정원

• 2001. 7. 31까지 : 376명 ⇒ 378명(증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65명 ⇒ 366명(증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 12명(증1명)

※ 2001. 8. 1이후 : 374명(△4명 : 2단계구조조정 3차년도 감축인력)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9조 및 제21조 구·군 정보화 기능보강 울산광역시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집행기관 증원1명,

의회사무기구 증원1명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36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1) 심의경과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ㅇ 심의일자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ㅇ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한 존치·이관사무 목록에 의거 동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ㅇ 동 존치 사무

- 기록물(문서등)의 보존 및 이관(총무과)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지방세과)
- 장애인 등록 및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과)
- 매·화장 신고 및 개장신고(사회복지과)
-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교부 등(농림수산과)

ㅇ 강동동 존치 사무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수리 등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신고수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건축신고에 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에 위임한 업무를 납세증명 발급과 강동동에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일부 사무는 계속 존치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사무를 구로 환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에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고, 구에만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폐지

○ '농소1동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

○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기능전환으로 구에만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제출)

○ 심의일자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구로 환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장의 업무로 환원하고자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지역 지정 등에 대한 홍보'를 삭제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삭제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95조 2000년 동기능전환 울산광역시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업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절 제38회 제2차정례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강혁진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11. 25. 11 : 00

다. 회　　기 : 2000. 11. 25 ~ 12. 21(27일간)

라. 부의안건

- ○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구청장 제출)
-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의장제의)
-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의장제의)
- ○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8회 2000년도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방자치의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줄곧 구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땀흘려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협조로 성원해주신 12만 구민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연초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산하게 새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IMF을 걱정하며 우리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 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환경에 적극 도전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주요 구정 현안을 다루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집행부를 통제 내지는 견제하는 행정기능입니다.

이로써 구정의 불합리한 모순과 관행을 시정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행정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고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치행정의 책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는 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푼

의 세금이라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가장 효과가 큰 행정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세금이라는 강제력으로 징수하여 관료적 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10여년이 지난 지금 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0. 11. 25 ~ 12. 21(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1.25 (토) 11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직 후	1	1.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5.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11.26 (일)		일 요 일	
2000.11.27 (월)~ 2000.12. 3 (일)〈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2000.12. 4 (월) 14 : 00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0.12. 5 (화)~ 2000.12.20 (수) 〈16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예 산 안 심 사)	
2000.12.21 (목) 11 : 00	3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 의결의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당일의사일정 -

제3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0. 11. 25 ~ 12. 21(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2.21	4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결의건	원안가결
(목)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수정가결
10 : 30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001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1. 25(제3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금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5개년 동안의 재정 운용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계획이며, 재정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

지난 10월31일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결과 본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으며 수정내역은 쓰레기처리민간위탁사업을 생활쓰레기처리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명을 수정하고, 위치도 관내 전 지역에서 농소, 강동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농소2동 중2-7호선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변경으로 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으로 삭제되었음.

나. 주요골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99-2003)						평균 신장율(%)
계	계	'99	2000	2001	2002	2003	
	277,339	53,865	56,030	52,833	55,868	58,743	2.3
일반회계	268,036	51,403	53,695	51,403	54,365	57,170	2.8
특별회계	9,303	2,462	2,335	1,430	1,503	1,573	△8.6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30(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2. 4(제3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한 존치·이관사무 목록에 의거 동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동 존치 사무

○ 기록물(문서등)의 보존 및 이관(총무과)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지방세과)

○ 장애인 등록 및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과)

○ 매·화장 신고 및 개장신고(사회복지과)

○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교부 등(농림수산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95조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울산광역시 지침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의안번호 제194호의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에 의해 본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단, 북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북구신청사 이전일 이후로 보류함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2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23(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2. 4(제3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1년도분 공유재산취득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가경로당 신축 : 기부채납취득(소유자 : 김두조, 김작지, 김성완)

○ 사회복지관건립(호계동166-1, 126-1, 147, 146, 145번지 3,671㎡)

○ 농소3동사무소 신축(천곡동 421-12번지 966㎡)

○ 냉천마을회관 건립(신천동 480-11, 481-10번지 16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가경로당 신축, 강동해안변 공중화장실

신축, 사회복지관 건립, 농소3동사무소 신축, 냉천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수정사항 : 농소3동사무소 신축건(불승인)

□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안번호 제2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30(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2. 4(제3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의 타구·군 공공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운영차량 확보(1대 이상)

○ 사업범위 규정

○ 자료복사료 납부(공무상 면제, B5·A4단면 30원, B5·A4양면 40원)

○ 운영위탁범위 규정(필요시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3항의 중 전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으로, 제9조제1항의 '문화 시설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문화시설과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게'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절 제39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12. 22. 10 : 30

다. 회　　기 : 2000. 12. 22 ~ 12. 29(8일간)

라. 부의안건

- ○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3건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 어제 정례회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열렸던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정례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 대하여 적잖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거나 구민의 혈세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태반이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목적나 당위성, 효율성, 과거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행 당위성이 부족하거나 지난해 성과분석도 없이 전례답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허울 좋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신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주민대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에 접목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신사년 새해에는 뭔가가 좀 다시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편성도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 대표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 검증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12. 22 ~ 12. 29(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차 수
2000.12.22 (금)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4.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세입분야(지방세과) ◈ 세출분야 ㅇ기획감사실 ㅇ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 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터운영단) ㅇ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12.23 (토) 10 : 30	2	1.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ㅇ보건소 ㅇ도시개발국(건설과,농림수산과,건축과) ㅇ의회사무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2.24 (일)		일 요 일	
2000.12.25 (월)		공 휴 일	
2000.12.26 (화) 11 : 00	3	1.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계수조정 ○종합심의의결	원안가결
2000.12.27 (수) 11 : 00	4	1.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3.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 조례안〈지역경제과〉 4.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12.28 (목) 11 : 00	5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심의보류 심의보류
2000.12.29 (금) 15 : 00		종 무 식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12. 22 ~ 12. 29(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12.26 (화) 11 : 00	3	1. 2000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ㅇ계수조정 ㅇ종합심의의결	원안가결
2000.12.27 (수) 14 : 00	4	1.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0.12.28 (목) 13 : 00	5	1.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심의보류
2000.12.29 (금) 15 : 00	6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 위탁조례안 〈지역경제과〉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지역경제과〉 (종 무 식)	심의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8(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2. 27(제39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과세면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연장 또는 조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0.12.31만료조례 2001. 1. 1부터 2003. 12. 31로 연장 또는 조정조례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으로써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달천농공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2(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12. 29(제39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에 조성한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위탁·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처리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

○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구체적 명시.
(입주계약체결 등 12개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추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6종은 수수료가 500원으로 원가가 보통 8,000원에서 9,000원으로서 9,000원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체검안서는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7절 제40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1. 19. 13 : 00

다. 회 기 : 2001. 1. 19(1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사년 새해 첫 회기인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게나마 올해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재 우리 북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울산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울산 공설화장장 이전문제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문화가 화장장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사안을 밀실에서 관료적 결정으로 밀어부치기식 추진을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의 장례문화가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동의없는 사업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저는 적잖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인데, 막대한 유지비 때문에 유료화를 하려고 런던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이 반대하여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화장장 이전문제는 북구지역으로 한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적지에 대한 주민공모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으로 대안(對案)을 선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첫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1. 19 ~ 1. 19(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19 (금) 13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울산공설화장장이전에따른업무추진상황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보고]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1. 1. 19(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1. 19(제4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보 고 자 : 구청장 조승수

2)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기존 화장장의노후(73년), 부지협소(920평)로 현부지에 현대식 시설

불가

- 화장장이전 불가피
- 화장율의 점진적 증가로 현대식 장묘시설 설치 시급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묘 등장묘시설 확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
- 2001. 1. 8 광역시의 5개 구.군대상 화장장 부지 공모 발표되면서 화장장 이전추진 본격화

○ 현실태 및 당위성

- 장묘문화 개선 시급
- 기존 울산공설화장장 이전 불가피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
-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은 광역시의 울주군과 북구뿐임
- 인센티브를 활용한 북구 발전 도모

○ 추진경위

- 2001. 1. 4 :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과학대학 주관 해맞이 행사시 화장장 이전 첫 거론
- 2001. 1. 8 : 5개 구청장, 군수 대상 유치신청 공개제안
- 2001. 1. 10 : 구청장과 구의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 2001. 1. 11 : 연암동 반대주민과의 대화(구청장실)
- 2001. 1. 11 : 기자간담회 (구청장실)
- 2001. 1. 15 : 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 2001. 1. 15 : 기자간담회
- 2001. 1. 15 : 연암동 주민과의대화 (8층회의실)

○ 조치사항(북구의회 입장 발표)

- 기존 장묘문화는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입장을

같이 함.

- 만약 북구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함.
- 주민동의를 위하여 신설화장장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 및 최첨단 신설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의 규모, 설계된 조감도 등을 울산광역시가 사전 제시하여야 함.
- 신설화장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1,162억원)수준 이상 되어야 함.

제8절 제41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2. 8. 10 : 30

다. 회　　기 : 2001. 2. 8 ~ 2. 15(8일간)

라. 부의안건

- ○ 지방자치제도의문제점과초대민선자치단체장의역할등에관한질문 (박춘환의원)
- ○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윤종오의원 외 7명)
- ○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윤종오의원 외 5명)
- ○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8일간의 일정으로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소3동 박춘환의원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의 건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처리상황보고의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69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 못된 것은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등을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선례답습적인 문서화에 그치고 있어 처리결과를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인식하여 지적된 사항은 진지한 자세로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제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웅장한 건축물과 공업화, 산업화로 상징되는 하드웨어 적 패러다임이 지배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 환경, 인간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패러다임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변화를 미리 읽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자기개혁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자생력을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2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2. 8 ~ 2. 15(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8 (목)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 농소3동 박춘환의원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2.9 (금)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10 (토) 10 : 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총무국(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타운영단)	
2001.2.11 (일)		일 요 일	
2001.2.12 (월) 10 : 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2.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경제사회국(환경위생과)	원안가결
2001.2.13 (화) 10 : 3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경제사회국(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2001.2.14 (수) 10 : 3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보건소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농림수산과)	
2001.2.15 (목) 10 : 3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도시건설국(건설과,허가과) - 의회사무과	

- 당일의사일정 -

제4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2. 8 ~ 2. 15(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2.8 (목)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4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 농소3동 박춘환의원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6.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 촉구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2.10 (토) 10 : 30	3	1.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총무국(민원봉사과,주민자치센타운영단)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의안번호 제2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 8(윤종오의원 외 7명)

○심의일자 : 2001. 2. 8(제4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화장장 유치와 관련 북구 주민의 정확한 정서를 파악하여 주민정서를 모아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과 북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골자

○ 화장장유치 사전에 북구주민전체(20세이상)의 주민투표실시

○ 시설규모, 조감도 사전제시

○ 인세티브금액 및 배분기준 제시

○ 진입전용도로개설 유무 제시

○ 주민투표실시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울산광역시장, 북구청장에게 촉구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2. 12(제41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장 변경(구청장⇒부구청장)

○ 구성위원 변경(기관및단체의장⇒기관및단체의관계자)

○ 실무위원회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물가대책위원을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서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규정하여 회의를 실무자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실무위원회의 폐지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음.

○ 본 조례 제4조4항 규정에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상설 실무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9절 제42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3. 28. 10 : 30

다. 회　　기 : 2001. 3. 28 ~ 4. 4(8일간)

라. 부의안건

- 북구문예회관건립과사후운영관리계획및구재정운용의문제점에관한질문(박광식의원)
-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구청장 제출)
-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8일간의 일정으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동동 박광식부의장의 문예회관건립과 사후 운영관리계획 및 구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과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 다시 찾아온 경제한파로부터 최근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에 이르기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가슴은 회뿌연 황사처럼 답답하기만 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뒤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참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지방정부도 주민들의 상실감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당면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지역개발만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과 관련하여 문예회관건립이 다른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뒤로 한 채 당장 시행해야만 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명분아래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문예회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건축·운영·관리부문의 삼중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지역민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기회를 주고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문예회관의 원래 설립취지대로 우리구가 운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에서 문예회관 건립문제는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결

3. 의사일정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3. 28 ~ 4. 4(8일간)

2001.3.28 (수)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4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 - 박광식부의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3.29 (목)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세입분야(기획감사실, 지방세과) ◈ 세출분야 ㅇ기획감사실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1.3.30 (금) 10 : 30	3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1.3.31 (토) 10 : 30	4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총무국(주민자치센터운영단) - 보건소	수정가결
2001.4.1 (일)		일 요 일	
2001.4.2 (월)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 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 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가결
		4.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수정가결
2001.4.3 (화) 10 : 30	6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의보류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 농림수산과,허가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수정가결
2001.4.4 (수) 11 : 30	7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종합심의 의결	수정가결

— 당일의사일정 —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3. 28 ~ 4. 4(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3.30 (금)	3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수정가결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 30		○보건소 ○총무국 (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 현장확인의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관련	
2001.4.2 (월) 10 : 30	5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허가과,도시교통과,건설과)	수정가결 부 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2001.4.3 (화) 10 : 30	6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농림수산과)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심의보류 수정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4.4 (수) 10 : 30	7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종합심의 의결 2.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수정가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3. 28(제4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2001.1.29)한 2001년도 지방규제개혁업무추진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장1인 → 2인으로 기능강화

○ 위원장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위원회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

○ 규제개혁사무는 규제를 받는 측은 지역내 일반구민과 기업체 등이며, 규제주체는 행정청이므로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자 하여 상위법에는 부합하다고 사료됨.

○ 단,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② 위원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4. 2(제42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이 가정용인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공동주택가격으로 단일화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정용 단독주택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차등 가격분 50% 인상

용 량 별	봉투판매가격(가정용 단독주택)	
	현 행	개 정 안
10ℓ	140원	170원
20ℓ	280원	340원
50ℓ	670원	830원
100ℓ	1,330원	1,65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은 단일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결과 도시지역보다는 매우 싼 편이며 농촌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정금액을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부 결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4. 2(제42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4호. 2000.12.30)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써 지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료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객석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쓰레기 배출량이 극히 적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영세서민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함으로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4. 2(제42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중고 생활용품 및 중·대형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이용과 근검절약 정신 고취를 위한 재사용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될 재활용 교환판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명　　칭 :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

○ 사업운영

- 재활용품교환판매장의 운영사업
- 민간단체 운영가능, 제경비는 자체수입금의 충당원칙
- 수탁자선정및 위·수탁협약
- 구청장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인력.운영비지원가능
- 위탁사용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25/1000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동법 제32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 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울산광역시북구재활용교환판매장이라 칭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번지에 둔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방법 및 수탁자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구청장이 사업계획서 공모 또는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단체에 지정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공모 또는 지정위탁할 때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2인,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2인, 관련공무원 2인으로 하며 운영주체자 선정후 해체된다.
(신설)	제7조(위·수탁협약) ① 제6조제2항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 매장이 포함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

제 정 안	수 정 안
	원장을 수탁자로 하여 구청장과 위·수탁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매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3년마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수탁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매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①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운영비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인건비·시설물수리비 등 중요한 경비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비)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활용교환판매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때는 인력·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9조 내지 제17조 (제정안과 같음)

□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2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3. 29(제42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 및 매각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소 신축

○ 농소3동사무소 신축

○ 사회복지관 위치변경및 노인복지관 신축

- 2000년도 의결변경사항임.

○ 공장용지 지정업체 처분

- 99년 기의결 2년 경과에 따른 재의결사항임

○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보건소 신축건은 우리 구의 개청 이후에 보건소 건물이 없어서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근거법규에 부합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농소3동 신축건에 대하여는 현 동사무소는 임시청사로 사무소 부지임대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함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동시에 신축하고자 위치변경 및 건축면적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공장용지지정업체처분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의결을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보존부적합재산처분건은 농소3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형상이 삼각형이고 도로보다 낮아 동사무소 부지로 부적합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0절 제43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5. 11. 13 : 00

다. 회　　기 : 2001. 5. 11 ~ 5. 12(2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에 제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화장장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등 4건의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및 신설구의 정착을 위하여 1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구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시 등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시작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역대책 및 장마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관련하여 지난 4월에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2000년 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세균성이질과 홍역환자 등 법정전염병의 기록적 증가로 인해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전염병이 기승을 부린 한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적인 전염병관리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환경파괴와 국가간 인적·물적교류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사라졌던 전염병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보건생활에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5. 11 ~ 5. 12(2일간)

월일(요일)	부의안건	부의안건	비고
2001.5.11 (금)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따른업무추진상황 〈사회복지과〉 - 농소운동장조성사업추진상황 〈자치행정과〉 (잔디설치변경사항)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5.12 (토) 11 : 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추진상황 〈허가과〉 - 2001년도 방역업무추진상황 〈보건소〉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울산광역시화장장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1. 5. 11(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5. 11(제4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보고자 : 구청장 조승수

2) 주요내용

○ 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 현재까지의 업무추진상황
- 후보지 접수현황(창평기내미골외10곳)
- 인센티브 규모 잠정합의내용(120억원 지원, 30억원 추가요구)
- 주민투표 실시계획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3일간

○ 방　　법 : 우편투표 및 비밀투표

○ 투표권자 : 만20세이상 세대 (세대단위 1표)

○ 조치사항

- 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편투표방식 보다는 직접투표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회 입장을 정리하고 집행부에 촉구함.

[농소운동장조성사업 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1. 5. 11(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5. 11(제4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보 고 자 : 총무국장 정대경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북구 창평동 391번지일원
- 면　　적 : 44,131㎡(13,350평)
- 시공기간 : 2001. 3~2001. 9월말
- 사 업 비 : 4,028백만원

○ 추진상황

- 1999.12.31 : 편입토지 보상완료
- 2000.12. 1 : 시공업체 입찰계약
- 2001. 2.26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완료
- 2001. 3.26 : 공사착공(현공정 25%)

○ 요　　점 : 현재 농소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변경

○ 천연잔디구장의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유지관리측면 직영과 위탁 비교하여 재정여건에 큰부담 작용(위탁 연80백만원정도 소요)
- 대　책 : 천연잔디보다 2배정도 공사비가 더 소요되나 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조잔디 구장으로 변경

○ 조치사항

- 당초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방안은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하며, 시설비문제 등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요구함.

[농소2동 갈밭들 개발계획 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1. 5. 12(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5. 12(제4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허가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허가과장 김환조

2) 주요내용

○ 추진상황

- 갈밭들은 경지정리가 된 농지이나 산업로 개설로 오림들과 분리되어 영농여건 악화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지며,
- 2000. 3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개발욕구로 난 개발이 우려되며 특히 무분별한 개발이 되었을 경우 산업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 도로 및 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토지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함.

○ 개발방법

- 본 개발계획의거 각 필지별 개별개발 신청시 저촉부분 기부채납조건으로 개발 허용

○ 예상문제점

- 개발계획의 수립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계획수립 지침상으로는 자연녹지 지역내 세부시설 결정이 불가함에 따라 구속력이 없음.

○ 조치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큰 테두리안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하도록 촉구함.

〔2001년도 방역업무 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1. 5. 12(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5. 12(제4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보건소

○ 보 고 자 : 보건소장 박혜경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2001년 방역예산
- 보건소 방역소독 실시 계획
- 방역소독 실시 계획
- 월별 방역소독 계획
- 하절기 요일별 방역소독 실시 계획
- 소독장비 보유현황
- 일제방역의 날 운영계획(6월~9월(4개월간) 매월2·4째주 수요일)
- 동 방역실시 계획
- 주민자율방역반 지원계획

○ 추진상황

- 방역기초자료 조사실시
-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 실시

○ 조치사항

- 주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동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함.

제11절 제44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진영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5. 22. 10 : 30

다. 회　　기 : 2001. 5. 22 ~ 5. 23(2일간)

라. 부의안건

- ○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외2건(구청장 제출)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 ○ 현장확인의건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승수 구청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를 폐회한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오늘 또다시 제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 조례안외 2건을 심의처리하고 문예회관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상황등 2건의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출발한 우리 북구가 신설된 지 어느덧 4년

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설초부터 우리구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었던 북구청사건립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한 결과, 이제 연암동 신청사 입주를 열흘여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임시청사를 이용하면서 행정구역과 청사가 동떨어진 관계로 구민의 불편은 물론, 간부공무원이하 전직원들의 고충 또한 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 주신 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벽두부터 우리 북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온 공설화장장 이전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주민투표가 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는 공명정대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이 문제로 인해 표출된 지역간·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기에 수습하고 그간 낭비된 행정력을 쇄신할 특단의 대책도 수립·시행하여 12만 구민의 화합 속에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5. 22 ~ 5. 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5.22 (화) 10 : 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원안가결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원안가결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원안가결
		4. 제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 관한조례안〈총무과〉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수정가결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원안가결
		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문예회관건립관련업무추진상황 9. 현장확인의건 ○ 강동신명채석허가지역 현장 〈농림수산과〉 ○ 신청사건립현장〈총무과〉	
2001.5.23 (수)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추진 상황〈농림수산과〉	

- 당일의사일정 -

제4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5. 22 ~ 5. 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5.23 (수)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자치행정과〉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추진상황 〈농림수산과〉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사용등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5.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5. 22(제4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청사 신축후 대회의실을 북구 구민들이 예식장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을 방지하고, 사용신청 절차를 정하여 대회의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사용자범위와 사용신청 절차 규정

○ 대회의실 사용료 징수금액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 대회의실 사용면제자의 범위 규정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토록 규정

○ 대회의실 운영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주민편익제공과 대회의실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5. 14(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5. 23(제4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융자 지원시 필요한 조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장의 자의성 제한과 융자대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융자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시 인적과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으나 인적담보만으로 규제완화

○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 조치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융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위해 지도 점검으로 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기구에 설치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어 규제개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생략)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 3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 1명의 보증인 또는 대부신청액에 상응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개정안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③ 〈삭제〉**
제9조(지도방문)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방문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방문)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방문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생략)	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1인의 보증인 또는 대부신청액에 상응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방문)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과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연 1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방문)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과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방문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예회관건립관련업무]

1) 보고현황

- ㅇ 보고서제출 : 2001. 5. 19(구청장)
- ㅇ 보고일자 : 2001. 5. 22(제4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ㅇ 해당부서 : 자치행정과
- ㅇ 보 고 자 : 총무국장 정대경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3,101㎡(938평)
- 사업기간 : 2000년 3월 ~ 2002년6월
- 주요문화시설 : 공연장(500석정도) 전시실(2실) 문화교실(4실)등
- 사 업 비 : 50억원

○ 추진상황

- 1999. 4.15 : 지방문예회관건립 국고보조사업신청
- 2000. 3.25 : 국고보조 20억원 사업확정
- 2000. 6.20 : 국비보조금 10억원 교부
- 2000. 7.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00. 9.29 : 울산광역시 투·융자사업심사승인
- 2000.11.16 : 계속비 50억원 사업승인
- 2001. 4.17 : 북구문예회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공고
- 2001. 5. 2 ~ 3 : 설계공모 참가등록

○ 향후 추진계획

- 2001. 6.15 ~ 16 :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접수
- 2001. 6.25 :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실사 및 당선작 발표예정
- 2001. 9월 : 실시설계 납품 및 공사업체 선정
- 2002. 6월 : 준공예정
- 설계공모시상비 : 예산전용으로 사용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현시점에서 문예회관 건립추진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입지가 구청사 앞에 있는 것도 맞지 않고 설계공모 시상비를 의회에서 삭감하였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

는 행위임으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촉구함.

〔강동신명채석허가에따른업무〕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1. 5. 19(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5. 23(제4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 주요내용

○ 현 황

- 임야소재지 : 신명동 산74번지외 3필지
- 허가면적 : 95,550㎡(28,904평)
- 허가수량 : 1,700,000㎥
- 허가일자 : 2000. 8. 22
- 수허가자 : (주)우성산업개발 이기윤
- 석재종류 : 연암·보통암
- 채석방법 : 착암기이용 발파
- 사용용도 : 울산신항만 조성공사 매립용

○ 추진상황

- 채석허가 : 2000. 8. 22
- 1차, 2차, 3차 착수계 제출
- 주민탄원서 접수 및 회신
- 4차 착수계 제출
- 사업착수 승인
- 채석변경허가 신청 후 허가승인

- 여름철 재해방지시설물 설치 촉구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여름 장마철 토사유출로 바다양식장 피해 예상과 주민교통불편과 채석 발파시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여름장마철 토사유출 등의 피해방지와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촉구함.

제12절 제45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강혁진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6. 27. 10 : 00

다. 회　　기 : 2001. 6. 27 ~ 6 27(1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1세기 북구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청사에서 첫 회의인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적 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존속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업용수부족과 식수난이 겹쳐 전국에 걸쳐 많은 주민과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장마로 가뭄이 해갈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가뭄

대책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우리 12만 주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신청사가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화합하며 희망이 있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북구의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비품·가구하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실내장식 및 비품으로 설치된 것을 다소 과장된 보도로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6. 27 ~ 6. 27(1일간)

일 시	순서	부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01.6.27 (수) 10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원안가결
		2.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27(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6. 27(제4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화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구본청 한시기구 및 그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존속기한 연장

- 당초 : 2001년 6월 30일까지

- 변경 : 2002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연장승인 (울산광역시 자치13101-50886, 2001. 6. 15)

○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즉시민원처리제도 확대 시행, 구 이관사무의 지속적인 통제기능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본래 기능인 주민의 문화, 복지기능 수행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과 동기능전환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설치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3절 제46회 제1차정례회

1. 개최배경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나. 개회일시 : 2001. 7. 7. 11 : 00

다. 회　　기 : 2001. 7. 7 ~ 7. 16(10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외1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오의원외 3인 발의)
- ○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2001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님과 초대의원님, 류재락 의원님을 비롯한 울산시 초대의원님과 전·현직 시의원님, 그리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새천년 첫 정례회를 신청사에서 개회하기까지는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와 조기신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다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만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청사에 걸맞는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때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의정전반에 걸쳐 구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의회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의정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우리의회는 구민의 참여 속에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제2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은 우리의회 스스로 반성하고 12만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실천하여 기초의회로서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 7. 7 ~ 7. 1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7 (토) 11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 〈결산검사대표위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4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보 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7.8 (일)		일 요 일	
2001.7.9 (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1.7.10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1.7.11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1.7.12 (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13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2001.7.14 (토)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등의 설치에관한조례안 〈도시교통과〉 2.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과〉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농림수산과〉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1.7.15 (일)		일 요 일	
2001.7.16 (월) 11 : 00	3	1.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승인가결 승인가결

— 당일의사일정 —

제4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1. 7. 7 ~ 7. 16(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13 (금)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안 〈농림수산과〉 ○ 2001가뭄대책추진상황 〈농림수산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7.14 (토) 10 : 30	3	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 설치에관한조례안 〈도시교통과〉 2.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과〉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1.7.15 (일)		일 요 일	
2001.7.16 (월) 10 : 30	4	1.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인가결 승인가결 심의보류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안음식점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 6 (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7. 14(제46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을 행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 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허용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방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

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준농림지역안 음식점 설치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음식점 설치 허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4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3

○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설치 가능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최소한의 시설을 허용하고자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라는 표현보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함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제정·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음식점의 설치제한 특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	제4조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생략)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③(생략)	부 칙 ①(제정안과 같음)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③(제정안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 12 (윤종오의원 외 3명)

○ 심의일자 : 2001. 7. 16(제46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로 위임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및 법률적 체계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기능직공무원중 서무, 인사, 비서, 경리, 감사, 조사, 비밀, 물품출납, 교환, 속기, 노무자의 감독, 보안, 경비, 승용차운전원, 구급차·산불진화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2항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2항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2항과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공무원의 의견 및 공직사회의 풍토,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심의보류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1. 7. 13

○ 보고일자 : 2001. 7. 13(제46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중산동 828번지

• 조성대상 : 부지 180천평 중 100천평정도

• 추가조성계획 : 60천평(연간 20천평)

• 조성기간 : 2002~2004(3년간)

• 소요예산 : 총 4,897백만원

• 문제점및 대책 : 부지임대차계획, 입주자자격 선별, 작목선정

• 금후 추진사항

-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의회보고 : 2001. 7. 13

- 입식작물 재배의향조사 : 2001. 7월

- 수출전문단지 용역완료 : 2001. 9. 30한

- 수출전문단지조성계획 및 예산신청 : 2001. 10월

- 부지임대차 계약완료 : 2001. 11월

- 기반조성설계 : 2001. 12월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수출전문단지 조성시 기존 경작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 요구함.

〔2001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1. 7. 13

○ 보고일자 : 2001. 7. 13(제46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가뭄우심지역 현황 : 가대 · 달천지구외 5개지구 56ha

• 일정별 추진상황

- 2001. 5.16 : 농작물가뭄현황업무보고
- 2001. 5.17 : 가뭄대책추진상황실운영
- 2001. 5.30 : 가뭄대책예비비 60백만원 확보
- 2001. 6. 1 : 가뭄대책장비긴급지원
- 2001. 6.15 : 긴급관로설치 용수공급
- 2001. 6.16 : 동별 가뭄대책사업 적극추진
- 2001. 6.17 : 항구적 용수개발사업 실시계획
- 2001. 6.19 : 전지역 가뭄완전해갈

· 주요 지구별 추진사항 등

· 건의요구사항 : 항구 대책비(98백만원) 2회추경시 확보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지역에 철저히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세워 차질 없이 업무 추진되도록 요구

제14절 제47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강혁진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9. 15. 11 : 00

다. 회　　기 : 2001. 9. 15 ~ 9. 25(11일간)

라. 부의안건

- ㅇ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구청장 제출)
- ㅇ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01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대참사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북구의 경제가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구민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지방세 수입보다는 국·시비 보조에 의한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분석되어진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나 행사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북구는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

매년 태풍은 9월부터 많이 발생하여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초부터 시작된 감사원 종합감사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까지 더욱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감사원 감사기간을 피해서 임시회를 집회하고자 하였지만, 수감일정의 변경 등으로 중복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

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9. 15 ~ 9. 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9.15 (토) 11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 제4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9.16 (일)		일 요 일	
2001.9.17 (월)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수정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2001.9.18 (화) 10 : 30	3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세입분야 (기획감사실,지방세과) ◈ 세출분야 ㅇ기획감사실	
2001.9.19 (수) 14 : 00	4	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3.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ㅇ보건소 ㅇ의회사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9.20 (목) 14 : 00	5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ㅇ총무국 (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001.9.21 (금) 10 : 30	6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ㅇ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산과,허가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9.22 (토) 10 : 30	7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1.9.23 (일)		일 요 일	
2001.9.24 (월) 10 : 30	8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2001.9.25 (화) 11 : 00	9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 의결	원안가결

- 당일의사일정 -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9. 15 ~ 9. 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9.19 (수) 14 : 00	4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세입분야(기획감사실,지방세과) 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4.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수정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원안가결
		7.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 당일의사일정 -

제4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9. 15 ~ 9. 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9.24 (월) 10 : 30	4	1.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원안가결

일 시	처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2001.9.25 (화) 11:00	5	1.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 의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9. 5(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9. 17(제47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재심의일자 : 2001. 9. 19(제4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1·2단계 지방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구의 한시기구 등 기구 및 분장사무조정,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변경 등 조례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와 구민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과 조정

• 통폐합

-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센터운영단(한시기구) → 자치행정과(한시

기구)

• 신 설 : 문화공보과

○ 분장 사무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민방위업무 등에 관한 사무

• 문화공보과

- 구정홍보 및 공보발행,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업무 등에 관한 사무

• 환경위생과

-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신설)

○ 보건진료소 위치 등 변경

• 신명진료소 : 신명동 153-6번지 → 신명동 145-2번지

• 어물진료소 : 어물동 58 번지 → 어물동 58-13번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0조 수도법 제32조외(※수도법개정법률 제6449호, 2001. 3. 28)

○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기 승인된 범위 내에서 기구의 통합 및 신설을 하여 일부 사무를 재조정코자 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간이상수도 및 물 관리 업무는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국 업무를 신설코자 함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수정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경제사회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의2(경제사회국에 두는 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개정안 제5호와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2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9. 5(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9. 17(제47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재심의일자 : 2001. 9. 19(제4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익제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 수도권내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안 제21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5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7조의2)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3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조례안 제21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 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2(공유재산관리조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행정자치부 공기 13330-199(2001.3.25)호로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 기타 재무회계와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9.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9. 24(제47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에 부응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종전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직접 대면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함.

○ 공인을 신조·개각하여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 또는 재등록하여 사용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사무관리규정 제35조 내지 제41조

○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어 종전에 관인의 신조나 개각용어를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용어의 정의를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구의 공인조례도 용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행조례 14조의 공인 보관방법도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에 맞게 보관방법 및 사용시간을 개정하여 24시간 NON-STOP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여, 민원서비스를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제로 변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9.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9. 24(제47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한 제증명 자료를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ONE/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규정신설

•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

•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만 민원증명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자수입증지사용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민원발급기사용부서의 장으로 정하였으나 『사용부서의 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에 대하여 보관방법이 없으므로 전자수입증지보관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5절 제48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11. 9. 10 : 30

다. 회　　기 : 2001. 11. 9 ~ 11. 13(5일간)

라. 부의안건

- ○ 신천동갈밭들개발계획및 LPG충전소허가와 관련한 구정질문(김수헌의원)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 현장확인의건(농소운동장조성공사현장)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깊어 가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제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행정사무처리상황현지확인 및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하나 하나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여 올 연말에는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 26일이면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감시하고 파악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사전 정보 획득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관행적인 답변과 임시 방편적인 책임회피성 답변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자세와 성실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 작성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5일 동안 열리는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11. 9 ~ 11. 1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1.9 (금) 10 : 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 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 김수헌의원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1.11.10 (토) 11 : 00	2	1. 현장확인의건 - 농소운동장조성공사현장	
2001.11.11 (일)		일 요 일	
2001.11.12 (월) 11 : 00	3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원안가결
2001.11.13 (화) 11 : 00	4	1.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 29(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1. 12(제48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72조, 행정자치부령 제9호

○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므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6절 제49회 제2차정례회

1. 개최배경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나. 개회일시 : 2001. 11. 26. 11 : 00

다. 회　　기 : 2001. 11. 26 ~ 12. 20(25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재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과)
-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구정에 관한 질문(윤종오의원)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장 제의)

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 기　　간 : 2001. 11. 27 ~ 12. 3(7일간)
- 실시주체 : 본회의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다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불합리한 모순과 관행을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자치구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된 지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2대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는 저를 포함한 우리 제2대 의원들로서는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구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설 자치구로서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구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모든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여러분의 의견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심기일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2만 구민여러분과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2001. 11. 26 ~ 12. 20(2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1.26 (월) 11 : 0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3.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4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1.27 (화) 10 : 00	2	1. 구정에 관한 질문 - 윤종오의원	
2001.11.27 (화)~ 2001.12.3 (월)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2001.12.4 (화) 10 : 30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1.12.5 (수)~ 2001.12.19 (수)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 산 안 심 사)	
2001.12.20 (목) 11 : 00	4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2. 4(제49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2001.9.25)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제정기관이 변경되어(시·도 조례 → 시·군·구조례로 변경)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비디오 및 시청제공업등의 등록), 제28조(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및 제3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 공포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률 제46조 ②항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수료 요율은 종전 광역시의 조례에 신고 및 등록은 2만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내의 타 구·군 역시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등록은 2만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고 있어 타 구·군과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5(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2. 4(제49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유토지자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승낙해 옴에 따라 대상부지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당초 심의결정된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및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와 면적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토지소유자가 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코자 하여 2001년10월19일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하여 동사무소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의결한 농소3동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코자 함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 및 동법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2조(기부채납) 및 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2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2. 4(제49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약수마을 동산회에서 마을회관 신축부지를 기부해 옴에 따른 기부채납의 적정성 및 약수마을회관의 신축

○ 음식물 재활용 및 자원화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효문운동장조성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의사항

• 기부채납(약수마을회관 신축부지)

• 약수마을회관 신축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효문운동장 조성

○ 심의내용

• 기부채납(약수마을회관 부지)

- 재산의 표시 및 재산가액(공시지가)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부채납(㎡)	재산가액(원)		비고
						단가	금액	
토지	중산동	932-4	답	720	720	82,900	59,688,000	

- 토지소유자(기부자) : 북구 중산동 류인덕

- 취 득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취득시기 : 2002년 1월중

• 약수마을회관 신축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32-4

- 규　　모 : 720㎡(218평정도) 지상2층 265㎡(80평정도)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2. 1 ~ 4월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29번지
- 규　　모 : 3,170㎡(959평) 지상2층 1,260㎡(381평)
- 사 업 비 : 2,770,000천원(토지 38,040천원, 건물 2,731,960천원)
- 사업기간 : 2002. 3 ~ 11월

• 효문운동장 조성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101-1번지일원
- 편입면적 : 12필지 22,333㎡(6,756평)정도
- 조성면적 : 12필지 19,500㎡(5,899평)정도
- 사업내용 : 축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주차장 96면, 스텐드 4식, 관리실겸 화장실 1동, 급수시설, 보호휀스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 ~ 2003.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약수마을회관 신축은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함에 따라 동 부지내 마을 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약수마을회관은 1층은 약수공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15평 정도는 회관으로 사용하나 이용상 불편이 있고 마을경로당이 별도로 있어 약수마을 주민 건의에 따라 동 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함으로 타당함.

○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중구에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톤당 3만 6,800원의 처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

정이므로 동 처리시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효문운동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연암동 일원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문운동장을 조성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코자 함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만 부결)

□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1) 보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26(구청장)

○ 보고일자 : 2001. 11. 26(제49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 보고설명요지

가. 계획기간 : 2000 ~ 2004년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

나. 성　　격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

구 분	중기재정계획(2000~2004)						비고
	합 계 (2000~2004)	기준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	발전계획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306,938	62,749	52,122	58,744	64,248	69,075	
일반회계	296,295	60,006	50,164	56,813	62,258	67,054	
특별회계	10,643	2,743	1,958	1,931	1,990	2,021	

다. 계획의 필요성 :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라. 계획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순, 세입전망, 세출전망, 자치행정부문, 보건복지부문, 생활환경부문, 지역개발부문

○ 중점추진 방향

- 국가정책목표와 연계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재원의 확충 및 투자 효율의 증대
- 주요사업투자 심사강화

○ 자치공동체 복구를 향한 전략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강화
- 균형 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건설
- 지역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 균형 있는 농업발전 여건조성
- 짜임새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창조
- 21세기 지식·정보 중추도시 조성
- 세계적인 자동차전문지구 부각

제17절 제50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1. 12. 21. 10 : 30

다. 회　　기 : 2001. 12. 21 ~ 12. 27(7일간)

라. 부의안건

- ○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일정상 어제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열렸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한 해 동안 꾸려왔던 우리 구 살림살이가 마무리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되거나, 예산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다반사인 사례를 보고 집행부에 대해 적잖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감사자료의 작성이 누락되거나 각종 통계자료가 맞지 않은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와 관심을 보였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고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3년이 넘은 지금 진정한 자치시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우리 북구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신설 자치구로서 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는 임오년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2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 12. 21 ~ 12. 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2.21 (금) 10 : 30		개 회 식	
개 회 식 직 후	1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3.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4.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계속〉 ◈ 세입분야(총무국-지방세과) ◈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 지방세과,민원봉사과)	
2001.12.22 (토) 10 : 30	2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2001.12.23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2.24 (월) 10 : 30	3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001.12.25 (화)		공 휴 일	
2001.12.26 (수) 10 : 30	4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 종합심의 의결	수정가결
2001.12.27 (목) 15 : 0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환경위생과)	부결 부결 부결

- 당일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1.12.27 (목) 15 : 00	5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ㅇ 예산안 설명(농림수산과) ㅇ 예산안 수정안 설명(기획감사실) ㅇ 계수조정 ㅇ 종합심의 의결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4.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환경위생과)	 부결 부결 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1) 심의경과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구청장)

ㅇ 심의일자 : 2001. 12. 27(제5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ㅇ 수도법 제32조(법률 제6449호 2001. 3. 28)의 개정으로 종전에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ㅇ 우리 구의 분장사무 중 경제사회국에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

- 광역시에서 수행하던 상수도업무 중 일부업무가 구·군으로 이양

○ 분장사무의 조정(안 제5조의 2)

• 경제사회국

-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신설)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수도법 개정법률 제6449호(2001. 3. 28 공고, 2001. 9. 29 시행)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이상수도 업무는 종전에 광역시 업무에서 자치구의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제사회국 소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 다만 본 건은 47회 임시회 시 심의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2. 27(제5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법 제32조(법률 제6449호 2001. 3. 28)의 개정으로 종전에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 우리 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2001. 9. 29부터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됨.

○ 정원조정 : 증 1명

○ 정원의 총수 : 374명 → 375명(증 1명)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 부칙 제6조에는 「동규정 제14조 1항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표준정원은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정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으로 본다.

○ 동규정 제2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울산광역시 기획 12200-39(2000. 1. 17)호에 의하면 자치단체별 지

방공무원 정원은 새표준 정원 고시에도 불구하고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1. 12. 31일까지는 증원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증원요인 발생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구는 기획12200-50739(2001. 11. 7)호로 정원승인을 얻어 우리 구의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여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 다만 간이상수도 등 물관리 업무를 토목서기 1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3)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1. 12. 27(제50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법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저수조 관리 등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시설의 관리

- 간이상수도 - 구청장
- 소규모급수시설 - 사용자협의회 대표자

• 점검 : 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 유지보수 책임 : 관리자(구청장 지원 가능)

○ 관리비용

• 간이상수도 : 사용자로부터 요금징수 할 수 있음.

• 구청장 일부지원 가능

○ 협의회 설치

• 설치 : 시설단위별 설치

• 기능 : 시설의 청결 유지 및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 도모

○ 관리의 위탁

• 구청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심의결과 : 부결

제18절 제51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1. 29. 10 : 30

다. 회　　기 : 2002. 1. 29 ~ 2. 6(9일간)

라. 부의 안건

- ○ 구정에관한질문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와관련하여(류재건의원)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 현장확인활동의건
- ○ 도시기본계획변동(G.B)에따른현장확인및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주요변경구역 14개소)
- ○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 외 8건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기인 제5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구정질문과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 증수여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벌써 11년째가 되며, 지난 98년 7월 구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우리 제2대 북구 의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광역시와 더불어 신설된 북구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신설구로서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우리 울산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야말로 임오년 한 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며, 우리 북구가 가일층 발전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12만 구민 모두가 다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굳은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마지막까지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해 첫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 1. 29 ~ 2. 6(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1.29 (화) 10 : 30		개 회 식	
개회식 직 후	1	1.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 류재건의원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2002.1.30 (수)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국(총무과,문화공보과)	
2002.1.31 (목) 10 : 30	3	1. 현장확인활동 - 도시기본계획변경(G/B)에따른현장확인 및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주요변경구역14개소)	
2002.2.1 (금) 10 : 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국(자치행정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2.2 (토)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민원봉사과)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3.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자치행정과) 4.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2.2.3 (일)		일 요 일	
2002.2.4 (월) 10 : 3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02.2.5 (화) 10 : 3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002.2.6 (수) 10 : 30	8	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미화과)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미화과) 3.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4.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농림수산과)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징수절차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2(제5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납입고지 : 납기 개시 5일전까지 통지

○ 과태료 납부기한 : 납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 18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33조의 2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시행령 제59조 4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른 본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2(제51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내·외에서 울산광역시북구를 빛낸 공적이 현저한 구민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길이 보전함으로써 울산광역시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명예구민증은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

○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

○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함

○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조례의 제정취지가 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함으로 바람직한 조례라 사료되며,

○ 기존의 타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272)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24(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6(제51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한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 순위 지정

○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지정

○ 체육시설의 사용료

○ 손해배상

○ 위탁관리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우리구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하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5)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6(제51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은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대행계약 및 방법, 사업장 일반 폐기물처리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

○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명령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수집·운반 가능

○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권역별 계약

○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방법 구체화

○ 쓰레기봉투 종류 중 "공공용봉투"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조정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 신설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97년 7월 15일 제정 공포 이후 8회에 걸쳐 부분개정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등 부분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안이 있어 전면 개정코자 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조례 개정안 중

- 제6조 ②항 중「다음 각호와 같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라고 표현함이 타당하며,
- 제10조 ④항 중「각호의 자는」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며,
- 제20조 ②항 중「다만, 각호의 1에」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23조 ②항 중「투기행위 신고기한은」은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으로 함이 명확한 표현이라 사료됨.

3) 심의결과 : 수정가결

4) 개정·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 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u>다음 각호와</u> 같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 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u>다음 각호의 번과</u> 같다.

개 정 안	수 정 안
1.(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생략)	2. (개정안과 같음)
3.(생략)	3. (개정안과 같음)
4.(생략)	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1.(개정안과 같음)
2.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3. (생략)	3. (개정안과 같음)
4. (생략)	4. (개정안과 같음)
5. (생략)	5.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생략)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략)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1.(개정안과 같음)
2.(생략)	2.(개정안과 같음)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생략)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채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6(제5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 신설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있어 전용봉투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1,000원,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월1,000원을 징수하고, 감량 의무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음식점, 생선가게 등)은 배출량에 따라 부과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종류, 제작, 판매 등 관련 조항 삭제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음식물쓰레기가 성암매립장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현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분리배출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19(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2. 6(제5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관리

○ 농촌용수 계획 수정 :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정·운영

○ 농촌용수의 오명방지 :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 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 용수시설의 관리 : 년 1회 이상 조사 기록관리, 필요대책 마련

○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 농촌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대책 심의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농촌용수구역 안의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위임된 사안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9절 제52회 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윤종오의원 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2. 4. 11. 10 : 30

다. 회　　기 : 2002. 4. 11 ~ 4. 19(9일간)

라. 부의 안건

- ○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구청장 제출)
- ○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구청장 제출)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안(류재건의원외 2명)
- ○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결의안(윤종오의원외 2명)

2. 개회사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제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동료의원들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2대 북구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2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 북구가 신설구로서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원 모두는 각종 안건심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99년9월1일부터 75일동안 실시된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울산공항의 문제점을 찾아서 울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개선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8월에는 시내버스요금의 과다인상과 관련하여 33개 노선에 총 1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실사를 통해 요금인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울산광역시 교통행정의 잘못을 시정토록 강력히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크고 작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쳐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한 연수를 위해 북구의원공무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구민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 성과에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기초의회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기초의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 함께 해온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제2대 의원들에게 따끔한 질책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 한 걸

3. 의사일정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 4. 11 ~ 4. 19(9일간)

일 시	개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4.11 (목) 10 : 30		개 회 식	
개 회 식 직 후	1	1.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제5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심의보류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심의보류
		6.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원안가결
2002.4.12 (금)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과)	원안가결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건(총무과)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문화공보과)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지방세과)	원안가결
2002.4.13 (토) 10 : 30	3	1.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환경위생과)	심의보류
		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원안가결
2002.4.14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2.4.15 (월) 10 : 30	4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세입분야(기획감사실,지방세과) ◈ 세출분야 ㅇ 기획감사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ㅇ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 (도시교통과)	
2002.4.16 (화) 10 : 30	5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ㅇ 총무국(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공보과, 지방세과,민원봉사과)	
2002.4.17 (수) 10 : 30	6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ㅇ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ㅇ 보건소 ㅇ 의회사무과	
2002.4.18 (목) 10 : 30	7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ㅇ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건설과,농림수 산과,허가과) ㅇ 계수조정	
2002.4.19 (금) 11 : 00	8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ㅇ 종합심의의결	수정가결

4. 주요안건처리 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4. 3(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4. 11(제5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일체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신설

○ 전염병예방법 등과 관련한 사무 정비

• 1 ~ 3종 전염병 → 1 ~ 4군 지정전염병으로 개정

○ 의료법과 관련하여 의원 등의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 신설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안경업소 등록 등의 업무 신설

○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 등의 사무 정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마약류(대마재배자)와 관련한 사항 신설 등

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

○ 지방자치법 제95조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어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업무를 정비하여 보건소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변경의 건(의안번호 제2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3. 28(구청장)

○ 심의일자 : 2002. 4. 12(제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당초 승인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송정동사무소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송정동사무소 신축

• 취득재산 : 부지 1,650㎡, 건물 지상 2층 728㎡(220평)

• 취득대상 토지현황

- 물건표시 : 북구 화봉동 555번지 답 2,552㎡중 1,650㎡

- 도시계획구역 : 개발제한구역

- 토지위치 : 송정초등학교 북쪽

- 토지소유자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2-18번지 주현기

• 취득사유

- 건물의 노후화로 대수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함.

• 취득시기 : 2002년 5월 ~ 2003년 12월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1) 심의경과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3. 28(구청장)

ㅇ 심의일자 : 2002. 4. 12(제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ㅇ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관리코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ㅇ 문화의 집 시설의 범위

ㅇ 문화의 집 사업의 범위

ㅇ 운영요원 규정

ㅇ 문화의 집 개방, 사용허가, 사용제한 규정

ㅇ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임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ㅇ 우리 구는 농소2동 문화의 집을 2002년 2월 5일 준공하고 동년 2월

22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소3동 문화의 집은 현재 설계용역 계획 중이며 2002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 ㅇ 문화의집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135조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며,
- ㅇ 본조례안 중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으로,
- ㅇ 본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고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조례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1) 심의경과

- ㅇ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3. 28(구청장)
- ㅇ 심의일자 : 2002. 4. 12(제5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ㅇ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고,
- ㅇ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ㅇ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세율 인하
- ㅇ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

다. 전문위원 검토요지

○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써 자동세의 납기와 중복되므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법률 제6549조로 2001. 12. 29일 공포되고, 2002. 1.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코자함은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2/1,000로 인하코자 함은 지방세법 제188조 1항 5호에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 2항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1,000로 조정함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 국내 공항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 사례 역시 인천, 김포를 제외하고는 2.5/1,000내지 2/1,000로 조정하여 항공기의 정치장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세율을 인하 하여서라도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은 바람직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관련 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2. 4. 1.(구청장)

○ 보고일자 : 2002. 4. 15(제52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 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2) 주요내용

○ 위　　치 : 북구 양정동 산 1번지 일원(효문, 어물포함)
(공군 8991부대 5부대)

○ 설정하는 사유

• 본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시 효문·양정·강동동 주민들의 집단반대 민원이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2. 4. 16.(구청장)

○ 보고일자 : 2002. 4. 17(제52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 해당부서 : 환경미화과

○ 보 고 자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2) 주요내용

○ 운영실태

•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위원회 구성 : 10명

• 근무인원 : 6명(자활후견기관 4명, 북구주민연대 2명)

• 취급품목 : 중고 가전, 가구, 의류, 도서, 생활용품, 유아용품, 환경제품

○ 향후추진계획

- 공공청사 시설결정지로서 동사무소 등 관공서 건립 때까지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연장(3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 각종 단체와 연계한 알뜰시장 개최로 재활용교환판매장 운영활성화 등

제4장

예산결산심의사항

□ 제 1 절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제 2 절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제 3 절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4 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5 절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6 절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7 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제 8 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제 9 절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1절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12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절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29(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0. 7. 14(제34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0. 7. 7 ~ 7. 12(6일간)

○심사결과 : 원안승인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강 혁 진	김 진 영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세입 결산액 : 63,943,162천원

○세출 결산액 : 46,626,903천원

○세계 잉여금 : 17,316,259천원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세입에 있어

- 세입장부를 관리함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관련 장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99일반회계 세입중에 종합토지세의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가 무려 약10억원에 이름.

이를 예산편성시나 추경 예산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다소 소극적 이었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세출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 편성시 수입이 확실시 되는 세수는 예산에 반영하고 징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세출에 있어

- 예산배정은 지출현황에 따라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예산배정액을 조정함으로써 배정잔액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배정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정을 함으로써 배정잔액도 남고 불용액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배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정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잔액을 검토함으로써 추경예산 수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산 편성시에는 실제 사용이 예상되는 내역과 금액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5. 심사의견 요지

○세입부문에 있어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677,68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63,239,787천원에 수납액은 60,308,784천원으로 징수결정의 95.4%로 전년도 97.5% 보다 다소 하락하였는데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세출에 있어

- '99결산심사보고시 일부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안일한 설명을 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 연도에는 보다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가 됨.

- '99년도 예산을 보며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일손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5,2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1,0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사항이며
- 결산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액 9,266,893,000원 중 지출액 7,418,291,910원이고 불용액이 1,848,601,090원이며,
- 총무국 총 예산액 15,892,196,000원 중 지출액이 7,112,737,000원이고 불용액은 66,968,000원이며,
- 경제사회국 총 예산액은 12,406,586,790원이고 지출액은 11,027,833,7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1,201,547,470원과 불용액이 177,205,620원이며,
- 도시개발국 총 예산액은 12,695,802,000원 중 지출액이 8,450,525,580원이고 이월액 3,865,823,900원과 불용액이 379,452,520원이며,
- 건설과의 경우 명시이월 2,470,700,150원, 사고이월 954,351,400원이고, 농림수산과는 명시이월 300,000,000원, 사고이월이 80,580,350원으로 예산관련편성법규를 충분히 연찬할 필요가 있음.

제2절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29(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0. 7. 14(제34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0. 7. 7 ~ 7. 12(6일간)

○심사결과 : 원안승인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강 혁 진	김 진 영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 예산액 : 225,664,000원

○ 지출액 : 222,764,630원

• 양정 새마을APT 뒤 법면복구공사 외 4건

○ 불용액 : 2,899,370원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심사의견 요지

○ 예비비 지출은 총5건으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예산운영 기본방침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대비하다 보니 달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자 변동율이 생겨서 이자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극히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 '99년 예산운용에 있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필히 예산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효문동 529번지 도로수해복구공사 1,150,000원 상안교 밑 우회도로 긴급수해복구공사 543,000원 신명천 제방응급복구공사 1,205,920 등 예비비 불용액 2,899,370원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재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제3절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6(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0. 11. 13 ~ 11. 16(5일간)

다. 의결일자 : 2000. 11. 16(제3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마. 삭감내역

○세입 - 0

○세출 - 재난위험시설물 철거 및 소공원 조성공사등 3건 575,447천원

2. 2000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 예산액	%	기정예산안 (제2회추경)	%	증 감	비 고
합 계	62,153,364	100	51,126,743	100	11,026,621	
일 반 회 계	59,339,031	95.52	48,792,189	95.4	10,546,842	
특 별 회 계	2,814,333	4.5	2,334,554	4.6	479,77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0.2	100,110	0.2	-	
의 료 보 호 기 금	1,366,956	2.2	965,968	1.9	400,988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0.1	98,829	0.2	-	
주 차 장	188,163	0.4	188,163	0.3	-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1,060,275	-	981,484	2.0	78,791	

3. 제안설명

(제37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 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재산세의 목표액을 9,600만원 증액하여 24억8,1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2,000만원 잡수입 1억1,000만원 등 5억6,16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51억5,905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구재정지원 보통교부금은 6억9,984만8,000원을 삭감정리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북구청사건립 국내차입금 40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21억5,336만4,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2,66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4,684만2,000원이 늘어난 593억3,903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여 28억1,4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필수 법적경비의 편성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북구청사건립 지방채 차입금 40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 반영하고 교부세, 교부금 등 성립전 예산편성분에 대하여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할 법정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4,900만원과 국고대여자녀학자금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상적경비는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행사 추진비 5,100만원과 북구사격선수 숙소 임차비로 1,300만원, 종량제규격 봉투제작 부족분 2,4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5,600만원 등이며 전산개발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지역정보센터설치비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투자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에 따른 시비 23억200만원, 지방채 40억5,000만원, 분수대 설치 1억원과 북구임시 도서관 건립 2억2,400만원 구민회관건립 20억원,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2,000만원, 고정식 공중화장실 신·개축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투자사업으로는 울산소로 3-89호선 소방도로개설비 4억원, 약수마을 진·출입도로개설비 6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공원 조성비 5억7,000만원,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7,977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98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달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국비반납금 7,8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은 북구 구민회관신축공사로 북구청사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20억원, 시비10억원, 구비20억원 총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제공 및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습니다만 교부세, 교부금 등 국·시비 지원이 많아 우리구민을 위한 복지기반 시설확충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계		62,153,364	51,126,743		575,447	538,656	1,114,103	62,153,364	1,864,601
일반회계		59,339,031	48,792,189		575,447	502,674	178,121	59,339,031	180,171
특별회계		2,814,333	2,334,554			35,982	35,982	2,814,333	84,430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1,000	1,000	100,110	3,003
	의료보호기금	1,366,956	965,968					1,366,956	41,009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98,829			2,698	2,698	98,829	2,965
	주차장	188,163	188,163					188,163	5,645
	농공단지조성사업	1,060,275	981,484			32,284	32,284	1,060,275	31,808

제4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1. 20(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0. 12. 21(제38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심의결과 : 수정가결

라. 삭감내역

○세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건 2,793,827천원

○세출 - 소규모 주민편의 숙원사업 등 80건 3,749,574천원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0. 12. 4 ~ 12. 20(17일간)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류 재 건	김 진 영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윤종오

2.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 예산액	%	2000당초 (안)	%	증 감	비 고
합 계	43,926,027	100	39,297,461	100	4,628,566	
일 반 회 계	42,237,061	96.2	37,773,701	96.1	4,463,360	
특 별 회 계	1,688,966	3.8	1,523,760	3.9	165,206	

구 분	2001 예산액	%	2000당초 (안)	%	증 감	비 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0.5	100,110	0.2	117,290	
의 료 보 호 기 금	1,172,784	2.7	1,084,037	2.8	88,747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0,191	0.2	96,131	0.2	14,060	
주 차 장	188,591	0.4	141,998	0.4	46,593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	-	101,484	0.3	-101,484	

3. 제안설명

(제38회-본회의 제1차)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12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은 우리 북구의 위상과 행정의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는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희망의 2000년에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 성숙된 주인의식과 참여정신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변함 없는 관심을 보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남북이 대립과 반목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의 등장과 유전자 복제의 성공 등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를 예

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며, 더 발전적인 마인더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미래를 대비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를 변화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여 북구발전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 마인더를 갖기 위한 행동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다 깊고 넓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북구는 새 천년에 걸 맞는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자치행정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이 반영된 21세기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인 북구 21C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열린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첫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북구발전을 위한 행정, 산업, 문화, 환경의 발전 토대가 조성되며, 2010년까지는 분야별 발전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과 중복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초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완료되어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흐름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기반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와 예산의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인 전자구정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7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 1,02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으며, 진장·명촌 구획정리지구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농·수산업과 축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벼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고, 소규모 어항개발과 수산자원

(제38회-본회의 제1차)

기반조성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장 유통단지조성사업과 매곡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산업로 확·포장공사와 국도 31호 4차선 확·포장공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우리 북구가 울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녹색환경도시 북구의 생활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환경이 살아 숨쉬는 자치공간 조성을 위해 호계어린이공원과 무룡고개 소공원정비, 강동산하 해안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북구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으로 임도개설과 염포로 가로수 갱신사업 시행 및 조림과 육림사업을 시행하였고 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46% 정도가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개최한 「제1회 행정개혁 박람회」 본선에 진출하여 대외적으로 북구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체제 개선" 제도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사례로 2001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넷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복구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된 신년 해맞이 축제는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무룡문화예술원의 개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향수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어울림 한마당 등 소규모 문화축제는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어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구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로 다함께 어우러져 잘 살자는 취지에서 "공동체"를 행정구현의 화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 자치·환경·복지 분야를 구정의 기조로 정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아래 2001년도에는

(제38회-본회의 제1차)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기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행정마인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복지 행정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2만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구민의 권리와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는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사회개발이 중심이 되던 시기로서 인간보다는 물질이 중요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나 인권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의 보장보다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물질적인 풍요와 산업화가 행정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궁핍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 해인 2001년에는 우리 북구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북구발전의 원년의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오랜 관행과 낡은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한 개혁과제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먼저 주민의 권리와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의 주인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민 중심의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완벽한 "전자구정"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결재의 확대 시행과 e-mail을 통한 업무처리 실시와 구정 기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으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도입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 및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서비스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신청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 시책보고는 영상보고회로 개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장비 리스제를 시범 실시하겠으며, 민원실에 무료 인터넷 폰을 설치하고 교체대상 컴퓨터의 무료 보급 및 동 민원사무 POOL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제38회-본회의 제1차)

를 앙양하는 인센티브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하반기에 4명씩 해외 선진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문화유적과 산업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시설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직원 공동체 함양을 위한 연수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복지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복지와 문화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및 녹지공간을 원하는 주민들을위해 환경분야의 다양한 시책개발과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아동 및 여성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으로 직업교육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사업과 재가봉사 등으로 지역의 노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결연사업 확대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및 여성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주부 인터넷교육과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 활성화로 구민의 환경의식수준은 타 자치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울산 환경운동연합과 실시해 온 자원 재활용 주민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경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숲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로변 경관 조성과 꽃길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도시녹화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과 도심속의 소공원 가꾸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과 재활용 상설 판매장 및 동천 자연학습장을 연결하는 환경체험 벨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38회-본회의 제1차)

또한 재활용 상설교육장을 준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교육 및 재활용 선별체험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교통의식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이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이 없고 주민건강에 좋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 7호선인 산업로를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행정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우리구의 청사를 2001년 5월말까지 완공하여 내년부터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사 내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공간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비 및 시비의 지원을 받아 북구 구민회관을 2001년 말까지 건립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도서관 및 독서실을 구 동울산세무서에 임시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 시대에 올바른 정보활용과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북구 정보화 센터를 개원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관내 부족한 소방도로개설과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7호선과 국도 31호선의 확·포장공사 및 국도 29호선 개설공사와 율동~호계간 배면도로공사 등 주요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439억 3,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2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19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7억 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1.9%이며, 조정교부금이 105억2,000만원, 보조금이 13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및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7억 7,0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사업에

(제38회-본회의 제1차)

20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에 1억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북구신청사가 준공되어 새로운 연암동 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 공정을 위해 조경 및 토목공사 등에 시비 23억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완벽한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서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전자구정 구축을 조기에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이버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무료전산교육과 주민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 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생산활동 지원과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해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제 살리기 선도업소를 확대지정하고 고용촉진훈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주민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구민회관 건립에 30억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9,700만원, 무룡문화예술원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을 기념하고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우리 구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단합을 위해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민건강 달리기 대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총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북구 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로수 가꾸기에 1억4,000만원, 어린이 공원 정비 및 도로 소공원 조성에 1억500만원, 경관림 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우리꽃길조성에 7,100만원, 육림사업에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활용 교육장 장비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하에

추진하였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확대하겠으며, 2001년에는 소규모 사료화시설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북구 전체의 70%까지 확대하여 축산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화 시설에 의한 처리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지역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채소류 주산단지조성에 1억1,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1억9,000만원, 수출농산물 예냉시설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로포장 2건에 1억5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1억4,000만원, 어장정화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총1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상안회관앞 제방겸용도로 포장과 농소3동 마을안길포장에 상방마을 도로포장 및 송정동 진입로 확·포장 등에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과 가로등 설치사업 및 경로당 신축과 농로포장 등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자립능력 고취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에 31억4,000만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호에 33억3,000만원,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노인복지에 7억6,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지원 등 아동복지에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분야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53억8,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방문간호사업과 급성전염병 관리 및 경로당 무료순회진료사업와 건강관리실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여러분!

2001년도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전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38회-본회의 제1차)

향후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한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긴축예산" 편	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12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施政演說)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심의결과 의견요지

○세입부문에 있어

- 2000년도 예산액 39,297,461천원이며, 4,628,566천원이 증가한 2001년도 당초예산액안 43,926,027천원임.
- 지방세수입에서 10,520,310천원과 조정교부금 전년도에 비해 2,580,886천원이 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계상을 보면 2000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억에서 1차 추경시 30억, 2차 추경시 31억으로 증가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세입추계가 미흡하다고 보아지며 세외수입 확충과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재정 수입확충에 전 공무원이 동참하여 어려운 재정운영을 극복하여야할 것이며
-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 전망으로 세입의 추계시에는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문에 있어

-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소외계층 및 사회개발등을 위하여 편성계상 하여야 함에도 예산안에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 경비를 대폭 증액해 경기불황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 의존율은 대폭 높아진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크게 줄어 소방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 예산편성지침과 상호관계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불충분한 답변과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전체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음.
- 또한 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나열식 편성과 일부 행사는 일회 소모성 행사사업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과정에서 삭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세 번째 계속하여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5.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43,926,027	2,793,827	3,749,574		429,925	1,385,672	41,132,200	1,233,966
일반회계		42,237,061	2,793,827	3,736,654		423,713	1,366,540	39,443,234	1,183,297
특별회계		1,688,966		12,920		6,212	19,132	1,688,966	50,669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6,212	6,212	217,400	6,522
	의료보호기금	1,172,784						1,172,784	35,183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0,191						110,191	3,306
	주차장	188,591		12,920			12,920	188,591	5,658
	농공단지조성사업								

제5절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4(구청장)

나. 수정안 제출 : 2000. 12. 22(구청장)

다. 심의기간 : 2000. 12. 22 ~ 12. 26(5일간)

라. 의결일자 : 2000. 12. 26(제39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바. 삭감내역

○세입 - 0

○세출 - 0

2. 2000년도 제4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액 (수정안)	%	기정예산액 (제4회추경 당초안)	%	증 감	비 고
합 계	62,750,006	100	62,625,626	100	124,380	
일 반 회 계	60,006,166	95.6	59,881,786	95.6	124,380	
특 별 회 계	2,743,840	4.4	2,743,840	4.4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0.2	100,110	0.2	-	
의 료 보 호 기 금	1,343,368	2.2	1,343,368	2.2	-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0.1	98,829	0.1	-	
주 차 장	188,163	0.4	188,163	0.3	-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1,013,370	1.6	1,013,370	1.6	-	

3. 제안설명

(제39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12만 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38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심의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지난 12월14일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꼭 필요한 경비의 최소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의 변경조정 등2000년도의 최종 예산 적립 위주로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1억 5,300만원보다 4억7,200만원이 증액된 62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598억8,1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등 4개의 특별회계가 기정 예상액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2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부분에서 달천농공단지조성완료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200만원이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농소운동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비 4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에서 3억4,1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억2,300만원등 경상예산에서 총 6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및 체납세정리 추진 우수 인센티브등 국·시비 지원 예산의 조정으로 보조사업이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자치구 재정 조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농소운동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비에 4억원과 재난위험시설물인 염포동 소재 미도아파트 철거 및 매입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비를 기정예산액보다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0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3억100만원이 증액된 1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예비비가 13억8,300만원이며, 잡손금 등 기타예산으로는 도시저소득전세자금결손보전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0만원을 감액한 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9회-본회의 제1차)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2,300만원이 감액된 1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천농공단지조성 완료로 인하여 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잉여금 3,2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는 총 7,000만원이 감액된 2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가 및 광역시 지원 예산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고 필수적인 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승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북구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은 물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62,750,006				1,379,281	1,379,281	62,750,006	1,882,500
일반회계		60,006,166				1,375,583	1,375,583	60,006,166	1,800,185
특별회계		2,743,840				3,698	3,698	2,743,840	82,315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3,003
	의료보호기금	1,343,368						1,343,368	40,301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98,829	2,965
	주차장	188,163						188,163	5,645
	농공단지조성사업	1,013,370						1,013,370	30,401

제6절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3. 24(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1. 3. 28 ~ 4. 4(8일간)

다. 의결일자 : 2001. 4. 4(제42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라. 심의결과 : 수정가결

마. 삭감내역

○세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 4건 2,665,896천원

○세출 - 구상안교 통로박스 설치사업 등 30건 2,876,011천원

2.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 예산액	%	기정예산안 (당초예산)	%	증 감	비 고
합 계	49,833,402	100	41,132,200	100	8,701,202	
일 반 회 계	48,138,647	96.6	39,443,234	96.0	8,695,413	
특 별 회 계	1,694,755	3.4	1,688,966	4.0	5,78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0.4	217,400	0.5	-	
의 료 보 호 기 금	1,176,821	2.4	1,172,784	3.0	4,037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0,191	0.2	110,191	0.2	-	
주 차 장	190,343	0.4	188,591	0.3	1,752	

3. 제안설명

(제42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24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금번 신청사 관련예산과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광역시세 징수교부금이 2억9,826만원이 증액된 12억12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6,843만9,000원이 증액된 33억6,843만9,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15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63억3,415만1,000원을 증액하고,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 설치설계비에 5,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비에 1억5,000만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재해대책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3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억3, 340만2,000원이며, 이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87억12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9,541만3,000원이 늘어난 481억3,86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8만9,000원이 증액된 16억9,4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및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신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와 농소운동장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환경미화원의 임금 기준

(제42회-본회의 제1차)

단가 조정 및 신청사 구내 식당관리·취사요원 등의 인건비에 7,840만원을 계상하였고,경상적경비로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1,646만9,000원과 제2회 정자해변 한·일 재즈 페스티발행사에 1,000만원 구민의 노래 제작비에 95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에 1,619만원 등이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신청사 이전관련 각종 집기구입비 부족분에 1억4,244만1,000원과 동 인터넷 부스설치 장비구입비에 1,160만원, 동 민원 POOL 처리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 1,840만원과 농소2동 신청사 집기구입비에 1,220만원과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운영관련 경비에 1,6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에 8억원과 문화의 집 조성공사비에 4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비에 8억7,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20억1,126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재해예방시스템 강화에 300만원,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공사 설치설계비에 5,000만원과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공사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57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3만7,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75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농소운동장조성사업이 총사업비 40억2,858만4,000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건립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1,274만9,000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49,833,402	2,665,896	2,880,711		211,580	426,395	47,167,506	1,415,025
일반회계		48,138,647	2,665,896	2,876,011		200,000	410,115	45,472,751	1,364,182
특별회계		1,694,755	-	4,700		11,580	16,280	1,694,755	50,84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	-		6,212	6,212	217,400	6,522
	의료보호기금	1,176,821	-	-		-	-	1,176,821	35,305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0,191	-	-		-	-	110,191	3,306
	주차장	190,343	-	4,700		5,368	10,068	190,343	5,710

제7절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30(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1. 7. 16(제46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1. 7. 9 ~ 7. 12(4일간)

○심사결과 : 원안승인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윤 종 오	김 진 영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세입 결산액 : 77,442,131천원

○세출 결산액 : 56,035,326천원

○세계 잉여금 : 21,406,805천원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에 있어 1999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이 3,195,967천원인데 당초예산에 500,000천원을 세입 계상하고 그 차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된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에 유의하기 바라며, 종량제봉투 관리가 현재 년1회 이상 비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하고 있으나 분기1회정도의 재고조사로 정확한 수불 사항을 파악하고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봉투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은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세출예산의 집행시기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도로건설(자체사업,시설비)의 경우 전체 지출원인행위금액 3,112,668천원중 832,235천원을 12월에 하여 전체 지출원인행위 금액중 27%에 해당 됨.
- 향후 세출예산의 집행은 연말에 치중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시기에 맞추어 자금배정을 받아 다른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심사의견 요지

- 세입에 있어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4,995,710원이 발생하였으나 비록 2001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1회 추경시에는 전액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50,000,000원이 금고에서 가이월 상태로 휴면상태에 있어 폭주하고 있는 교통행정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로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며 차후 이와 같은 구민의 혈세가 잠자고 있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람.
- 세출에 있어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이 실제 집행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

용하였는지 위법지출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000년도 결산심사보고시 일부 해당 실과소장이 결산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안일한 설명을 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특히 일부 공무원은 결산은 이미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심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 심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연도에는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결산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가 됨.

○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이미 2000. 12. 22부터 29일까지 결산추경을 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구비 사업 및 일반운영비중에 백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 농림수산과의 공원녹지관리에서 가로변 수목 및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의 경우 당초예산 요구액의 50%를 삭감 승인하였으나 업무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여 이는 비록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차후 예산편성은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하여야 할 것임.

제8절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30(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1. 7. 16(제46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1. 7. 9 ~ 7. 12(4일간)

○심사결과 : 부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윤 종 오	김 진 영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 예산액 : 234,691,000원

○ 지출액 : 197,268,380원

•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사업 외 6건

○ 불용액 : 37,422,620원세입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심사의견 요지

○ 2000년도 예비비는 총7건에 197,268,38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

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일정금액을 계상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의 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에 다소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예비비 지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지출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 200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000,000원과 제4단계 공공근로 인부임 17,000,000원이 지출된 건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성격상 시행함이 타당하며 국비 확보지연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인정이 가지만 예비비 사용 후 확보된 국비를 전과 똑 같은 구비 부담율로 제5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서 결국 공공근로 사업에 의회승인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실시한 제5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 구비 부담율을 낮추므로서 예산 과다 지출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 농소·강동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비 원가 산출 용역비로 7,500,000원이 지출된 건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효문동지역 청소관련 민간이전 대행료 산출용역비를 삭감하여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을 못하도록 한 바 있고 2000. 10. 12 의회 소회실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전원이 이 건과 관련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적이 있으며 또한 어느 분야의 업무이든지 용역은 그 필요성에 따라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업무추진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으로 예비비 사용은 지극히 부당함.

제9절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9. 5(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1. 9. 15 ~ 9. 25(11일간)

다. 의결일자 : 2001. 9. 25(제47회임시회 제9차본회의)

라. 심의결과 : 원안가결

마. 삭감내역

ㅇ세입 - 0

ㅇ세출 - 0

2.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 예산액	%	기정예산액 (제1회추경)	%	증 감	비 고
합 계	52,122,669	100	47,167,506	100	4,955,163	
일 반 회 계	50,164,409	96.3	45,472,751	96.4	4,691,658	
특 별 회 계	1,958,260	3.7	1,694,755	3.6	263,50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0.4	217,400	0.5	-	
의 료 보 호 기 금	1,375,647	2.6	1,176,821	2.5	198,826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24,870	0.2	110,191	0.2	14,679	
주 차 장	240,343	0.5	190,343	0.4	50,000	

3. 제안설명

(제47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5일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필수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현대자동차의 경기호전으로 사업소세의 과표 조정과 과년도 수입증가 등으로 4억2,55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교부금 증가분 1억6,623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심야전기 빙축열시스템 보조금 6,480만원 등으로 추가 증액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37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철도통행 BOX 설치공사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 BOX 설치비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조성 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억2,266만9,000원이며, 이는 2001년 1회추경예산 대비 49억5,5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억9,165만8,000원이 늘어난 501억6,4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 인상분과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우리구 현안사업인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일반직 및 기능직 2001년도 임금인상분 4억5,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5,0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선거준비 공통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7회-본회의 제1차)

경상적 경비로는 신청사 관리에 따른 전기·도시가스료, 상·하수도요금, 재해복구비, 교통유발부담금 부족분 1억7,500만원과 실업사격팀 운영비에 8,800만원, 2002년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비 1,300만원 등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관련 각종 집기 구입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강동동 헬스장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사업으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6,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 1,200만원, 아동급식비 700만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2,300만원, 연암동 일원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 태화강 및 동천강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6억3,300만원, 무궁화유지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 페타이어 소각시설 설치 1억1,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진출입 통행박스 설치 7억8,000만원, 구 상안교 통로박스 설치 공사 1억5,000만원, 효문운동장 조성 9억원, 농소운동장 트랙 조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2억6,35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9,882만6,000원과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467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농소운동장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42억8,124만2,000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2001년도 신규 계속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건립공사 62억원, 효문운동장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1. 20(구청장)

나. 의결일자 : 2001. 12. 20(제49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다. 심의결과 : 수정가결

라. 삭감내역

○세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 20건 4,133,851천원

○세출 - 시책업무추진비 등 77건 4,727,665천원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2001. 12. 4 ~ 12. 19(16일간)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류 재 건	김 진 영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윤종오

2.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 예산액	%	2001예산액 (당초예산)	%	증 감	비 고
합 계	43,809,712	100	41,132,200	100	2,677,512	
일 반 회 계	43,232,814	98.8	39,443,234	95.8	3,789,580	
특 별 회 계	576,898	1.2	1,688,966	4.2	-1,112,068	

구 분	2002 예산액	%	2001예산액 (당초예산)	%	증 감	비 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0.6	217,400	0.5	25,600	
의 료 보 호 기 금	14,000	0.0	1,172,784	2.9	-1,158,784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04,863	0.2	110,191	0.3	-5,328	
주 차 장	215,035	0.4	188,591	0.5	26,444	

3. 제안설명

(제49회-본회의 제1차)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1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내년을 새롭고 알차게 설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동안 우리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사상 유례 없는 실업난으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틀이 재편될 것으로 여겨지며 미국의 테러참사와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근절 전쟁선포로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 구는 나름대로 자치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을 북구발전의 원년으로 삼고「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해도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보람과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제49회-본회의 제1차)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짧은 자치구의 이력속에 열악한 도시기반과 침체되어 있는 문화혜택,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전 의원님과 더불어 12만 구민 그리고 전 공무원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하나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신청사가 편리한 주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완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임시청사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일신하는 새로운 면모와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껏 보여주었던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농소 운동장에서 제2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뜻깊은 구민 단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일상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120민원기동대 운영, 사이버 민원모니터제 및 주민 만남의 날 운영 등 주민참여를 위주로 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개장한 재활용 상설판매장 및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활용의 중요성 및 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켰으며, 가로변 수목식재, 꽃길 조성, 소공원 조성 및 미래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푸른 녹색환경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능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 및 저소득층생계비지원,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 개·보수,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등을 통하여 불우 또는 소외계층에게 한 가족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방문간호사업,급성전염병관리, 경로당 무료순회진료, 건강관리실운영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여건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준설 및 보수,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 동안 구정의 크고 작은 여러 시책들을 차질 없이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12만 구민의 단합

(제49회-본회의 제1차)

되고 하나 된 의지가 결집된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새해 우리 북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하고 격의 없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만족의 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한마당 및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주민과의 합동 120기동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구정주요현황과 구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주민, NGO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 도모와 알 권리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확대, 구민정보검색대회 개최,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 사이버 전자도서관 등을 구축하여 21세기자치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선진 복지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예회관, 문화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다양한 문화·여가 기반시설을 조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열린마당과 재즈 페스티발,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신년 해맞이축제, 정월대보름달맞이 행사, 기박산성 의병축제 등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무룡임도 등 산로에 황토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화합의 장의 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장애인지원, 노인노후생활보장,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지역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복지행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

(제49회-본회의 제1차)

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구민의 환경의식수준은 어느 자치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활용 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홍보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및 교환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재활용 리싸이클링 체계를 정착하여 내년에는 분리수거 참여율 100%를 목표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주변 및 관광지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는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강화,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으로 우리 북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임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 과 도심속의 소공원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으로 확고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매곡지방 산업단지조성, 진장 물류유통단지조성 및 자동차 오토밸리 조성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생산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 초청 간담회, 산재환자위문, 모범노동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지역의 현안에 관심과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업은 지속되는 가격 하락과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뉴 라운드 협상이 일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 1차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문농업인·경영인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49회-본회의 제1차)

또한 중산동 중보들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및 호접난 해외수출 전문단지조성 지원으로 생산유통 등 한 차원 높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전개하여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관정개발, 노후시설 보수, 장비구입 등 적극적인 지원과 딸기, 호접난, 국화 등의 수출을 통하여 28억 2,000만원의 소득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감안, 내년에는 오리농법 등 무농약 친환경개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시장의 한계성 극복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과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도 7호선 산업로 확·포장과 국도 31호선인 연암~강동간 4차선 확·포장, 율동~호계간 배면도로 공사,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개설공사, 효문공단 도로개설 공사는 물론 내년부터 추진계획인 구·국도 7호선 확·포장공사 등을 광역시와 연계 추진하여 주요간선 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타지역에 비해 교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임을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는 6월 약수동산회에서 약2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함으로 인하여 현재 약수마을에 대학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고 21세기 신사업과 고도첨단산업원천기술의 산실로서 교육이 있는 북구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유수의 좋은 대학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공동체 북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화, 익명화 사회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처럼 새로운 모습의 도·농 복합형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확보하여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로서의 북구'를 강조하는 것

은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결합, 1차산업과 2·3차산업과의 조화, 그리고 토착민과 외지인과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공직자도 과거와 같은 형태와 의식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직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공직자들부터 정보화 능력향상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자기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자기 개혁은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하에 우리 구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행적인 행정업무 행태와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전 공무원이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의 사고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턱없이 부족한 재정여건이지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없이는 실속 없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새해 살림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8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32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24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67억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5%이며, 조정교부금이 101억6,000만원, 보조금이 13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에 224억원, 보조사업 및 자체투자사업에 200억8,000만원, 예비비 등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4,3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1억 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억

(제49회-본회의 제1차)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보상하였으며 둘째,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 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록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후 별도 재원이 확보되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12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며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심의결과 의견요지

○ 세입

- 세입부분에 있어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77,512천원 증가한 43,809,712천원으로서
- 수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자료와 산출근거에 의한 예측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야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 이자수입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0,000천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이 가능함에도 현재 금융기관의 금리인하 추세를 보거나 또한 그 동안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던 문예회관 신축비등이 2002년부터는 사업비가 투입 됨으로서 이자발생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자료와 산출근거도 없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 순세계 잉여금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00,000천원이 증가한 2,600,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용자원이 3~40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지나치게 과다 추계 편성하였으며
- 조정교부금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359,653천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와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임을 감안 할 때 2001년 대비 2002년도 조정교부금이 중구 31.47%, 남구 12.38%, 동구 13.33%가 증액되었으나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이 가장 열악한 북구만이 유일하게 3.41% 감소하게 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로 북구의 시세징수는 2001년 12월 1일 현재로 2000년에 비해 무려 16,964,531천원(47.97%)이나 증가하므로서 북구주민의 시세 부담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북구전체예산의 26.7%나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는 북구

주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울산광역시로부터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세출

- 세출예산의 51.3%을 차지하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소외계층지원 등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에 편성계상 하여야 함에도 소모성 예산인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 비중이 낮아 소방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 예산편성시는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예산편성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전체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음.
- 또한 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례 답습적으로 나열식 편성 또는 이중적 편성과 일부 행사의 일회성 소모행사 사업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계속하여 편성 의결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효율성 있는 건전 재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5.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43,809,712	4,133,851	4,731,874	10.80	502,424	1,100,447	39,675,861	1,190,274
일반회계		43,232,814	4,133,851	4,727,665	10.93	437,630	1,031,444	39,098,963	1,172,968
특별회계		576,898		4,209		64,794	69,003	576,898	17,306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41,812	41,812	243,000	7,209
	의료보호기금	14,000						14,000	420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04,863				4,652	4,652	104,863	3,145
	주차장	215,035		4,209		18,330	22,539	215,035	6,451

제11절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2. 17(구청장)

나. 심사기간 : 2001. 12. 21 ~ 12. 27(7일간)

다. 의결일자 : 2001. 12. 27(제50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라. 심사결과 : 수정가결

마. 삭감내역

○세입 - 0

○세출 - 대학유치리서치 등 3건 32,000천원

2.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 예산액	%	기정예산안 (2회추경)	%	증 감	비 고
합 계	52,122,669	100	41,132,200	100	8,701,202	
일 반 회 계	50,164,409	96.6	39,443,234	96.0	8,695,413	
특 별 회 계	1,958,260	3.4	1,688,966	4.0	5,78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0.4	217,400	0.5	-	
의 료 보 호 기 금	1,375,647	2.4	1,172,784	3.0	4,037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24,870	0.2	110,191	0.2	-	
주 차 장	240,343	0.4	188,591	0.3	1,752	

3. 제안설명

(제50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존경하는 진한길 의장님 !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49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의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꼭 필요한 경비의 최소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지원예산의 변경조정 등 2001년도의 최종 예산 정리 위주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1억2,200만원보다 25억7,400만원이 증액된 54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00만원이 증액된 514억6,7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보다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3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과년도분 체납세징수액 4억6,7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현대자동차 내 국유지재산매각대금, 기타잡수입 등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7,100만원이 증가한 32억3,0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중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곡천 둔치정비공사 6억원,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 2억7,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6건에 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에서 1억6,5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8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총 4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북구문예회관 건립공사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41건의 국·시비 지원예산의 조정으로 보조사업이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매곡둔치 정비공사 6억원과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 2억7,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2억원, 농소 충혼비 청동군상 재건립 및 진입도로 포장 1억원,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공사 2억원, 어물 및 제전방파제 설치 공사에 4억원 등 총 6건에 9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0회-본회의 제1차)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500만원이 증액된 9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전산기 자동백업시스템 구축 등 전산 및 통신사업에 9,600만원, 주렴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추곡수매 차액지원사업에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4,100만원이 증액된 10억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가 및 광역시 지원예산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금년도 우리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북구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은 물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54,717,244		32,000		1,008,093	1,040,093	54,717,244	1,641,517
일반회계		51,487,228		32,000		953,340	985,340	51,487,228	1,544,617
특별회계		3,230,016				54,753	54,753	3,230,016	96,900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17,400				6,212	6,212	217,400	6,522
	의료보호기금	2,620,706				586	586	2,620,706	78,621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24,870				4,679	4,679	124,870	3,746
	주차장	267,040				43,276	43,276	267,040	8,011

제12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4. 3(구청장)

나. 심사기간 : 2002. 4. 11 ~ 4. 19(9일간)

다. 의결일자 : 2002. 4. 19(제52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라. 심사결과 : 수정의결

마. 삭감내역

○세입 - 0

○세출 -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공사 등 6건 121,530천원

2.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 예산액	%	기정예산안 (2회추경)	%	증 감	비 고
합 계	45,934,438	100	39,675,861	100	6,258,577	
일 반 회 계	45,205,369	98.5	39,098,963	98.4	6,106,406	
특 별 회 계	729,069	1.5	576,898	1.6	152,17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0.5	243,000	0.6	-	
의료보호기금	66,884	0.1	14,000	0.0	52,884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04,863	0.2	104,863	0.3	-	
주 차 장	314,322	0.7	215,035	0.5	99,287	

3. 제안설명

(제52회-본회의 제1차)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3일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가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부족분과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3,4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8,100만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5,500만원, 기타잡수입 4,300만원 등 총9억1,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40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는 2001여성정책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약수마을회관 진입교량 설치비 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경공사 3억8,000만원, 송정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전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양여금 2억6,200만원이 배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억3,400만원이며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600만원이 늘어난 452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조정과 필수법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의존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과 동순회 간 담회시 주민이 건의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52회-본회의 제1차)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적 경비는 공무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간외수당 정리, 환경미화원 임금 기준단가 조정 등 2억7,1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로는 구청장 취임식 행사경비 400만원, 농소운동장운영 500만원, 공중화장실운영 1,000만원, 월드컵대비 가로변 초화 및 수목구입에 2,000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 1,600만원, 농소3동 이전 개청비 500만원 등이며 민간위탁사업 및 자산취득비는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청소 용역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8,500만원,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보조 300만원, 신축 농소3동사무소 비품 2,600만원, 치과 방사선기기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의존재원 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에 10억원,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의식운동 1,200만원, 실업사격팀 운영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건립비 3억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15억6,700만원, 수리시설설치 및 개·보수 4억200만원, 전복치패 방류사업 1억6,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농소운동장조경공사 3억8,000만원, 송정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3,000만원, 약수마을회관 진입교량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총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 의존재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며, 심의의결에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45,934,438		121,530		371,034	492,564	45,934,438	1,378,031
일반회계		45,205,369		121,530		318,444	439,974	45,205,369	1,356,161
특별회계		729,069				52,590		729,069	21,870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43,000				41,812		243,000	7,290
	의료보호기금	66,884				-		66,884	2,006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04,863				4,652		104,863	3,145
	주차장	314,322				6,126		314,322	9,429

제5장

행정사무감사

- 제1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2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3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4절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제5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제6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7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제8절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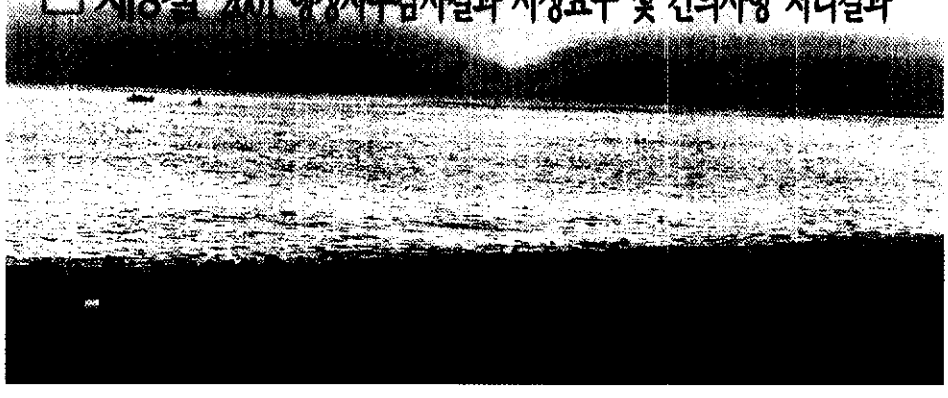

제1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의 기간 : 2000. 11. 27 ~ 2000. 12. 3(7일간)

다. 감사의 주체 : 본 회의

○ 의　　장 : 진 한 걸

○ 부 의 장 : 박 광 식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성 낙 화

○ 사무직원 : 서 준 영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조승수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서관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국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호		
		주민자치센터 운영단장	김지호	신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지역경제과장	박원회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김병규		
		도시교통과장	조개현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축과장	김환조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김 찬 수		
		농소2동장	이 상 찬		
		농소3동장	신 원 수		
		강동 동장	박 상 우		
		효문 동장	이 차 호		
		송정 동장	이 채 석		
		양정 동장	정 기 원		
		염포 동장	신 동 욱		

3.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제출요구 현황(제37회 임시회, 2000. 11. 1.)

계	공통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05건	16	19	84	31	38	14	3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0. 11. 27 (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2000. 11. 28 (화)	10 : 00	〃	○ 총 무 국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 주민자치센터운영단	
2000. 11. 29 (수)	10 : 00	〃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2000. 11. 30 (목)	10 : 00	〃	○ 도시개발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 농림수산과	
2000. 12. 01 (금)	10 : 00	〃	○ 도시개발국 • 건 축 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2000. 12. 02 (토)	10 : 00	〃		
2000. 12. 03 (일)	10 : 00	〃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소회의실

○ 선서방법 : 실·국·소단위 실시(현임자,전임자)

○ 선서문 : 별첨

- 서명날인 후 제출

라. 기타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1. 11. 27 ~ 2001. 12. 3(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현장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2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0. 11. 27 ~ 2000. 12. 3 (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총 무 국 ○경제사회국 ○도시개발국 ○보 건 소 ○동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류재건 김진영 윤종오	성낙화	서준영

나.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2000.11.27 (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2000.11.28 (화)	10 : 00	〃	○총 무 국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 주민자치센타운영단	
2000.11.29 (수)	11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2000.11.30 (목)	10 : 00	〃	○도시개발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 농림수산과	
2000.12.01 (금)	10 : 00	〃	○도시개발국 • 건 축 과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00.12.02 (토)	09 : 30		○전동	
2000.12.03 (일)	10 : 00		○현장활동	

다. 감사방법

○ 증인선서 (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인 원	참고인출석 인 원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03	19	9	203
공 통 사 항	23			23
기 획 감 사 실	13	1		13
총 무 국	79	6	4	79
경 제 사 회 국	32	5	2	32
도 시 개 발 국	40	5	3	40
보 건 소	13	1		13
의 회 사 무 과	3	1		3

마. 현지확인감사

일 시	현지 확인 감사 내용	비 고
2000.12.2 ~12.3 (2일간)	① 동 업무추진 상황 감사 실시 - 일반추진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 - 동 발주사업 추진현황 ② 관내 현장확인 실시 - 약수마을 철도통행 박스 확장공사 - 소방도로 개설 대상지 (염포동461-1번지일원) - 농심메가마켓 하수처리시설 - 소방도로 개설 대상지(호계동678-3번지일원) - 농소3동사무소 신축부지(천곡동 421-12번지)	

바.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9	39	30
공통사항	3	3	
기획감사실	5	4	1
총무국	18	9	9
경제사회국	17	11	6
도시개발국	20	7	13
보건소	2	1	1
동	4	4	

3. 주요감사실시 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부요구자료내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
<table>
<tr><th>항 목</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잔 액</th><th>미집행사유</th><th>추경증감사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 원 명</th><th>접수일자</th><th>처리일자</th><th>민 원 인</th><th>민원내용</th><th>처리내용</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비 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5.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6.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내역)(203-0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내역)(203-03) 10. 관외출장현황(국장이상) 11. 각종기금 출연금 관리 및 운영현황 1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 내역 ('99년10월 - 2000년 10월 31일 현재) 13. 출납장부와 현재 잔액증명서 사본(2000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매월 말일 기준) 14. 당초예산 편성 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현황 이유 15. 각종 모니터요원 현황 및 실적(예산내역 있으면 현황) 16. 2000행정법규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7. '99예산 2000년도 이월사업(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18. 2000예산절감 추진상황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9. 예산편성 사업 중 완료, 진행중, 미시행현황 및 사유 20. 복사기 수리비 지출내역(20만원 이상) (실과별, 대수, 수리내역, 수리비, 업체명) 21. 2000년 이후 설계변경공사 내역 22. 사업비 집행잔액 23. 실과별 현수막 제작 현황 (업체명, 규격, 수량, 가격, 소대지, 비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3.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 4.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1,000만원 이상) 5. 예비비 지출내역 6.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서류제출〉 7. 단위사업별 심사분석 상황(5,000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진도 • 주민민원 발생사례 • 투자사업의 수정내역 등 8.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현황 9.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10.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 수범사례 및 모범공무원 발굴 11.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결과 및 조치사항 12.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반 운영사항 13. 구정 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일자, 개최시간, 회의록등)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무사회국
총 무 과</td><td>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99, 2000)
2.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
(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
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공개입찰, 수의계약, 공사, 물품, 용역 구분작성

3. 공무원자녀 학자금대부 및 관리현황
4.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
5. 국·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등 관리현황
6. 공유재산 건물점유 실태현황
7. '99. 10. 1이후 북구공무원 인사발령 현황
(승진,전보,전입,전출,퇴직현황등)
8. 2000년 북구청직원 복무현황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휴직등)
9.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10. 특근급식비 지출현황
11. 년도별 PC, 프린트기 및 소모품 유지보수 구입
현황('99. 11. 1 ~ 2000.10.31)
12.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지급현황
13. 불용물품(자재)현황 및 매각 현황
</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4. 기술직직원현황(부서, 직급, 담당업무) 15. 행정전산화 계획 및 추진실적 16. 전산기기 보급실적 및 운영상황 17. 개발 프로그램 보급 실적 18.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현황 19. 전자 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유형별,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사항) 20.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사회지표조사 - 구분작성 21. 문서고 관리실태 및 문서보관현황 22.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현황('99, 2000년분) 23.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사용일지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24. 각종 공사기간 연기 처리현황 25.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26. 하도급 계약(변경) 현황 27. 공무원 파견 근무현황 28. 간부공무원 출장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 (일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여비지출액)-과장 29. 업무연락 현황(구→동) 〈자료제출〉 30. 소방도로 발주업체 하도급 실태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td><td>31. 구청재산현황(토지, 건물, 차량, 장비, 비품 등)
<table>
<tr><th>품명</th><th>구입일시</th><th>취득가격</th><th>현잔존가액</th><th>폐기예정 일시</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2. 구청장 취임후 해외여행 현황 및 성과분석
33. 비정규직(사무보조원)100%감축에 따른 대책</td><td></td></tr>
<tr><td>자치행정과</td><td>1. 체육지원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2. 동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북구청 도서구입비 내역(북구이동도서관 포함) 및 관리현황
5.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 실적
6. 무룡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및 경비내역 사용실적
7.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8.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 감독 사항(9. 10. - 2000년 현재) 및 지적사항
9.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10.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과제별,추진내용,추진결과,효과)
11. 민방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12. 구 주관 체육,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부서)</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자치행정과	13. 북구 사격팀 운영 현황 및 실적(운영비등) 14. 청소년관련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행사 및 지원 현황 및 정산서 15. 게임장 허가일 및 법규위반 업체고발 현황 및 처리 결과 16.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	
지 방 세 과	1.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채권 확보내역(건당 50만원이상) 2.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현황 3. 체납자 거소불명 현황내역(10만원이상) 4.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및 재부과한 건수 내용(건수, 금액, 사유)(10만원이상) 5.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6.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7.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8.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동에 지시한 사항 9.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10.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시효소멸, 불납결손액 10만원이상) 11. 과년도 체납세 세목별 현황과 징수실적(시세, 구세 구분) 12.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99. 11. 1 - 2000. 10. 31)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 14. 세입목표(세목별)대 실적현황 15.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현황('97. 7. 15 - 현재) 16.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민원봉사과	1.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개·보수 내역 2. 예비군동대 장비지원현황 (관련법규제출) 3.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전산화추진실적〈도면제출〉 4.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6. 구청 내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실과별 취합) 7. 민원 택배제 운영실적	
주민자치 센타 운영단	1. 구청장 년두순시시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2. 주민만남의 날 운영실적 • 시정소식지 분담금 지출, 배부내역 및 건의사항 처리 3. 동별 적십자 회비 수납현황(목표액 및 수납방법) 4. 민간인(단체) 포상자 내역 ('99. 11. 1 - 2000.10.31) 5.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6. 8개동 인구, 세대, 면적, 공무원 수 비교 〔G/B현황, 토지현황(지목별)〕 7. 각 동별로 예산 집행된 금액 ('99 ~ 2000년10월까지)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관내 주유소 행정처분 내역) 2. 가스업소 관리현황 3. 가스 집단공급시설 현황 4.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5. 지역중소기업 제품판로 촉진, 지원실적 6. '99. 11. 1 ~ 2000. 10. 31까지 취업알선현황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 3.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관리현황 4. 아동, 복지지원 사업현황 (결식학생현황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실적 현황) 5. 의료대불금 내역 및 결손처분 현황 6. 경로당지원 및 북구 노인회운영 현황 (지원금현황 및 운영실적) 7. 자활센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지도점검내역 인건비, 경비, 사업비 지급현황 및 정산서 8.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금 및 운영실적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추진현황, 개선방안	
환경위생과	1. 각마을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현황 및 관계서류 사본(우물, 약수터)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td><td>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불법영업
('99. 11. 1 ~ 2000. 10. 31) 단속실적 및 불법퇴
폐업소 단속실적, 지적사항처리 관계서류
〈점검일지제출〉
(불법퇴폐업소단속실적, 지도내역)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사항〈서류제출〉
4.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사항 및 현황
5.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6. 오염물질 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 조치내역
7.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8. 해양오염물질 유출현황 및 행정처분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10.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
<tr><th>업 소</th><th>위 치</th><th>건축허가일</th><th>객 실 수</th><th>위반현황</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d></td></tr>
<tr><td>환경미화과</td><td>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관련 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4. 환경미화원 정원(현원) 및 담당구역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5. 음식물 퇴비화·사료화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6. 세탁업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 세차장 폐기물 처리 현황 7.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도시개발국 도시교통과	1.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동별현황)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3. 진장구획정리 민원사항 등 문제점 및 대책 현황 (관련자료 제출) ①배수시설 ②항공기소음 ③고도제한 ④교통영향평가 및 배수대책등 4. 호계.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척내역 및 문제점 등 업무추진현황 5. G.B해제 관련추진현황 6.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및 침수대책 7.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상안교 연결도로 대책 8. 호계구획정리내 하수구관리 문제점 및 침수대책 9. 효문국가공단 주민사유재산 피해대책	
건 설 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하천부지 점·사용허가현황 및 내역 3.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4.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5. 복구관내 가로등, 공공화장실, 전기료 월별현황 6.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table>
<tr><th>소관부서</th><th>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th><th>비 고</th></tr>
<tr><td>건 설 과</td><td>7. 토목직 공무원 과별현황 및 직접설계건수 - 인원 증원대책
8.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9. 가로등 보수업체 보수실적 및 계약자료
<table><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 고</th></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d></td></tr>
<tr><td>농림수산과</td><td>1.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2. 수산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3. 농지전용 및 무단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99. 11. 1 - 2000. 10. 31)
4. 농지거래허가신청 및 자격취득 발급현황
5. 방치폐어선,무등록어선등 범칙어선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6.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7.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8.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9. 일용인부임 작업실적 현황(명단제출)
10. 구 보유 양수기 및 기타 영농장비 보유 관리현황
11. 임도개설 및 보수현황
12. 육림 및 조림사업 현황
13. 임업협동조합 하도급 실태현황(상시근무인력과 장비보유 실태)</td><td></td></tr>
</table>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4.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 및내역 15. 공유수면 매립지 임대현황과 현임대료 산출근거제출	
건 축 과	1.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등) 3. 건축허가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4.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내역 5.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현황 6.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역 7.재해위험건물현황과 행정지원 대책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전염병 예방활동 내역 및 법정 전염병환자 관리실태(1, 2, 3종) 3.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4. 약국·병·의원 현황 및 의료기관 관리현황 (개소 및 폐업사항 등) 5.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6. 보건소 진료이용자 거주별 현황 및 동별 진료·순회 운영실적(월별현황) 7. 주요약품 구입내역(단가) 및 관리현황 8. 의료장비 관리실태 현황 9.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소관부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0.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환자 관리실태 11.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구입현황 및 예방접종 실적 12.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13. 의약분업사태에 따른 각종민원실태 현황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제3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대안하며 2000. 11.27 - 12. 3일 까지 7일간의 감사실시에 대하여 중앙부서 및 상급기관에서는 정기 및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기간의 한계점이 있었음.

○ 민선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과 박현근 공무원은 지방세과를 찾아온 민원에게 아주 친절하고 타 실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제도 사업에 대하여 솔선수범 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도 노고를 격려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대부분의 실과에서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자료 계산착오나 엉뚱한 자료를 시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각 실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없음.

○ 각종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예산집행 부적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불성실, '9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미흡 등 시정요구 39건과 건의사항30건, 총6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 및 업무연찬으로 조속히 시행·조치하여 2001년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

○ 의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계법령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북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바람.

제4절 2000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 시정 · 건의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69	43	23	3	39	31	8	0	30	12	15	3
공 통		3	3	0	0	3	3			0			
기 획 감사실		4	3	1	0	4	3	1		0			
총무국	계	19	12	7	0	9	7	2		10	5	5	
	총무과	6	4	2	0	4	3	1		2	1	1	
	자 치 행정과	7	4	3	0	4	3	1		3	1	2	
	지방세과	2	2	0	0	1	1			1	1		
	민 원 봉사과	2	0	2	0	0				2		2	
	주민자치 센터 운영단	2	2	0	0	0				2	2		
경제사회국	계	17	11	5	1	11	8	3	0	6	3	2	1
	지 역 경제과	3	3			2	2			1	1		
	사 회 복지과	6	4	1	1	3	2	1		3	2		1
	환 경 위생과	3	1	2	0	2	1	1		1		1	
	환 경 미화과	5	3	2	0	4	3	1		1		1	
도시건설국	계	20	10	9	1	7	6	1	0	13	4	8	1
	도 시 교통과	8	3	5	0	2	2			6	1	5	
	건설과	4	3	1	0	4	3	1		0			
	농 림 수산과	6	2	3	1	0				6	2	3	1
	허가과	2	2	0	0	1	1			1	1		
보건소		2	0	1	1	1	0	1	0	1	0	0	1
동		4	4	0	0	4	4			0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공통사항	1.감사자료 작성 소홀 ㅇ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0년 11월 18일 통보하였으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현황, 추진상황, 근거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과에서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계산착오나 엉뚱한 자료를 시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간부공무원들의 확인 점검이 부실하므로 이후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업무파악과 정확한 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ㅇ감사자료 작성 소홀 시정 • 2000.11.21 주간업무보고시 구청장지시 - 행정사무감사 수감철저 (사본 1부) • 2000.11.1, 11.7 주간업무 보고시 부구청장 강조 - 2000행정사무감사준비 철저(사본 각1부)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2.현수막 제작·발주제도 개선 ○현수막 제작 시 북구 소재 업체가 제작 시공한 것은 거의 없고, 관외업체에서 제작 시공하는 것은 북구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가급적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제작·발주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행정 현수막 제작은 시장가격 조사 결과 단가가 가장 낮은 백만기업과 계약체결 현수막을 제작하였으나 현수막가격(₩45,000)이 기존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며 현수막 제작 천의 재질이 기존현수막과 비교 시 품질이 저하되었음. ○앞으로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 품질, 가격 면에서 유리한 업체와 계약토록 하겠음. ※2000년 12월중 현수막 시장가격 조사실시 - 붙임	완 결
공통사항	3.감사지적사항 처리 미흡 ○'99년도 행정사무감사	○'99 감사지적사항 처리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완결하는 등 처리가 미흡하므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함은 물론 중요사항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시정 • 2000.11.1, 11.7 주간 업무보고시 부구청장 강조사항으로 전실·과·소에 지시 • 차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성실한 답변은 물론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기 획 감 사 실	1. 감사업무 소홀 ○감사 부서에서 민원발생 많은 실과에 대하여는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업무가 과중한 일선 동에만 감사를 편중하는 것을 시정 요구함.	○2001년부터 동종합감사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심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실·과·소의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한 진정 등 민원발생 취약업무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행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정착오로 인한 주민불편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음.	
	2.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 ○강동 종합개발 해외취재경비의 보조금 집행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상 부적절한 집행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영농인 연합회 등에도 지원하여 예산의 공익성과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1.강동권 종합개발 해외취재 경비 지원 ○교부금액 : 3,059천원 ○교부처 : (주)울산방송 대표이사(취재기자 : 윤주웅) ○추진개요 • 기간 : 2000. 3. 17 ~ 3. 26(9박10일) • 지역 : 북미서부해안 (캐나다, 미국) • 출장대상 - 시 : 시장, 문화관광과 5급 김삼육 - 구 : 구청장 - 언론사 : 기자3명 (시 2명, 구1명) ○지원동기 : (주)울산방송과 협의	완 결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TV 뉴스방영 : 3회정도 └특집 프로그램 편집방영 : 40분정도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와 (주)울산방송 등과 사전협의 • 우리 구에 공업역사관 건립을 목적으로 자료수집 및 홍보효과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금후 추진방안 •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을 다하겠음.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요구내용</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기 획
감 사 실</td><td></td><td>2.영농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영농인연합회 회원수
: 80명(남76,여4)
○회장 : 김동진
○보조금지원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구 분</th><th>2000년</th><th>2001년</th><th>비 고</th></tr>
<tr><td>계</td><td>4,800</td><td>9,600</td><td></td></tr>
<tr><td>전진대회 보조</td><td>2,400</td><td>4,800</td><td></td></tr>
<tr><td>타시도 비교시찰</td><td>2,400</td><td>4,800</td><td></td></tr>
</table>
○금후추진방안
• 농업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농인 연합회에 2000년도에는 4,8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금후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요구 및 권장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적극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음.</td><td></td></tr>
</table>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요구내용</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기 획
감 사 실</td><td>3.각종 미개최 위원회 통폐합
○북구의 36개 위원회 중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7개가 있는데 미개최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함.</td><td>1.위원회현황
(2001. 1. 현재)
<table>
<tr><th colspan="4">설치근거별 위원회현황</th><th colspan="3">위촉위원수</th></tr>
<tr><th>계</th><th>법령</th><th>조례·규칙</th><th>지침</th><th>계</th><th>남</th><th>여</th></tr>
<tr><td>35</td><td>30</td><td>3</td><td>2</td><td>406</td><td>376</td><td>30</td></tr>
</table>
※ 2000.10.1현재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운영

2.위원회 통합운영 가능여부 법적 검토
가. 2000년도 위원회 미개최 : 17개
○미개최 위원회의 법적 검토
• 법령근거한 위원회 : 16개
• 조례근거한 위원회 : 1개
○질의시 언급된 위원회에 대한 검토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울산광역</td><td>추진중</td></tr>
</table>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시북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상기위원회는 모두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하기전 민원인에 대한 사전구제에 목적이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의 지방세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최근에 신설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가능여부를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통합가능여부 -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자의 건강 및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 사 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북구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의 통합운영가능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음. 나. 종합의견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86%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관련법규 검토 및 상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4.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시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	완 결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요구내용</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기 획
감 사 실</td><td>하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면 38회 중 18회를 특정한 곳에 지출하는 등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지 않은 것을 시정 요구함.</td><td>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구정의 주요현안 사항 및 정기적인 시책홍보를 위한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td><td></td></tr>
<tr><td>총 무 과</td><td>1.해외여행 부적절
○200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자매결연사업추진 해외출장시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수행케 한 것은 2000년도 국가세출예산 집행지침에 "2급 이하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붙일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td><td>○구청장 취임 후 해외여행 현황
<table><tr><th>연번</th><th>목 적</th><th>일 시</th><th>지역</th><th>수행여부</th></tr><tr><td>1</td><td>유럽시장개척 및 공업역사박물관 견학</td><td>'99.10.20 ~10.31 (11박12일)</td><td>유럽 5개국</td><td>수행</td></tr><tr><td>2</td><td>강동권 종합개발북미 서부지역 시찰</td><td>2000.3.17 ~3.26 (9박10일)</td><td>북미 서부 지역</td><td></td></tr><tr><td>3</td><td>중국 영파시와 우호협력 교류 관련 방문</td><td>2000.10.14 ~10.20 (6박7일)</td><td>중국</td><td>수행</td></tr></table>
○수행사유
• 우리구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는 언어가 능통한 수행원이 필요하였으며 초청국가에 대한 선물, 지역 특산물 등 물품운반에 직원 1명이 추가 동행이 불가피 하였음.</td><td>완 결</td></tr>
</table>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국장과 총무담당을 대동하면서도 비서실장을 수행케 한 사실은 부적절하므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함.	○성 과 • 우리구 중소기업체 및 울산배 유럽시장 통상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민 숙원사업의 일환인 공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며 •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방 자동차 무역 전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후 중국현지에서 울산배를 재배하는등 다각도로 우리 구를 홍보한 바 있음. ○향후 조치사항 • 향후 해외여행시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출장	
	2.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의 부부동반 회식경비 및 단란주점 이용대금을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예산액 : 81,000천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지출하였고, 또 개최하지도 않는 제2회 은빛 카네이션 축제와 경로잔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위법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바람.	• 집행액 : 75,637천원 • 잔 액 : 5,363천원 ○ 집행기준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 향후조치계획 •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에 맞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3. 인사위원회 개최 내실화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바도 있으나, 2000년도에 총 23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아 사실상 내부위원들만으로 사후 서류심의를 하는 등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운영	○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사람 개인을 두고 승진 및 전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자체를 심의하는 것으로 외부위원들이 그 기관의 인사방향 및 특색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하고 있는 바, 시정을 요구함.	ㅇ차후에는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심의, 대우공무원 선발, 근속승진 등 법령 검토 및 적격여부 심의 건은 서면 심사로 하고, 승진 전보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보·승진임용 등 인사위원회 개최의 내실화로 인사기준 사전의결을 확행 하겠음.	
	4.구청장 비서실 인원 배치 부적절 ㅇ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 요원 정원배치지침에 인구 30만 이하의 시·군·자치구에는 별정 6급(실장) 1명과 기능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장 비서실에 3명 배치근무는 부적절하므로 시정 요구함.	ㅇ지방자치단체장 비서실 요원 정원 배치 지침상 인구 30만 이하의 시·군·자치구에서 별정6급 1명과 기능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수행비서 1명과 내방객 접견 및 전화응대 요원 1명임. ㅇ우리구에서 1명을 추가 배치하여 3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질민원으로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내방하는 민원인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즉시 해결해 드리고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화 이후 민원은 장기화된 고질 민원으로 실·과장의 답변보다는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총무과 소속 직원중 행정경륜이 많은 7급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이는 비서실 기능 강화보다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불가시에도 불가사유를 명백화함)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제일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시 구청장실 인원배치를 검토하겠음.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 정 과	1.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절 ㅇ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없는 지출을 시정하고, 형평성 있는 집행을 하기 바람.	ㅇ직원 업무연찬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1. 1. 10(수) 08 : 30 • 장소 : 자치행정과 • 교관 : 자치행정과장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직무교육 • 교육교재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 지방재정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 조례 ㅇ붙임 : 교육일지 사본	완 결
	2. 수감자세 시정 ㅇ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대단히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지적을 하면 잘못을 시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	ㅇ감사 수감 자세 교육실시 • 일시 : 2001. 1. 10(수) 08 : 30 • 장소 : 자치행정과 • 교관 : 자치행정과장 • 교육내용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 정 과	를 숙지하지도 않는 채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시정 요구하며,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업무 숙지 - 현안사업 담당업무 파악 철저 ○붙임 : 교육일지 사본	
	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첨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검사성적서 시효가 경과된 것이 부착되어 있고 관리책임자 표지가 없는 등 그 관리가 소홀하여 시정을 요구함.	○수질검사 실시 • 일시 : 2000. 12. 12 • 실시 : 분기 1회 • 의뢰처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 성적서 아크릴판 제작 부착 • 신천동 633-1번지외 3개소 • 관리책임자 지정 - 정 : 동장 - 부 : 민방위담당자 ○붙임 관련공문 사본 각 1부	완 결
	4.체육시설 관리 소홀 ○동네 체육시설의 노후나 퇴색으로 인하여 이	○시설물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01. 2월중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용 주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도색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바람.	• 조사대상 : 동네체육시설물 • 점검내용 - 체육시설물중 파손 또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 도색을 요하는 시설 - 기타 주민이용 불편사항 ○ 시설물 보수 · 정비 •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후 도색 등 조치하겠음.	
지방세과	1.체납자 대책 소홀 ○ 체납 결손처분은 2차 납세의무자까지 추적하여 결손 처분해야 할 것이며, 진장 · 명촌지구구획정리조합의 체납액 18억원은 징수 특별대책을 세우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활용하여 고액 체납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이행 • 체납세 결손처분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추적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할 것이며, 이후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진장 · 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 체납 대책 추진 • 종합토지세 체납액 18억에 대하여 2000. 2. 29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체비지 8필지 4,357㎡ 재산목록대장압류와 2000. 9. 15 예금 7천만원을 압류하였으며, 수시로 구획정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납부독려와 금융기관의 예금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통반장을 통한 체납자 정보 획득 •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위하여 현지 출장 시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통반장들로부터 체납자의 근황 등 정보를 획득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지 역 경 제 과	1. 유사휘발유 단속 소홀 ○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경동주유소에서 외지차량이나 오토바이가	○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유사휘발유를 구입하여 엔진에 고장나는 등 민원이 야기되었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왔음. 이후로는 단속시간이나 채취방법을 토요일 등 취약시간대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구함.	실시하고 있음. ○2000년도 주유소 품질검사 실시 • 14회 99개 주유소 ○특히, 민원이 야기된 경동주유소에 대해선 중점적·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단체(YMCA, YWCA)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타주유소에 비해 2~3회 더 많은 7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음. ○앞으로 유사석유류 유통근절을 위해 토·일·공휴일 취약시간대에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 고발등 행정조치 등 확행.	
	2.고용촉진 훈련업무 소홀 ○고용촉진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사업	○잔액발생원인 •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비 잔액 122백만원을 시에 반납토록 하였으며, 훈련실시 후에는 취업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구인구직대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확대로 5인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노동부 재취업 훈련 대상자 증가 재취업 대상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비대상자중 주부의 경우 기준을 제한 없이 위탁하였으나, 전업주부의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이 제기되어 '99년도에는 재산세 3만원이하로 제한하여 위탁생이 현저히 감소 ('98년 620명, '99년 132명) ○조치내용 •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생모집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전역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 3D업종의 기피로 정보처리 등 사무직종 위주로 훈련생이 편중되어 취업이 저조한 실적인바, 자동차정비, 용접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중심으로 훈련생 모집에 신중을 기하여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WON-NET(고용안정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인구직자간 원활한 만남을 유도하여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 회 복 지 과	1.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회계검사 미실시 ○ 태연재활원의 경우 성금이 168백만원이 접수되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계속하여 왔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 태연재활원 성금 168백만원 접수 및 보조금 1,419백만원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2000. 8. 30) ○ 매분기 정산 실시 확행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 지 과	2.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집행 소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총 98,829천원 중 5,000천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93,829천원이 남았는데 영세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2000. 11. 1) • 융자금액을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으로 희망자 증가	완 결
	3.사회복지업무 전문성 결여 ○간부공무원의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청 내에도 사회복지전문직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대책 강구바람.	○담당자 교육(2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문요원 700명 증원 계획으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중.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시 충원 ○구 자체 전문요원 확보 계획 추진중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 생 과	1.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철저 ○지하수, 약수터, 우물 등을 종합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종합관리하여야 하고 수질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가 부실하여 시정 요구함.	○먹는물 공동시설이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이므로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 지층 또는 지하에 흐르는 물)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공동우물은 비지정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중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총 19개소) • 지정시설 : 4개소 • 비지정 약수터(추정) : 9개소 • 미지정 공동우물 : 6개소 ○지정·미지정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 전반적인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 생 과		오염원 조사, 원인분석 및 소독처리, 주변오염원제거 등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강구 할 것임. ※지정약수터 4개소에 대하여 2000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 적합판정 ○ 안내표지판을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에 우선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훼손하는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교체하고 향후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는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안내표지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과 이용에 최선을 다 할 것.	
	2.관내 출장명령 통제 철저 ○ '99. 11. 18일자 출장명령부에 현원 16명 전원을 출장 명령한 것은	○ 환경위생과는 업무상 단속 및 현지확인, 수질검사의뢰 등 현장출장 업무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 생 과	민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출장을 한 것이므로 시정 요구함.	가 매우 많으며 외근을 갈 때도 오전, 오후 나누어 감으로써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있으며, ○'99. 11. 18일자 당일에는 직원 16명중 13명이 오전, 오후 나누어 출장을 갔으며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차후에는 전원 출장을 지양토록 할 것임. ○붙임 1. 직원교육일지 사본 2. '99.11.18 근무상황부 사본	
환 경 미 화 과	1.환경미화원 충원 철저 ○환경미화원 정원 51명에 43명의 현원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결원 충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시정 요구함.	○환경미화원 소요인원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적정인원이 48명으로 결과가 나와 정원을 48명으로 조정하고 결원된 7명에 대하여는 채용공고중임. - 모집인원 : 7명 - 모집기간 : 2001.1.15 ~ 1. 20 - 합격자발표 : 2001.2.3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 화 과	2.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계약 철저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계약 체결하면서 업체가 유리하도록 계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후 계약 시에는 계약의 조건,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하여 행정소송 등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000. 12. 30 대화산업(주)와 200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5조(계약기간)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시정하였음. ○붙임 1. 200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 2. 200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사본	완 결
	3.공공근로자 환경미화분야 근무 지양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등은 공공근로로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함.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용인부 사역을 위해 8명 69,754천원 2001년 예산 확보하였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 화 과	4.자료제출 불성실자세 시정 ○의회의 정기감사 중에 제출 요구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대장을 요구하였으나 광역시의 세외수입 부분을 감사한다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질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	○의회 감사시 여타의 어떠한 기관의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상시 자료를 준비하겠으며, ○2000. 12. 28 직원에 대하여 감사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붙임 : 직원 교육일지 사본	완 결
도 시 교 통 과	1.불법 주·정차단속요원 근무기강 확립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이 단속 시 담배를 피우면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기강 확립하기 바람.	○현재 주·정차단속 일용직원 3명, 공익요원 2명에 대하여 과장 주관의 정신교육 월1회 및 매일 현장근무 전 담당의 현장 근무방법 및 근무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완 결
	2.시내버스 운행시간표 불일치 시정 ○광역시 시내버스 운행	○ 2000. 11. 30일 市홈페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시간표와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사항과 상이하여 시정 요구하며 19번 노선도 등록 조치하기 바람.	이지의 시내버스 운행시간표와 일치하여 區홈페이지에 재 게시 완료.	
건 설 과	1.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률이 낮은 곳에 계속 방치하지 말고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이설 조치하고,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를 제거하든지 재질이 고무로 된 볼라드로 교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자전거 보관대는 '99년 염포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시 50개소(350대 주차분)을 설치하였으나, '99~2000년에 이용률이 낮은 일부구간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이용률이 높은 구간으로 이설 조치하였으며, 현재 이용률이 낮은 화봉지구 및 농소 2동 천곡대동, 아남아파트 입구(국도7호선변)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대는 자전거 보관대 이용률을 신중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설 조치하겠음.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 자전거 보관대 설치지역,개수 및 보관가능대수 :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외 10지역 50개소, 350대 보관가능 ○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차량주차 및 차량진입 금지를 위하여 설치하여 보도유지관리상 커다란 효과가 있으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높은 일부구간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볼라드 위치를 재조정 및 재질이 다른 볼라드로 조치하겠음.	
	2.각종 공사관리 철저 ○ 연등사 부근 도로배수로 설치공사 시 THP관 노후로 침하되어 재시공하는 등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 연등사 입구를 횡단하는 기존의 배수로(토관)가 노후되어 침하됨으로서 지난(2000년) 우수기 배수가 불량하여 연등사 입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시정 요구함.	구 배수로(BOX) 공사 시행시 병행하여 THP관으로 침하된 부분을 재부설하였으나 기존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침하(파손)됨으로서 배수가 되지 않아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비(15,000천원)를 사용하여 전면교체공사를 완료하였음 (2000.12.6) ○ 향후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대하여 사업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음.	
	3.보안등, 가로등 관리 철저 ○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관리대장이 없는데도 있다고 허위보고하고 실제 등수와 예산서 상의 등수, 유지관리 등수가 일관성이 없으며, 비용도 일반전	○ 가로.보안등수 및 수리내역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여(수리내역및관리대장, 보안등 : 2,034, 가로등 : 1,998, 2001.1.13입력완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기관리업자의 견적보다 30% 이상 비싸게 구입 수리하는 등 보안등, 가로등 관리가 극히 부실하여 시정 요구함.	가로, 보안등수의 정확한 관리와 중복수리 및 하자 발생 등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하자보증기간내 재보수) ○ 2001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북구소재 전기공사업체(12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2개업체를 선정(진흥전기,대아전기)하므로써 업체선정 투명성 및 예산 절감을 기함. ○ 향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정확성 및 투명성을 기하여 밝고 쾌적한 밤길조성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음.	
	4.효문배수장 전기요금 확인 철저 ○ 효문배수장 전기요금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보다 10월과 11월 요금	○ 효문배수장 고압전동기의 전기인입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한국전력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 설 과	이 더 많이 지출되는 사유를 확인·시정하기 바람.	공사에 신청하여 휴전하다가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수기 시에는 재공급 신청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여름철의 전기요금보다 10월과 11월의 전기요금이 더 많이 지출된 것은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인 9월과 10월에 전동기를 가동하므로 전기요금 납부체계는 다음 달에 청구되어 10월과 11월의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됨. ○특히 지난 우수기에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아 여름철 전기요금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음. ○향후 효문배수장 전기요금 청구시 철저히 확인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음.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허 가 과	1.건축허가 후 미준공건물 관리 미흡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 45건이 있는데 사실상 입주유무를 파악하여 지방세 부과자료를 통보해야 함에도 부서간의 업무통보가 되지 않아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장기 미준공건축물의 사용여부를 지방세과에 업무 참고토록 통보 조치하였음. • 업무연락(2001.1.15) 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 통보 • 업무연락(1999.12.23) 장기미준공건축물 지방세 납부여부 조회	완 결
보 건 소	1.방역대책 개선 ○동절기에도 모기가 성행하는 등 체감하는 방역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방역처리업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매년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로부터 취약지 등 방역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만남의 날 행사시나,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고, ○관내에는 방역처리업자가 2개소가 있으나, 북구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보 건 소		소재 APT의 경우 대부분 남구소재 방역업자와 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어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방역소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울산광역시주관으로 방역업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토록 건의 조치하겠음.	
동	1.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염포동) ○산불진화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랜턴의 건전지 등을 비치하지 않아 산불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시정 요구함.	○보유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24개, 비상전등 10개, 칼쿠리 10개, 삽 10개, 진화장비세트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전등 건전지 10개를 2000. 12. 22일 구입하여 야간 산불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 결
	2.주민 민원사항 처리 철저(효문동)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동	○동 주민의 민원사항을 대장에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가 부실하여 시정 요구함.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처리부"를 비치하고 전화 및 구술민원은 물론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기재하여 처리결과를 관리토록 시정함. ○붙임 :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부 사본	완 결
	3.각종 근무상황부 기재 철저(강동동, 농소3동) ○각종 근무상황부와 초과일지를 철저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를 부실하게 하여 시정 요구함.	○강동동 • 민방위장비 관리카드 총괄표를 작성함으로써 현황파악을 쉽게 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임. • 붙임 : 민방위장비관리 카드대장 사본 ○농소 3동 • 당직근무일지 기재 시 실제 근무한 사항이나 보안점검 사항, 최종퇴청 시간 등을 면밀히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퇴청시간을 보안점검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동		시간보다 이른 시간으로 기재하였고, 11월 20일부터 30일간 10일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대장에 미기재 하는 등 대장기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즉시 보완조치 하였으며, • 2000년 12월 26(월)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장기록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회의시간에 수시로 대장 기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붙임 : 직원 교육일지 사본	
	4.민원서류 수입인지 환불(송정동) ㅇ사업발주시 5백만원 이하 계약 수입인지(10,000원)을 첨부할 필요가	ㅇ2001.1.11 굴다리공업사 대표 김운천에게 10,000원 입금 조치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동	없는데도 착오로 부착하였는데 즉시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시정 요구함.	○ 불임 : 무통장입금증명서 사본	

3.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1.구청장 해외출장 성과 설명회 개최 ○구청장의 해외출장 후 방문성과 등에 대하여 의회에 방문성과 설명회 개최 건의	○구청장 취임후 해외여행 건수 : 3회 ○조치사항 • 향후 해외여행시 사전 의회와 협의하겠으며, 방문성과에 대하여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음.	완 결
	2.북구청 부지 앞 기아자동차 부지건 조속 해결 ○2001년 5월 북구청 개청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부지 민원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기아자동차 부지 현황 • 토지소유자 : 최용석 연암동 1260-3외 3필지 • 보상금 총액 : 1,106,189,380원 중 토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조치 건의	지 영업권, 간접 및 특례보상금 770,864천원 수령(2000.12.29) • 매입 토지 형질변경 및 건 축허가(2001.1.4) ○ 향후 계획 • 매입토지 성토 및 가건물 건립 준공 : 2001.2월말 예정 • 이주계획 : 2001.3.10 예정	
자 치 행 정 과	1. 문화행사 경상보조금 지급기준 제정 ○ 북구의 문화행사 지원 경상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에 맞는 지급 건의	○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북구지역에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로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주요 문화행사 개최시, 행사주관단체로부터 신청된 보조금을 행사내용,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산의 범위에 맞게 철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 정 과		보조금 책정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을 도모하겠음.	
	2. 노래연습장 건전 육성 ○북구의 노래연습장 89개소에 대하여 대표자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 육성 건의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 노래연습장협회 북구지부와 협의 후 교육시행 • 교육시기 : 5~6월 • 대상 : 노래연습장 • 교육내용 : 건전영업 육성방안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 • 수시점검 : 월 1회이상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검·경찰 및 구 합동점검) • 점검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조치사항 - 위법시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언론공개로 경각심 고취 - 상습·고질업소 특별관리 ○붙임 : 2001년 유통관련 업소 관리 계획 사본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 정 과	3.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타당성 검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통장, 바르게살기위원 등 다른 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재검토하기 바람.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조례상 명시되어 지급 운영되고 있으며, 통장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새마을단체는 시비 및 구비를 50%부담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범위 및 예산 규모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지방세과	1.신용불량자 등록 조건 하향 조정 ○지방세 결손처분 전에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조건을 하향 조정 건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 불량등록 조건 하향 조정 건의 • 일 시 : 2001.1.8 • 건의처 : 울산광역시 (지방세과) • 건의내용 - 현재 신용불량등록 대상이 체납 발생일로부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체납세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등록요건을 체납액 300만원 이상인 자로 등록대상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붙임 : 건의 공문 사본	
민 원 봉 사 과	1.민원모니터요원 내실화 ○현재 민원모니터요원을 48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다는데 인력증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모니터요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목표 • 확대시행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조기 포착 및 해소 • 구민과 행정의 일체화로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 사 과	대책 마련 건의	○활성화 방안 • 모니터요원 증원 : 100명 정도 • 적극적 참여 유도 • 간담회 개최(연 2회) • 활동에 대한 보상 추진 (5,000원상당 도서상품권) • 우수모니터 활동사항 공개 • 각종 설문조사시 참여 ○추진계획 • 모니터요원 위촉장 수여 • 간담회 개최 2001.2월초	
	2.민원 택배제 운영 홍보 철저 ○민원 택배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주민에게 하는 행정서비스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철저 건의	○추진목표 • 단 1명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적임. ○전담공무원 지정 : 8명 (동 사회담당자) ○대상자 선정 : 2001.1.27 한 ○홍보계획 • 매월 주민만남의날 홍보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 사 과		자료에 게재 • 주요 일간지 게재 • 선정대상자에게 홍보물 발송 ○실질적 시행 : 2001.2.1 부터 • 월별 동별 서비스 실적 평가 • 민원서비스 설문평가시 반영	
주민자치 센 터 운 영 단	1.적십자회비 자율 납부로 개선 ○적십자 회비를 준조세의 강제 할당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율 납부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없애도록 건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제 제기된 사항 적십자사 통보조치 (자치 13100-10144, 2000.1.12) ○회신 (대한 적십자사 총무 2001.1.28) • 적십자 회비 납부 방식을 은행지로 고지서(1998년) 방식으로 개선 • '99년 이후 집중 모금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자 후원회 제도정착 노력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주민자치센터운영단		• 적십자 회비 집행상황 적극 홍보 ○ 2001년 적십자회비모금시 동별 목표액에 대해 산정치 않으므로 주민스스로의 자율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2. 탄생백일 축하카드 제도 개선 ○ 탄생 축하카드를 1,000원을 들여 발송하고 있는데 구민의 소속감 고취와 더불어 사는 북구민의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건의	○ 탄생 축하카드 발송시 카드에 구민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축하문을 인쇄 동봉하여 발송 조치하겠음.	완 결
지역경제과	1. 효문국가공단 지정 취소 ○ 1975년도에 지정된 효문국가공단이 사업 미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여, 국가공단 지정을 취소하든지, 조속 사업 시행 건의	○ 울산광역시 관련사항 질의 결과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인 효문·연암동 일원의 효문지구는 1975. 6.23 건설부고시 제107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호로 국가산업단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주가 가능 • 본효문지구의 총면적은 586천평으로 그동안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평탄지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473천평(81%)이 개발되어 188개업체가 입주되었으며, 기존 취락지역 5개부락 360세대가 거주하는 22천평 및 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91천평 등 113천평이 미개발 • 미개발부지의 개발촉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단 내 미개설도로 8.59Km 중 1.41Km에 대하여 시비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 제 과		1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본지구가 국가산업단지인 점을 감안 건설교통부에 도로개설 사업비 33,840백만원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울산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년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사 회 복 지 과	1.노인의 날 행사 시기 탄력적 운영 ○우리 북구에 7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에 일제히 실시하므로 동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	○경로행사는 시비보조금으로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에 한하여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동별 각 100만원) ○ 동 행사는 시 보조금 지원 시기에 맞추어 10월 중 분산 개최	완 결
	2.G·B내 축사 신축하여 자활지원센터 운영 위탁 ○G·B내 국·공유재산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불 가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 지 과	확인하여 건물(축사) 등을 신축하여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 검토 건의	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1에 의거 축사 신축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행정기관에서 설치는 불가함.	
	3.저소득 결식아동 파악 방법 개선 ○저소득 결식아동을 교육청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통하여 실제 결식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식아동 지원 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1997.12.13)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식 아동현황을 파악하겠음.	완 결
환 경 위 생 과	1.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 철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실시 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 일시 : 2001.5.17 예정 • 대상 : 대기·폐수배출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 생 과		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자 • 교육내용 - 관련법규 안내 - 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안내	
환 경 미 화 과	1. 세탁업소 폐기물관리 감독 강화 ○ 세탁업소 폐기물은 맹독성이므로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미등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하는 등 환경오염대책 수립·시행 건의	○ 2001년 10월까지 관내 세탁업소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점검을 할 계획임.	추진중
도 시 교 통 과	1. G·B해제관련 주민의견 수렴 ○ G·B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불편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	○ G.B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 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가 용역 중(2000.4 ~ 2001.7)임.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2001. 7월경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견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협의회의 의사를 수렴하여 2001.9월경 G.B 해제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요청 계획임.	
	2.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서비스 개선 요망 ○대중교통 불편신고 엽서가 운송업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고, 시내버스요금 인상 후에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그 시정과 시내버스 카드제 도입과 거스름돈 대책을 시에 건의	○우리구에 사무소가 위치한 시내버스 업체가 없으므로 2000. 12. 7일 교통불편신고엽서 수신처를 관할 구, 군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시와 각구, 군에 건의 하였음. ○붙임 : 관련 공문사본	추진중
	3.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중 북구위원 선정 ○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중 북구 주민은 1명 뿐으로 북구 주민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안배가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임명토록 되어 있음.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현재 15명의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 5명, 대학 추천교수 8명, 교통전문가 1명, 당연직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해당위원의 임기 만료시 북구 주민중 위 요건을 갖춘 자를 물색하여 임명토록 건의하였음. ○붙임 : 관련 공문사본	
	4. 시내버스 노선 운행 ○효문동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 10개 노선이 다니고 있었는데 공사 후 복구도 되지 않고 노선을 3개로 축소하였는데 그 시정을 광역시에 건의	○2000.11.29일 효문동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의견서를 광역시에 제출하였음. ○붙임 : 관련 공문사본	추진중
	5.효문로타리, 진장동, 호계구획정리지구 침수대책 ○2001년 장마기에 대비하여 침수대책 수립 ·	○진장 · 명촌구획정리지구 계획고를 전체적으로 30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시행 건의	~40㎝ 높이도록 하고 관말부 유출부분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80m 하류측으로 연장하여 태화강으로 방류하여 침수방지 ○ 효문사거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로변 우수관로 개설 및 관거매설하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쪽으로 유출시킴과 동시에 우수시 농수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협약 체결(조합,농업기반공사) ○ 호계구획정리지구 침수방지대책으로 우·오수 유입구 방수공사를 완료(26개소) 하였으며, 2001년 4월경 우수 유입구 청소작업 실시 ○ 철도횡단도로 부지매입 후 도로부지로 관거이설할 예정임.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 통 과	6.신상안교와 구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속 시행 건의 ○농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상안교 구국도 7호선 연결도로를 조속 시행 건의	○2000. 12. 2철도횡단도로(대3-35,58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므로 호계토지구획정리조합(현대자동차)에서 토지소유자와 도로부지매입 협의중이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내용에 따라 도로부지 매입후 기부체납하고, 도로개설비는 광역시와 협의 예치될 시 연결도로 개설토록 건의	추진중
농 림 수 산 과	1.전복치패살포사업 등 수산분야에 많은 돈이 투자되므로 국비지원 요청 건의 ○전복치패살포사업 등 수산분야에 많은 돈이 투자되므로 국비지원 요청 건의	○국비사업 신청 : 울산광역시에 2001년 해양 수산 사업 중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신청하였음. (농수41621-301 2000.3.8)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 신청 사업량 : 전복 150,000패 • 신청 사업비 : 150,000천원 (국비 : 120,000천원, 지방비 : 30,000천원) ○ 2001년도 사업 내시 (예산비 편성) : 해양수산부→울산광역시 내시 분 • 울산광역시 전체내시 : 63,766천원 국비 : 51,013, 지방비 : 12,753 ※당초 울산광역시 신청금액 : 240,000천원 ○ 울산광역시에서 구에 배정할 것인지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여부 검토 중(2001년도 추경예산분임) • 2001년도 소요사업도 3월 안으로 국비지원 요청할 계획임. ○ 관련 공문사본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2.북구 농업직 공무원 증원 건의 ○북구의 농업직이 3명으로 울주군의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대책을 수립 증원 건의	○2000.8.21 : 농업직 공무원 증원 울산광역시 건의(기감12200-10780) • 중 4명(농업직 2, 토목직 1, 수의직 1) →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2002.7.31)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시행 통보(시 기획 12200-559) ○2000.12.6 : 담당제 검토 • 농정업무 과다에 따른 인력증원(3명) 및 유통축산담당 신설방침 결정 ○2000.12.20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규칙 개정 • 기존 농정팀을 농정팀, 유통축산팀으로 분리, 인력 3명 증원 (2001.1.1시행) • 현재 농정업무분야 직원이 8명이므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3.임도 개설사업 시행 경쟁체제 도입 ㅇ임도 개설사업을 매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는데 일반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ㅇ현재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임도개설 및 산림사업을 행할 수 없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임도개설 및 모든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①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②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2.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불 가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붙임 : 산림산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4. 농지전용 허가 ○ 농지전용 허가를 법령 해석이나 사례를 폭넓게 해석하여 민원인의 편에서 처리 건의	○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고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 될 수 있는 지 등의 확인을 거쳐 적합하다면 민원인의 편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 결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2001. 1. 1부터 허가과가 신설되어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임.	
	5.공원 내 놀이시설 근본적 대책 ○공원 내 놀이시설(회전무대)에 대하여 선진지나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시행 건의	○금년 5~6월중에 서울, 대전, 대구 등 선지지를 견학하여 비교, 검토한 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 하겠음.	추진중
	6.한해대책 항구적 대책 수립 ○한해대책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즉시성, 충분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한해가 발생하였을 시 일시적으로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대차 작업비를 투입하여 물 웅덩이 파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1회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한해가 발생하지 않는 평년에도 지속적인 사업발주를 통하여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 산 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기반 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허 가 과	1.건축허가 불합리 조항 상부에 시정 건의 ○각종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타 실·과의 의견조회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불합리한 조항을 상부기관에 법개정 등을 건의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분야의 불합리한 법규정 및 협의부서의 불합리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임.	완 결
보 건 소	1.의약분업에 따른 서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서민들이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음.	불 가

처리부서	건의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보 건 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시행 건의	따라서 의료비 경감방안은 불가함. ㅇ다만, 국·시비보조, 구 자체사업으로 방문간호, 경로당순회진료사업, 실직자·저소득층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가족보건·심장병·지체장애자의 무료진료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의료보호가 안되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를 위한 기본접종과 4~6세 MMR, PDT 추가접종의 무료접종, 뇌염·독감·감염 등 일반예방접종의 주사제도 원가에 해당하는 저가로 접종하여 실질적인 서민 의료경감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ㅇ앞으로도 더욱 시혜의 폭을 넓혀 가는 의료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임.	

제5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의 기간 : 2001. 11. 27 ~ 2001. 12. 3(7일간)

다. 감사의 주체 : 본 회의

- ○ 의　　장 : 진 한 걸
- ○ 부 의 장 : 박 광 식
- ○ 의　　원 : 전 의 원
- ○ 전문위원 : 김 찬 수
- ○ 사무직원 : 이 석 원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무
		직	성명	전임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조승수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강한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국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신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경제사회국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건축과장	김환조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1동장	조 충 래		
		농소2동장	김 덕 용		
		농소3동장	김 지 호		
		강동 동장	성 낙 화		
		효문 동장	조 계 현		
		송정 동장	김 영 식		
		양정 동장	김 현 옥		
		염포 동장	박 원 희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1. 11. 27 ~ 2001. 12. 3(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3.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제출요구 현황(제48회 임시회, 2001. 11. 9.)

계	공 통	기 획 감사실	총무국	경 제 사회국	도 시 건설국	보건소	의 회 사무과
217건	20	22	65	44	49	13	4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1. 11. 27 (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2001. 11. 28 (수)	10 : 00	〃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1. 11. 29 (목)	10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2001. 11. 30 (금)	10 : 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1. 12. 01 (토)	10 : 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 가 과	
2001. 12. 02 (일)	10 : 00	〃	○현장확인	
2001. 12. 03 (월)	10 : 00	〃	○보 건 소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실·국·소단위 실시

○ 선 서 문 : 별첨

- 서명날인 후 제출

라. 기타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철저

○ 다과류 준비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철저

○ 현장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6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1. 11. 27 ~ 2001. 12. 3(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총 무 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류재건 김진영 윤종오	김찬수	이석원

나.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01.11.27 (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총 무 국 • 문화공보과 • 민원봉사과	
2001.11.28 (수)	10 : 00	〃	○총 무 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지방세과	
2001.11.29 (목)	10 : 00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일 자	시 간	감 사 장 소	감사대상 기관	비 고
2001.11.30 (금)	10 : 00	〃	○경제사회국 •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 설 과	
2001.12.01 (토)	10 : 00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 가 과	
2001.12.02 (일)	10 : 00		○현장확인	
2001.12.03 (월)	10 : 00	북구의회 소회의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전부서 부문별	

다. 감사방법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 · 국 · 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 · 과 · 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 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17	80		207
공 통 사 항	20	1		25
기 획 감 사 실	22	7		15
총 무 국	65	26		71
경 제 사 회 국	44	15		37
도 시 건 설 국	49	25		43
보 건 소	13	5		12
의 회 사 무 과	4	1		4

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31	26
공 통 사 항	2	2	
기 획 감 사 실	6	4	2
총 무 국	19	9	10
경 제 사 회 국	11	6	5
도 시 개 발 국	17	9	8
보 건 소	2	1	1

3. 주요감사실시내용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td><td>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작성)
<table>
<tr><th>항 목</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잔 액</th><th>미집행
사유</th><th>추경증감
사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및 실적
<table>
<tr><th rowspan="2">분기
목별</th><th colspan="2">계</th><th colspan="2">2000
11,
12월</th><th colspan="2">2001
1/4</th><th colspan="2">2/4</th><th colspan="2">3/4</th><th colspan="2">4/4</th></tr>
<tr><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h>계획</th><th>실적</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table>
<tr><th>민원명</th><th>접수
일자</th><th>처리
일자</th><th>민원인</th><th>민원
내용</th><th>처리
내용</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table>
<tr><th>사업명</th><th>위 치</th><th>사업
개요</th><th>사업비</th><th>진 도</th><th>시공자</th><th>비고</th></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5.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정산내역(정산서 사본첨부)
- 2000. 1. 1 ~ 2001. 10. 31
6.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td><td>※항목은 세항,세세항,목기재</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전부서 공통사항〕	7.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	
	8.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서식1
	9.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 내역) (203-01)	서식1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현금 카드 지급 내역) (203-03)	서식4
	11. 관외출장현황(국장이상)	
	12. 각종기금 출연금 관리 및 운영현황	
	13.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 내역 (2000년11월 1일 - 2001년 10월 31일 현재)	
	14. 출납장부와 현재 잔액증명서 사본(2001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매월 말일 기준)	
	15. 당초예산 편성 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 이유	
	16. 각종 모니터요원 현황 및 실적(예산내역 있으면 현황)	
	17. 2001행정법규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8. 2000년예산 2001년도 이월사업(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19.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완료, 진행중, 미집행, 설계변경, 집행잔액) ※ 미집행, 설계변경 - 사유기재	
	20. 집단민원 처리현황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3.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 4.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5. 예비비 지출내역 6.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서류제출〉 7.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 8.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현황 9.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10.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 수범사례 및 모범공무원 발굴 11.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결과 및 조치사항 12.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반 운영사항 13. 구정 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일자, 개최시간, 회의록등) 14.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사회 지표 조사, 농어업총조사 - 구분작성 15. 법제심사현황 16.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17.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8. 지역정보센타 운영현황 19.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감찰 현황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기획감사실</td><td>20.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21. 일시사역 인부 운영실태(전부서 취합)
22. 약수동산 대학유치 추진현황 및 성과</td><td></td></tr>
<tr><td>총 무 국
총 무 과</td><td>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2000,2001)
2.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table>
<tr><th>부서명</th><th>일자</th><th>건명</th><th>사업량(수량)</th><th>예정가</th><th>낙찰가</th><th>낙찰율</th><th>낙찰자</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 국·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등 관리현황
(1999. 1. 1 ~ 2001. 10. 31현재)
4. 2000. 10. 1이후 북구공무원 인사발령 현황
(승진, 전보, 전입, 전출, 퇴직, 현황 등)
5.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 급식비 지급내역(전부서 취합)
6. 불용물품(자재)현황 및 매각현황
7.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8.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9. 하도급 계약(변경) 현황
10. 간부공무원 출장내역 및 예산잔액현황(자료제출)
(일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여비지출액)
11.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전부서 취합)</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 무 국
총 무 과</td><td>12.구청재산현황(토지,건물,차량,장비,비품 등)
<table>
<tr><th>품 명</th><th>구입
일시</th><th>취득
가격</th><th>현잔존
가 액</th><th>폐 기
예정일시</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13.소방도로 발주업체 하도급 실태현황</td><td></td></tr>
<tr><td>총 무 국
자치행정과</td><td>1. 동별 적십자 회비 수납현황(목표액 및 수납 방법)
2. 민간인(단체) 포상자 내역
(2000. 11. 1 ~ 2001. 10. 31)
3.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4. 각 동별로 예산 집행된 금액
(2000. 11. 1 ~ 2001. 10. 31)
5.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 감독 사항
(2000. 11. 1 ~ 2001. 10. 31) 및 지적사항
6.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7.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과제별, 추진내용, 추진결과, 효과)
8. 민방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9.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 실적
10.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11. 즉시민원 처리시스템 운영현황
12. 동향보고 현황
<table>
<tr><th>일 시</th><th>건 명</th><th>주요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총 무 국
자치행정과</td><td>13.동사무소 실제직제 운영현황
<table>
<tr><th>동별</th><th>직급</th><th>직위</th><th>성명</th><th>실제호칭</th><th>담당업무
(간담회)</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td></tr>
<tr><td>총 무 국
문화공보과</td><td>1. 체육지원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2. 동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도서구입비 내역 및 공공도서실 운영현황
5.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실적
6. 무룡문화예술원 운영 현황
7.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8. 구 주관 체육,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부서)
9. 북구 사격팀 운영 현황 및 실적(운영비등)
10. 청소년관련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행사 및 지원 현황 및 정산서
11. 게임장 허가일 및 법규위반 업체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12.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13.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구민회관 건립추진현황</td><td></td></tr>
<tr><td>총 무 국
지방세과</td><td>1.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채권 확보내역(건당 50만원이상)</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총 무 국 지방세과	2.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현황 3. 체납자 거소불명 현황내역(10만원이상) 4.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및 재부과한 건수 내용(건수, 금액, 사유)(10만원이상) 5.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6.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7.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8.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동에 지시한 사항 9.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10. 지방세, 세외수입,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시효소멸, 불납결손액 10만원이상) 11. 과년도 체납세 세목별 현황과 징수실적(시세, 구세구분) 12.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2000.11.1 ~ 2001.10.31) 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 14. 세입목표(세목별)대 실적현황 15. 비과세, 면세, 세액감면현황 (2000.11.1~현재) 16.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17.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체납세징수 추진현황 및 대책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총 무 국 민원봉사과	1. 예비군동대 장비지원현황 (관련법규제출) 2.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전산화추진실적〈도면 제출〉 3.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5. 구청 내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 (실과별 취합) 6. 민원 택배제 운영실적 7. 민원1회방문처리제 현황 8. 민원후견인제 추진실적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관내 주유소 행정처분 내역) 2. 가스업소 관리현황 3. 가스 집단공급시설 현황 4.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 결과 5. 지역중소기업 제품판로 촉진,지원실적 6. 2000. 11. 1 ~ 2001. 10. 31까지 취업알선 현황 7.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8. 업체별, 국별 외국인 취업현황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 3.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관리현황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4. 아동복지 지원 사업현황 (결식학생현황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실적 현황) 5. 의료대불금 내역 및 결손처분 현황 6. 경로당지원 및 북구 노인회운영 현황 (지원금현황 및 운영실적) 7. 자활지원센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ㅇ수익내역 ㅇ지출내역(인건비, 경비, 사업비 지급현황 및 정산서) ㅇ자립현황(설립이후 ~ 2001. 10. 31현재) ㅇ지도점검내역 8.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금 및 운영실적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추진현황, 개선방안 10. 화장장 유치관련 업무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11. 경노당 신·증축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12.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현황 13. 사회복지업무 전문화 추진현황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1. 각마을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관계서류 사본(우물,약수터) 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불법영업(2000.11.1~2001.10.31) 단속실적 및 불법퇴폐업소 단속실적, 지적사항처리 관계서류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td><td>〈점검일지제출〉
(불법퇴폐업소단속실적, 지도내역)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사항〈서류제출〉
4.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사항 및 현황
5.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6. 오염물질 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 조치내역
7.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화장실 청소 인력운영현황(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8. 해양오염물질, 유출현황 및 행정처분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10.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table><tr><th>업소</th><th>위치</th><th>건축허가일</th><th>객실수</th><th>위반현황</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11. 간이 상수도시설 업무현황(현 실태 및 문제점 등 포함)
12. 2002년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신축현황</td><td></td></tr>
<tr><td>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td><td>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관련 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4. 환경미화원 정·현원(1999. 1. 1 ~ 2001. 10. 31) 및 담당구역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5.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6. 세탁업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 세차장 폐기물 처리 현황 7.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8. 쓰레기처리 관련 용역현황 9. 분리수거 추진실태 10.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11. 재활용센터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실태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1.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동별현황)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3. 호계·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척내역 및 문제점 등 업무추진현황 4. G.B해제 관련추진현황 5.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6.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상안교 연결도로 대책 7. 호계구획정리지구내 하수구관리 문제점 및 침수 대책 8. 효문국가공단 주민사유재산 피해대책 9. 도시계획관련 용역업무 추진현황	
도시건설국 건 설 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하천부지 점·사용허가현황 및 내역 3.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4.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table>
<tr><th>소관부서</th><th>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th><th>비 고</th></tr>
<tr><td>도시건설국
건 설 과</td><td>5. 북구관내 가로등 전기료 월별현황
6. 도로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7. 토목직 공무원 과별현황 및 직접설계건수 - 인원 증원대책
8.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9. 가로등 보수업체 보수실적 및 계약자료
<table><tr><th>민원접수일자</th><th>내 용</th><th>완료일자</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r></table>10. 가로등, 보안등 전산관리 추진현황
11. 농소 구국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역업무 추진현황(문제점 및 대책)</td><td></td></tr>
<tr><td>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td><td>1.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2. 수산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3. 농지무단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2000. 11. 1 ~ 2001. 10. 31)
4. 농지거래허가신청 및 자격취득 발급현황
5. 방치폐어선.무등록어선등 범칙어선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6.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7.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8. 가로수관리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근린공원포함)
9. 구 보유 양수기 및 기타 영농장비 보유 관리 현황</td><td></td></tr>
</table>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 고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10. 임도 개설·보수 현황 및 업체계약내역 11. 육림 및 조림사업 현황 12.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 및내역 13. 공유수면매립지임대현황과 현임대료산출근거 제출 14. 2001 한해대책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15. 전복치패사업 투자현황 및 실적분석 (1997. 7. 15 ~ 2001. 10. 30) 16. 강동석산허가 관련자료 및 사후관리 사항 17. 공공화장실 전기료 월별현황	
도시건설국 허 가 과	1.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등) 3. 건축허가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4.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내역 5.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현황 6.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내역 7. 재해위험건물현황과 행정지원 대책 8. 신천동 LPG 충전소 건축허가 관련 추진현황 9. 갈밭들 개발계획 관련자료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위 10. 약수초등학교앞 남진여객차고지 건축허가 관련 현황	

소관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도시건설국 허 가 과	11. 농지전용현황 및 처리결과 12.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전염병 예방활동 내역 및 법정 전염병환자 관리 실태(1, 2, 3종) 3.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4. 약국, 병·의원 현황 및 의료기관 관리현황 (개소 및 폐업사항 등) 5.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6. 보건소 진료이용자 거주별 현황 및 동별 진료·순회 운영실적(월별현황) 7. 주요약품 구입내역(단가) 및 관리현황 8. 의료장비 관리실태 현황 9.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10.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환자 관리실태 11.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구입현황 및 예방 접종 실적 12.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13. 의약분업에 따른 지도점검현황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7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1.11.27~12.3일 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기간은 너무 짧고 특히 우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구정 전 업무를 감사함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점이 있었으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 하여 통보하였으나 정확한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하여 각종통계자료가 틀리고,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추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각 실·과 관계공무원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았음.

○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는 각종 안건 심사 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나 행정여건이 타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엿보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o 각종 문제점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소홀 과 예산집행 부적절 등 시정요구 31건과 건의사항 26건으로 총5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2년 1월 31일까지 결과 보고토록 하고자 함.

제8절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시정 · 건의 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57	40	15	2	31	24	6	1	26	16	9	1
공 통		2	2			2	2			0			
기 획 감사실		6	6			4	4			2	2		
총무국	계	19	14	4	1	9	8	1		10	6	3	1
	총무과	6	5	1		4	3	1		2	2		
	자 치 행정과	6	3	2	1	2	2			4	1	2	1
	문 화 공보과	2	1	1		1	1			1		1	
	지방세과	2	2			1	1			1	1		
	민 원 봉사과	3	3			1	1			2	2		
경제사회국	계	11	8	3		6	5	1		5	3	2	
	지 역 경제과	4	3	1		2	2			2	1	1	
	사 회 복지과	4	3	1		3	3			1		1	
	환 경 위생과	1	1			0				1	1		
	환 경 미화과	2	1	1		1		1		1	1		
도시건설국	계	17	9	8		9	5	4		8	4	4	
	도 시 교통과	3		3		1		1		2		2	
	건설과	8	8			4	4			4	4		
	농 림 수산과	5		5		3		3		2		2	
	허가과	1	1			1	1			0			
보건소		2	1		1	1			1	1	1		

2. 시정 · 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시정 · 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	1.감사자료 작성 소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1년 11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현황, 추진상황, 근거서류 등을 빠짐 없이 일목요연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수익내역, 지출내역, 자립현황, 지도점검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간단한 사업추진 현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작성방법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부서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작성토록 통보 조치 ○붙임 : 기감 61230-10095 (2002.1.14)호(P32~34)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공통사항 (시정)	황만을 제출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실하므로 이후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2. 일상경비정리부 관리 소홀 ○각 실·과장 책임하에 지출 정리하는 회계장부인 일상경비 정리부의 누계정리 및 월말 결산 등이 부실하고 각 실과마다 상이 하는 등 장부 정리가 허술하므로 교육 등을 통하여 통일성있게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각 실·과·소·동에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및 신용카드 사용요령 시달(총무13330-13131호로 공문 시달 : 2001. 12. 10) ○전실·과·소·동일상경비 담당자 교육 • 일시 : 2001. 12. 21 • 장소 : 총무과 • 참석인원 : 23명 • 교육내용 : 장부기재요령등 ○2002년 일상경비 장부구입시 일괄구입으로 서식을 통일함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 매분기별 기초회계검사 시 철저히 지도하도록 기획감사실에 협조 요청	
기 획 감사실 (시정)	1.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소홀 ○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간 또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시 1주간 또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차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지적하며 이후 반드시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함.	○ 향후 인부임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주·월차수당을 지급토록 전 부서 통보 조치 ○ 붙임 : 기감 13310-12884 (2001.12.27)호(P35)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정)	2.공공시설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강동 해변로의 파손 된 배수구 덮개에 발목이 빠져 우측하지 다발성 반혼상 및 좌 하퇴부 열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피해자 서 지연외 3인이 민사소송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후 정확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 가 지극히 미흡하여 지 적하고 시정 요구함.	○공공시설에 의한 사고발생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분석하여 자료보관토록 전부서 통보 조치 ○붙임 : 기감 61230-10095 (2002.1.14)호(P32~34)	완 결
	3.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형평성 결여 및 정산서 부실 ○2001년 5월 가정의 달 경로위안잔치를 위하여 2001년 당초예산에 동당 200만원씩 예산편성 하여 경로행사를 지원 하였음에도 특정단체인 북구기독교지도자 협의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시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지원 요구토록 하고, ○보조금의 관리는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정)	회에는 풀 보조금 7,050 천원을 지원하여 경로행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집행 사례가 있으며 정산시 행사이후 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정산서가 극히 부실하므로 시정 요구함.	의 규정에 따라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사업 정산서 증빙 영수증과 실제 집행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부서 통보 조치 ○붙임 : 기감 13310-12884 (2001.12.27호(P35)	
	4.감사원 감사시 확인서 작성 부적절 ○2001.9.10~9.20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원 종합 감사 지적사항 확인서중 "자금을 인출한 후 실제로는 ○○○ 및 구의원 등과의 다과경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서 상부감사기	○조치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기준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적합토록 관련부서에 행정상 주의조치 하였으며, - 관련된 담당 및 담당자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시정)	관 감사를 흐리게 하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 공개사과와 시정을 요구함.	2명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 조치하였음. ○공개사과 • 구의원 명의를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함. ○향후 조치계획 • 금후부터는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토록 하겠으며, • 2002년도 세출예산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했는가에 대하여는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기 획 감사실 (건의)	1.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극대화 ○2001.9.28일 농소농협 이화지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발급 건수가 10월말 현재 17건으로 지극히 저조함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 : 2001. 9. 28 • 설치장소 및 대수 : 농소농협이화지소, 1대 • 이용시간 : 농협근무시간내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의)	책을 세우기 바람.	• 소요금액 : 20,000천원 (국비 10,000천원, 지방비 10,000천원) ○ 무인민원발급현황 및 문제점 • 발급현황 2001.9.28~10.31까지 발급건수 : 총 17건 • 문제점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서류가 아직 발급서비스 되지 않으며, 인식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되고 있는 민원서류도 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직접 찾는 경우가 많음 ○ 대책방안 • 발급가능한 민원종류의 확대 •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에도 발급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민들의 출입이 많은 구청민원실등 발급장소의 변경고려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의)		○향후계획 • 2002년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으로 인해 발급건수 증가예상 •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가 발급되도록 울산시에 조례 개정 요구 •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2.지역정보센터 운영 내실화 ○지역정보센터 인터넷프라자 이용주민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장시간 동안 주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불친절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므로 관리 철저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함.	○지역정보센터 인터넷방 현황 • 인터넷방 개소일 : 2001. 2. 5일 • 인터넷 PC 수 : 펜티엄 10대 • 인터넷방 이용시간 - 평일 : 09 : 00 ~ 18 : 00(동절기17 : 00) - 토요일 : 09 : 00 ~ 13 : 00 • 1일 평균 이용자수 : 30~40명정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기 획 감사실 (건의)		○운영상의 문제점 • 인터넷방은 북구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으나, • 평일 오후 특히 15 : 00 ~17 : 00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용이 많으며 이들은 정보이용보다 인터넷게임, 채팅 등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책방안 • 이용자수칙 게시 • 유해싸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 ○향후계획 • 지역정보센터 상주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방 사용자들을 수시 점검하여 인터넷게임 및 채팅사용자에게 금지토록 계도하고 불응시 퇴실조치 • 유해싸이트 차단프로그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건의요구사항</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기 획
감사실
(건의)</td><td></td><td>램을 설치하여 음란물, 게임, 채팅싸이트의 접속을 원천봉쇄</td><td></td></tr>
<tr><td>총무과
(시정)</td><td>1.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 2001년 당초예산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산액 17,120천원중 2001년 10월 31일 현재 13,455천원을 지출하면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생일상품권 구입 등 5,095천원(38%)을 지출하고 특정직원에게 8,360천원(62%)을 지출함으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함으로 시정 요구함.</td><td>○ 예산편성기준 2001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함.
○ 집행기준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년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table>
<tr><th>연도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잔액</th></tr>
<tr><td>2000</td><td>17,120</td><td>17,114</td><td>6</td></tr>
<tr><td>2001</td><td>17,120</td><td>16,768</td><td>352</td></tr>
<tr><td>전년대비</td><td>-</td><td>△2.2%</td><td></td></tr>
</table>
○ 조치사항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년도별 비교해 볼 때 전년도 대비 집행액이 2.2% 감소하였으며,</td><td>완 결</td></tr>
</table>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		• 금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등 전직원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2.차량관리 부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상 중·소형 승합차량의 내구 연한이 6년임에도 울산80너1934 차량은 91년식으로 10년이 넘었으며 또한 본 차량이 환경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매연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물품관리 내구연한이 지난 환경단속차량에 대하여 차량교체에 따른 정수를 재배정하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후 교체하겠음.	추진중
	3.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 적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시책	○예산편성기준 : 2001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완 결

<table>
<tr><th>처리부서</th><th>시정·건의요구사항</th><th>처 리 내 용</th><th>처리결과</th></tr>
<tr><td>총무과
(시정)</td><td>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면 2001. 1. 19 적십자회비 징수 및 정보화센터 수료식 등 총19건 450여만원이 격려금으로 현금이 지출되었는데 수령자에게 지급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변칙지출 되었으므로 엄중 시정요구하고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td><td>지침에 의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table><tr><th>년 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잔 액</th></tr><tr><td>2000</td><td>8,100</td><td>75,637</td><td>5,363</td></tr><tr><td>2001</td><td>8,100</td><td>66,105</td><td>14,895</td></tr><tr><td>전년대비</td><td>-</td><td>△12.6%</td><td></td></tr></table>○집행기준
• 대 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경비
○조치사항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동기대비 집행액이 12. 6% 감소하였으며,
• 시책업무추진비관련 집행업무 담당에 대하여 2002. 1. 18일자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으며,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제도적</td><td></td></tr>
</table>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		재발방지를 위하여, - 매분기별 기초회계검사를 강화하여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신용카드사용,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등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토록 전실·과·소·동에 시달하였으며, - 금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4.구청사 청소 용역 개선 ○구청사 청소 용역을 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수의계약을 하여 실시	○예정가격 작성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무과 (시정)	하고 있으나 용역계약 당시의 계약서상의 청소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관리가 부실함으로 용역계약서를 준수토록 시정요구함.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음. ○2002년도부터는 청소원 임금 지급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용역업체에 수시 감독을 강화하여 청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매일 청소일지를 작성하여 청소용역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총무과 (건의)	1.각종 공사·물품 계약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용역시 북구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함.	○북구업체 현황 • 일반건설업 : 3개소 • 전문건설업 : 50개소 • 전기공사업 : 12개소 • 현 수 막 : 16개소 • 인 쇄 : 7개소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북구업체와 계약토록 추진하겠으며,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총무과 (건의)		○가로등유지보수공사, 현수막, 유류의 경우 공개 단가견적입찰을 통해 북구업체와 100% 계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인쇄는 90%이상 품질과 가격면에서 동일할 경우 북구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2.동 직원 인사 개선 ○동 직원의 잦은 교체와 직제 및 호칭문제 등으로 직원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동정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동직원 전보시에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여 임용하겠으며, ○동일 계급자를 동일 동에 임용할 경우에는 승진일자가 가능한 다른 자를 임용토록 하겠음.	완 결
자 치 행정과 (시정)	1.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절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덕성회복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대안교육에 380만원을 지	○관련법규에 따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단체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내용을 철저히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시정)	급하였으나 행사 내용상 지원 금액이 과다함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확인하여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음. ○직원 업무연찬 교육 실시 - 일시 : 2002.1.8 09 : 00~ - 장소 : 자치행정과 - 교관 : 자치행정과장 - 내용 •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 관리조례	
	2.제2건국위원회 실적미비 ○제2건국위원회 운영이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외 3건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미흡하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폐지 내지는 당초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5093호에 의거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출범한 기구이며, 2001년도 실적이 다소 미비하나 2002년부터는 실질적인 다양한 활동 강화로 위원회 위상을 제고할 예정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건의)	1.방범대 활동지원 ○방범대는 야간방범순찰 및 우범지역 정화활동,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활동비에 대한 실비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함.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확대 예산 지원 현황 - 2001년 : 11,200천원 - 2002년 : 15,400천원 (4,200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완 결
	2.달천마을 회관 개선 ○달천마을회관 2층 출입구 계단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우천시 2층 출입이 불가능하고 2층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배수가 안되므로 개선하여 주기 바람.	○달천마을 2층 출입구 계단이 개방형으로 건축한 것은 미관 및 환기를 고려 한 것이며, 2층 계단 보수는 추경예산 확보후 조치하겠음. (소요예산 : 5,000천원 정도)	추진중
	3.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주 회의를 하고 있으나 위원에게 아무런 지원이 없으므로 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을 기초로 하고 있어 회의수당 지급은 당분간 유보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자 치 행정과 (건의)	기진작 차원에서 실비 정도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함.	를 하고, 향후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 질 때 지급 방안을 강구하겠음.	
	4.마을회관 신축관련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마다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마을회관은 대부분 형태나 용도가 비슷하므로 표준설계안을 만들어 신축시는 부분설계만으로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의함.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없으며 구청 단위에서 표준설계도서 활용은 불가능함. ○표준설계에 대한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 관한규칙 제1조의2 및 제2조	불 가
문 화 공보과 (시정)	1.사격팀 현지적응훈련 출장여비 지출 부적절 ○북구 사격팀이 2001년도 종목별 전국사격대회 참가대비 현지적응	○사격팀 대회출전경비 과지급분(3일)에 대해 2001.12.4일자 금462,000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시정)	훈련을 위하여 2001. 9. 15 ~ 9. 24까지 10일간, 2001. 10. 18 ~ 10. 28까지 11일간, 2001. 10. 29 ~ 11. 5일까지 8일간 실시하면서 출장경비 산출시 숙박료는 1일 적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각 10일, 11일, 8일로 계산하여 총 3일을 과다 지출한 건으로 시정 요구함.	을 반납 조치하였음. (P36~40).	
문 화 공보과 (건의)	1.생활체육지도자 종목선정 변경 ○생활체육 지도자중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종목은 비현실적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교체 및 효 율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수립을 건의함.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문 화 공보과 (건의)		의견을 회신받음. [지원2001-397(2001. 12.21)]. 또한 시에서는 울산시에 배정된 생활체육지도자가 42명으로 북구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타 구·군에 재배치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로 북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인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므로, 기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노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P41~42)	
지방세과 (시정)	1.수입증지 잔량 과다 ○수입증지의 2000년 총 이월량이 779,173매임	○이월량 779,173매중 60 원권이 163,950매, 300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시정)	에도 2001년도에 185,000매를 더 제작하여 2001년 10월 31일 현재 잔량이 758,759매로 잔량이 지나치게 많은데도 제작하는 등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량을 맞추어 잔량이 적정량이 되어야 함에도 수입증지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하여 시정 요구함.	원권이 271,920매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기 사용으로 증지 소요원인이 감소하여 기존에 제조된 것이 계속 이월된 것이며, 이후에는 잔량이 많은 위 액권에 대하여 제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와 같은 상당수의 잔량이 있음. ○이에 대한 소요방법으로서 인감증명등의 민원서류 발급시 인증기 대신 수입증지로 대체하고자 보관중인 수입증지 잔량에 대한 판매(소요) 지시-전동에 시달(P43) ○증지 보관관리 지도점검 수시 확행 ○향후 수입증지 판매 및 신청시 수요와 공급 유효 적절하게 조절	
지방세과 (건의)	1.체납자 채권 선순위 확보 방안 강구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방세과 (건의)	○ 체납자의 채권확보시 후순위로 채납세 징수에 많은 차질이 있는 만큼 선순위 확보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신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관리방안 강구 이행 - 채권확보 기간 단축 : 통상 납기후 80일 → 40일 - 체납 2개월내 체납처분 단행예고 - 직원교육 실시 • 일시 : 2002.1.14(월) 16 : 30 • 장소 : 지방세과 • 참석인원 : 부과징수담당자 17명 • 교육내용 :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요령(P44~46)	완 결
민 원 봉사과 (시정)	1.민원안내 철저 ○민원실은 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청의 얼굴로서 민원인이 다른과 소관 업무를 문의하여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여 주어야 함에도민원인들로부터 불편	○직원 교육 실시 • 일시 : 2001. 1. 9(수) 17 : 00-17 : 20 • 대상 : 전 직원 24명 • 교육내용 - 민원안내 철저 - 교육일지 사본 붙임(P47)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사과 (시정)	하다는 소리가 있어 시정 요구함.		
민 원 봉사과 (건의)	1.민원실내 인터넷방 개선 ○민원실내에 설치된 인터넷방 이용주민은 대부분 학생이며 이용시 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이용시간 제한 등 주민이 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건의함.	○인터넷방개선 교육실시 • 일시 : 2001. 1. 9(수) 17 : 00-17 : 20 • 대상 : 전 직원 24명 • 교육내용 - 이용시간 제한 - 09 : 00~근무시간 내 - 사용대상 구분 일반 3대(PC 표기) 학생 3대(PC 표기) - 오락등 수시점검 - 교육일지 사본 붙임 (P47)	완 결
	2.공시지가 산정 철저 ○공시지가의 등락 폭이 클 경우는 이의신청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타당한 사유등 신중한 검토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직원 교육 실시 • 일시 : 2001. 1. 8(화) 2001. 1. 9(수) • 대상 : 전 직원 24명 및 지가요원 5명 • 교육내용 -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민 원 봉사과 (건의)		- 지침 변경사항 교육 - 교육일지 사본 붙임 (P47~48)	
지 역 경제과 (시정)	1.각종가스공사 현장관리 소홀 ○관내 도로 및 인도 등의 각종 가스관련 굴착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특히 야간에 보행자나 차량운행에 상당히 위험하므로 안전조치 등을 조속히 시정 요구함.	○굴착공사 시공업체인 (주)경동도시가스측에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에 안전조치 취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붙임 : 57253-10107 (2002.1.17)호(P49)	완 결
	2.복사기 임대사용 ○복사기 임대사용은 구입사용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근거 없이 임대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정확한 비용	○복사기 구입·임대시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약 1,681천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임대복사기에 대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향후 복사기 임대계약 체결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시정)	비교분석 후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임대복사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붙임 : 45112-7 (2002.1.17)호 (P50~52)	
지 역 경제과 (건의)	1.고용촉진훈련 내실화 ○고용촉진훈련은 실제 목적이 실직자 재취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실제로 실업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지원해 주고 중도탈락자를 최대한 줄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건의함.	○취업률 저조원인 • 현재 훈련생중 컴퓨터 관련 직종의 훈련생이 전체 훈련생의 과반수를 넘는데, 이들은 여러종류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많은 면에 힘쓰고 있으나, 이런 훈련생의 경우 주부가 대부분이라서 막상 취업현장에 들어서면 구인업체와의 연결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취업이 잘되는 취업 우선직종(자동차정비, 굴삭기·지게차운전, 용접, 등)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지원율이 저조함.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의)		○중도탈락자 발생원인 •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문제의 발생건수가 많고, 취업의 기회가 오면 바로 훈련을 포기하는 훈련생이 많아서 중도탈락율이 높은 실정임. ○조치내용 • 현재상황 : 고용촉진훈련시 중도포기자 발생예방을 위해 당초 훈련생 선발시에 신중을 기하였으며(선발기준표마련), 현재 2차고용촉진훈련생중 중도포기율(9%)은 아주 적음. • 추진계획 - 취업이 잘되는 취업우선직종의 훈련수당을 인상하여 취업우선직종으로의 훈련을 권유 2001년 : 10만원 → 2002년 : 12만원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의)		- 훈련기관의 훈련내실화를 통하여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훈련비 13%인상 - 중도탈락 방지하기 위해 훈련수료시 취업지원수당 지급(1인당 5만원 지급) - 우수훈련기관 포상 : 취업률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훈련비예산의 10% 범위내에서 포상(1개훈련기관당 최고 500만원 이내)	
	2.달천농공단지 가스업체 관리철저 ○달천농공단지에 가스업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가스는 위험성이 크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주)덕양가스는 현재 미입주 상태로서 금년 2월중 공사착공을 하여 2002. 6월경 정상가동 예정에 있으며, ○(주)덕양가스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농공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지 역 경제과 (건의)		단지 입주에 따른 환경성 검토한 결과 적합한 업체로써 지난 '99. 11. 12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입주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득하였으며, 향후 공사 착공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사 회 복지과 (시정)	1.자활후견기관 관리 소홀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및 자활근로자 인건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 수익금의 지출이 불명확하며 각종 회계관련 서류 및 정산서가 아주 부실하고 감사자료 제출도 불성실함으로 자활후견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 요구함.	○자활공동체사업 수익금 사용등 회계처리상의 지적사항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통보 (2001.12.12) ○자활후견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2001.12.18) ○회계관련 직무교육 실시 : 2002.1.10	완 결
	2.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실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북구 정자동 258번지 새생활 선도회 정신지체 장애자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이며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화재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며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비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의혹이 있으므로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하여 시정 조치바람.	○현장조사 결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련부서(허가과)에 조치 의뢰 ○생계·주거비 착복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사회복지 9급 신영석외 1명)시 개인별 통장 확인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음. ○현재 5명중 1명(심천식)은 언양 기독병원에 입원조치 하였으며, 4명은 타시도로 전출된 상태임.	완 결
	3.우가 경로당 개선 ○경로당 신축시 전반적으로 건축비에 비해 내부시설이 부실하며 특히 강동 우가 경로당의 경우 설계시부터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시공하는 등 경로당 신축에 문제가 많으	○우가경로당의 경우 2층 건물로 연면적 150.46㎡이며, 1층 82.6㎡은 마을회관으로 설계되었으며, 경로당은 2층67.86㎡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여 남·여공동용으로 설계 시공되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커다란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사 회 복지과 (시정)	므로 시정요구함.	불편은 없으며 향후 경로당 신축시 충분한 여론 수렴토록 하겠음.	
사 회 복지과 (건의)	1.미등록 경로당 조사 및 운영비 지원 ○농소3동 천곡의 여자경로당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등록되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되면서도 미등록되어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실태 조사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함.	○경로당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음.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운영·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요건을 갖춘 경로당에 대하여 신고유도토록 지도하겠음.	추진중
환 경 위생과 (건의)	1.화장실 신축에 만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정자동 434-16번지 등 9개소에 9억9,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일반화장실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	○월드컵을 대비하여 사업비 9억9,250만원으로 아름다운 선진공중화장실 신축사업(9개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3개소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6개소가 현재 신축공사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위생과 (건의)	되고 있으므로 부실 공사없이 예산에 걸맞는 화장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중에 있음.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신축공사 중인 화장실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환 경 미화과 (시정)	1.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관리소홀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성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사진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카메라를 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에 지장	○현재사용중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는 2000년 12월말에 구입하여 운용중이며 운영방법은 단속차량 또는 단속원 자가차량에 탑재한 이동식 실내형으로 촬영장소의 확보곤란(야간에 촬영거리 유지에 따른 타 차량의 주차)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는 어려워 주민계도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이후에는 주택 및 전봇대 등 실외에 설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환 경 미화과 (시정)	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치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촬영거리확보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환 경 미화과 (건의)	1.환경미화원 지원 강화 ㅇ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객관적 자료에 의거 형평성 있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야광표시가 되어있는 근무복, 안전화 등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급하여 주고 복장도 통일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기 바람.	ㅇ환경미화원의 소요인력 판단결과에 의해 현재 배치중이나 현장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감독을 2002.1.14부로 자리교체를 하였으며 향후 도로청소차량 구입후 인력의 잉여인력은 부족한 부분에 충당계획이며, ㅇ근무복은 하복, 춘추복, 겨울외투, 조끼, 동모, 하모, 신발을 통일되게 지급완료 하였으며 근무복에는 야광표시가 되어 있음.	완 결
도 시 교통과 (시정)	1.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미설치 ㅇ약수초등학교 주변은	ㅇ2002. 2월초 설치 예정임.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에 의거 2000. 4. 24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호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시정 요구함.		
도 시 교통과 (건의)	1.시내버스 정류장 배차시간표 정비 및 버스베이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에 배차시간표를 정비하고 미설치된 곳은 설치하여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이나 주민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북구청 앞 버스 정류장과 같이 버스베이가 미설치 된 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설치토록 건의함.	○시내버스배차시간표 설치를 시의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2002. 6. 26)과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버스베이 설치 또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 추진할 것임.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도 시 교통과 (건의)	2.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발위주로 하지말고 계도 위주로 하기 바라며 관내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불법 주·정차단속은 탄력적으로 실시중이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002년부터 예산을 적립중임.	추진중
건설과 (시정)	1.자전거 주차장 관리 철저 ○자전거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나 이용이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이용이 저조한 일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철거하여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이전 설치하여 주기 바람.(자동차 출고앞, 화봉사거리, 신천사거리)	○이설시 당초 보관대 이용인의 민원발생 및 기초 지지대 노화 파손우려로 앙카고정이 어려워 이설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용자가 없다고 자전거 주차장을 이전할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해 주고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산업로확장공사로서 추가되고 또 계속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활성화되면 자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		전거주차장 설치를 예산에 반영 점차 확대 설치할 것이며, ○ 2002년에는 10대정도 매입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임.	
	2.성립전 예산집행 철저 ○ 건설과의 구 상안교 통로박스 설치 사업은 용도가 지정된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집행전인 2001. 3. 24일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결요구 하였으나 2001. 4. 4일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며, 성립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우선 조치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함이 원칙인데, 긴급	○ 구상안교 통로박스 설치 공사 완료(2001. 11. 2) ○ 1회추경 의회상정후 통로박스설치의 필요성여부 논란과 7호국도의 통로BOX설치요구 등으로 예산삭감, 여론에 따라 2001. 4. 9 구청장이 시장실에서 현재의 의회 예산삭감 분위기를 설명한 바 시장님께서 농소지역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설치공사로서 꼭 시설해야 한다라고 의견이 있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논의를 한 후 부구청장께서 의장실에 올라가서 여러의원들이 계신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대 응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	한 사유가 없음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차기 추경예산심의시까지 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함은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위반이므로 시정 요구함.	가운데 사업집행의 부득이한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성립전집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한 바 당시 의장실에서 반대 의사가 없었지만 그후 최종 삭감조치 되었으나 앞으로는 추경 성립전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유연성 있게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임.	
	3.과속방지턱 개선 ㅇ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면서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상 높이를 10㎝로 시공하여야 하나 달천교 앞 과속 방지턱은 높이가 그 이상이 되고 또한 방지턱 간격이 너무 좁아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시정 요구함.	ㅇ과속방지턱 개선을 위하여 달천마을을 방문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방지턱 철거 또는 조정 불가함. ㅇ주민들 의견은 달천농공단지 통행차량이 너무 많고 과속을 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더 높이고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임.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설과 (시정)	4.동천강생태공원 관리부실 ○동천강 생태공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징검다리가 유실되어 보기 흉하고 또한 현재 주민이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함으로 시정 요구함.	○동천의 하천정비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하천의 유수로 인한 하상의 변화 및 기존 구조물의 변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징검다리 침하 부분과 수로부분에 퇴적된 토사에 대하여는 자체인력(도로수로원)을 활용한 자체정비 및 보수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 결
건설과 (건의)	1.보안등 계약제 개선 ○보안등 전기료 계약제는 실제 전기사용량을 측정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 바람.	○현재 보안등 전기료는 계량기에 의하여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액제로서 전기요금을 지급하므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서는 등당 1개의 계량기(150,700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		를 설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많은 예산(320,000천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ㅇ기존 가로등처럼 15등 ~ 20등에 한개의 분전함(전기계량기)을 설치할 경우 모든 전기선을 지중화 해야 되므로 막대한 예산 및 현장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규 보안등 설치건에 대하여 기존 250W에서 100W로 설치하여 예산절감코자 함.	
	2.과적차량 단속 ㅇ과적차량 단속은 폭 20m이상 도로에서 실시하며 20m 이상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므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ㅇ조례상 구·군에 단속권이 위임되어 있고 인력부족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구청에서 단속 할 수 밖에 없지만, ㅇ타 광역시에서는 단속 및 제한차량허가를 광역시청 및 산하 도로관리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		사업소 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앞으로는 업무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3.도로보수 건의 ○쌍용아진아파트 단지내 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불편이 많고 특히 저녁에는 운전자들의 곡예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므로 기부채납이 안되었어도 보수토록 하고 국도7호 상행선에서 구청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가 낮아 우천시 물이 고여 안전사고 위험 및 통행에 불편함으로 보수를 건의함.	○2001. 12. 20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불량도로 덧씌우기 시행 완료함.	완 결
	4.신상안교 연결 평면교차로 신속추진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 지구간 연결 평면교차로가 최대한 빨리 건	○2001. 6. 7일 도로개설비 211,200천원을 시에 예치하였고, 2001. 11.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건설과 (건의)	설 될 수 있도록 건의함.	28일 도로개설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 도로과에 송부해 개설토록 요구한 상태로 있고, ㅇ7호국도(신상안교)~호계지구(구국도) 철도횡단 도로공사는 우리구의 신속 및 적극적 업무추진에 따라 철도청 부산시설관리사무소에서 건널목 이설 확장 설치에 대한 수탁공사 협의 요청이 2002. 1. 14일 도착하여 2002. 1. 16일 울산광역시에 협약토록 통보하였고 건널목 설치 수탁공사비 1,051,600천원을 부담하는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속히 광역시에 납부토록 협조요청함으로서, ㅇ철도횡단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정)	1.임도개설 철저 ○임도는 임산물 운반 및 산불 진화 등 산림관리에 필요한 도로임에도 농소2동에서 강동간 동대산 임도개설 등 매년 개설하는 임도가 일부 구간만 개설하여 임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시 전 구간이 개설되어 임도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토록 하고 임도 개설사업 계약을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 하지 말고 경쟁입찰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임도개설 계획은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 사업부터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동대산 일원의 임도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일반건설업체에서는 임도개설 및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임도개설 및 모든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정)		②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2.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산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아래 붙임)	
	2.가로수 인력관리 철저 ○가로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예산 및 인력이 매년 상이하고 불규칙하므로 총괄적인 현황 파악 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	○가로수 및 공원, 완충녹지작업단 인건비의 경우 - 1998년 : 155,382천원 - 1999년 : 257,077천원 - 2000년 : 201,804천원 - 2001년 : 282,614천원 으로 평균예산이 224,000천원정도 소요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시정)		되었으나, ○ 2002년부터는 도로폭 20M이상도로의 경우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관되고, ○ 나머지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관리, 완충녹지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음.	
	3.조림사업 철저 ○ 조림사업은 규정상 1ha당 3,000본 정도를 식재하도록 하여 식재 간격이 약 1.8m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무룡동 산80-4번지외 12필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하면서 무룡산 정상부근은 식재 간격이 약 30~40㎝정도로 조밀하게 하여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함.	○ 2001년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울산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무룡동 산98번지 정상부근 약 300㎡ 면적에 조밀한 간격으로 조림목이 일부 식재되었으나 2002년도 조림실시시 울산산림조합에 통보하여 조밀하게 식재한 묘목을 이식토록 하겠으며, 2002년 사업시행시 작업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농 림 수산과 (건의)	1.강동 신명 채석허가 관리 강화 ○울산 신항만 건설을 위하여 북구 신명동 산74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주)우성산업개발에 2000. 8. 22일 채석허가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만큼 현황파악 및 관련법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신명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2002년도에는 작업이 속개되도록 하겠으며, 민원 및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2001. 12. 3일자 (주)우성산업개발에 공사재개토록 촉구 공문 발송.	추진중
	2.주렴마을뒤 양계장 진입로 포장 건의 ○의회에서 농업경영인 사업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동 주렴마을뒤 양계장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계란 출하시 깨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함.	○2001년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으며, 2002년 동절기가 끝난 3월경에 공사 착공 예정	추진중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허가과 (시정)	1.예산잔액 과다 ○예산은 연중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시미관 일반운영비(201)의 경우 2001. 10. 31일 현재 12,270천원 중 2,98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무려 9,282천원으로 시기적으로 보아 연말 편중집행이 불가피 하거나 불용 가능성이 크므로 시정 요구함.	○도시미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 총예산액 : 12,270천원 • 집 행 액 : 11,629천원 • 집행잔액 : 641천원 • 집행액 내역 - 2001.10월말 현재 집행액 : 2,988천원 - 2001.11월집행액 : 380천원(마대 및 장갑 구입) - 2001. 12월 집행액 : 8,261천원(현수막 게시대 보수 : 3,049천원, 우편료 지급 : 2,326천원, 불법광고물철거장비 임차료 : 1,800천원, 각종서식인쇄 : 654천원, 마대구입 : 297천원, 필름현상 및 인화료 : 135천원) • 집행잔액내역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 250천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허가과 (시정)		- 광고물정비장비 임차료 : 270천원 - 기타 : 121천원 ○2002년부터 월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하여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음.	
보건소 (시정)	1.보건소 민원안내 ○현재 보건소가 임대 사용함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이용 여건이 열악하므로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 및 출입구에서 보건소까지 이동에 따른 불편이 큼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및 민원인 안내 등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	○보건소로 이용되고 있는 본 시설물은 17대의 법정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이용불편과 다수차량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차장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은 예산확보 등 어려움으로 추가 확보가 불가함. ○보건소 신축 이전하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이 따를 것이나 보건소 이면도로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보건시책과 관련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보건소 방	불 가

처리부서	시정·건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보건소 (시정)		문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보건소 (건의)	1.방역철저 ○ 요즈음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방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방역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동절기에 주로 하수구 및 복개천에 서식하는 모기의 성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3회 동절기 방역(2001.11~12월까지)을, 분무소독 24회, 살균소독 24회 실시하였으며, ○ 방역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역활동이 되도록 지속적 추진하겠음.	완 결

제6장

기타의정활동

- 제1절 구정질문
- 제2절 4분자유발언
-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사항
-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제5절 의정활동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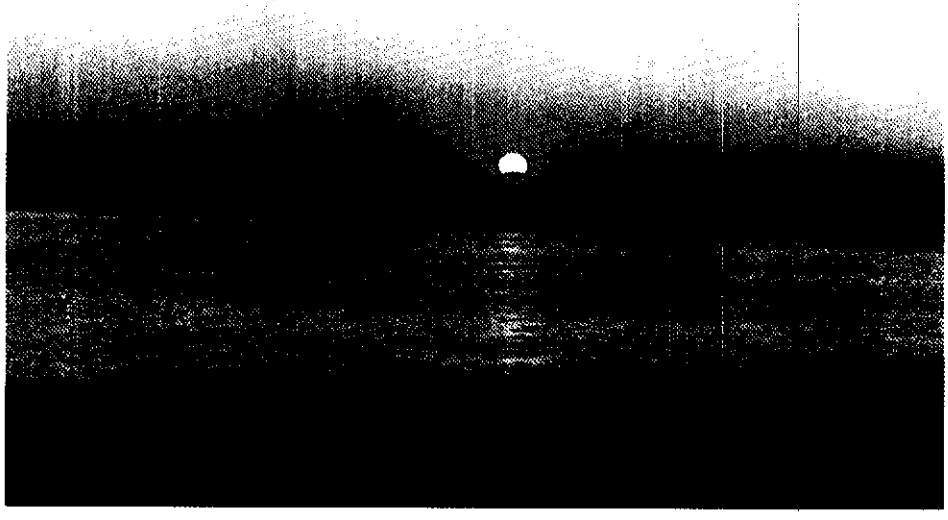

제1절 구정질문

1.구정질문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13건
2001.2.8	제41회임시회	박춘환의원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 민선자치 단체장의 역할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사무조례 ○성과상여금 지급 ○북구주민 울산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여부와 시장님 북구 공식적 방문회수 ○화장장 유치문제
2001.3.28	제42회임시회	박광식부의장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과 사후 운영관리 계획 및 구재정 운용의 문제점
2001.11.9	제48회임시회	김수헌의원	○갈밭들 개발계획 ○LPG충전소 허가
2001.11.27	제49회제2차 정례회	윤종오의원	○강동해맞이 축제 ○공공도서관 건립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2002.1.29	제51회임시회	류재건의원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2.서면질문현황

질문일시	답변일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5건
2001. 7.13	2001. 7.18	김수헌의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질의
2001. 8. 8	2001. 8.17	김수헌의원	○미곡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2001.11.15	2001.11.24	진한걸의장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간이상수도 업무

3.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지방자치제도 문제점 등 당면업무 추진상황

○질문의원 : 박춘환 의원 ○2001. 2. 8(제4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춘환의원 질문〉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초대민선 자치 단체장의 역할?	〈조승수구청장 답변〉 ○임명직 단체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을 의식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유권자인 주민의 눈을 의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임명직 단체장은 임기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계획수립하려고 할때 떠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야 하고, 장기적인 발전 의 비젼제시와 책임행정이라는 말조차 어려운 실정임. ○선출직 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기보장으로 소신행정은 물론 자신의 임기 동안 행정에 대한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할 시 곧 주민의 의사로 심판함. ○국회의원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자치 이후 일부문제점은 있지만 행정이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박춘환의원 질문〉 ○불합리한 자치구 구세에 관하여?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지방세 17개 세목중 광역시는 13개 세목, 구세는 4개 세목으로 자체세입이 열악한 실정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일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의 세목조정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999.10.1 : 세목조정 전국토론회 개최 ○2000.6.27 : 지방세세목조정추진협의회 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세목조정 용역 의뢰 ○2000.11.30 :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을 제출(자동차세→구세, 면허세→시세) ○현재 : 법률소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앞으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계속 구세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음.
〈박춘환의원 질문〉 ○현실을 무시한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광역시의 위임사무조례에 관하여?	〈김병규 도시건설국장 답변〉 ○울산광역시 건설교통국소관 위임사무 조례 중 제2조의 20m미만 도로를 자치구가 공사와 유지 관리토록 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99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구에서 2000년1월에 20m미만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주체를 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설 또한 시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현재까지 시의 조치결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춘환의원 질문〉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및 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지급지침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례 그리고 여러직원들의 의견 등은 참작하여 성과상여금제 도입취지에 부합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임.
〈박춘환의원 질문〉 ○과연 북구주민이 울산광역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과 북구청사 기공식을 제외하고 시장님이 북구에 공식적으로 몇 번 방문하였는지?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우리구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들에게는 종전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다른 구·군에 비하여 재정과 복지시설이 열악하여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으나 교통이 편리해졌고 재산가치가 상승해졌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많다고 봅니다. ○먼저 구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 확립과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주민만족도가 낮은 도로교통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두번째 맞이하는 강동해변 해맞이축제와 무룡문화예술원 운영을 확대하여 의식전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우리구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자동차 오토밸리조성 등을 위해 관심과 최선의 지원을 할 것으로 판단함.
〈박춘환의원 질문〉 ○화장장유치 업무추진에 관하여?	〈조승수구청장 답변〉 ○화장장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매장위주의 현행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우선이고, 냄새와 연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최첨단시설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갖춘 초현대식으로 주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화장수준과는 차원이 상이함. ○현대식 장묘시설 유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열악한 복구재정 여건으로 보아 복구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충분히 유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게 되었고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과 우리구의 장기발전계획, 주민건의를 바탕으로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 할 것임.

〈제41회임시회 박춘환의원 구정질문〉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과 사후 운영관리계획 및 구재정운용의 문제점

○질문의원 : 박광식 부의장　　○2001. 3. 28(제4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광식의원 질문〉 ○문화예술회관 운용관리에 따른 소요인력 문제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타 자치단체 문예회관은 구청사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별도의 직제를 필요로 하나, 우리구의 경우 청사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최소의 전문인력 외에 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통신, 전기, 냉·난방 시스템 시설운영 일부와 일반행정분야는 부서간 정원조정을 통해 기존 문화관광담당부서에서 운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박광식의원 질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문제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인건비가 연 2천만원, 일반운영비 약5천만원을 포함해 연간1억원미만의 예산으로 운영 가능판단, 대관료,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등 20%정도는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외 80%정도는 구의회의 협조를 통해 구비를 부담하여도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것으로 판단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광식의원 질문〉 ○시설및 효율적 이용문제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문제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다기능 다목적 시설로 조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교수,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현재 시설의 효율적 이용문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예회관의 건립 및 운영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추후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임.
〈박광식의원 질문〉 ○경영수지 예측내용에 관하여? (시설사용료 내지 대관료수입 : 운영 · 유지비)	〈조승수구청장 답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 분석 및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토록 함이 적절함.
〈박광식의원 질문〉 ○ 대안제시에 관하여?	〈조승수구청장 답변〉 ○"울산북구문예회관 건립을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구성문제는 의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의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계속비 예산승인에 따라 현재 기본 설계 현상공모 계획중에 있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해온 여러 제반사항 및 계속비 예산의 성격과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정서 등을 감안,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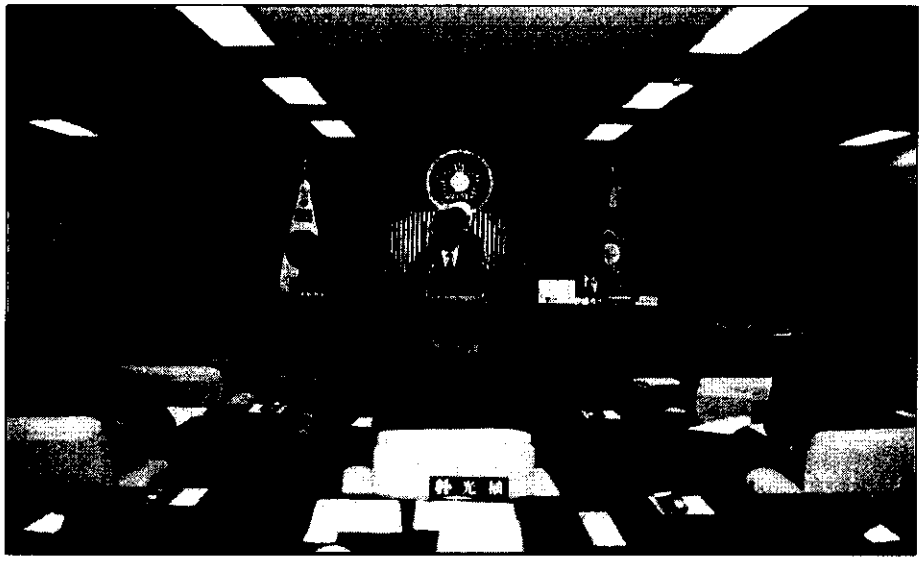

〈제42회임시회 박광식부의장 구정질문〉

갈밭들개발계획 및 LPG충전소 허가관련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2001. 11. 9(제4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전까지는 갈밭들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는데 반려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LPG충전소 건립신청에 따라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단기적으로는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농지로써 전용허가시 연접농지의 추가 전용으로 인한 침수대책 및 개발방향·대체시설(도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난개발의 우려와 개발에서 소외된 지주들의 반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예상되어 건축법령 등에는 위배사항이 없으나 농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경지정리 및 용수로가 정비된 우량 농지로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음.
〈김수헌의원 질문〉 ○도시계획재정비시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 된 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타당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갈밭들 횡단부분 도시계획 선형변경 요청사유는 구국도와 철도 및 7호국도의 지반고가 평지로서 단거리에서 적정 종단경사도가 되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성 문제점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린 적은 있는지?	않으므로 '98. 5. 2일 완료된 농소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개설 가능한 구간으로 '99. 6. 17일 선형변경 요청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고시대로 도로가 건설될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토지 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분담상태, 인근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기설도로망에 대한 유기적 연결과 적정한 형성,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등 도시계획의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도로의 교통영역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는 사항과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전문 용역업체의 전문가들과 울산광역시에서 계획 "안"을 입안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하여 주민 열람후 이의신청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99. 6. 17 도로선형변경 이의신청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으로 충분한 의사표명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 도시계획의 결정은 광역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임.
〈김수헌의원 질문〉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은 현재 현장여건으로 볼 때 고가도로 건설시 구배문제 등 도로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구국도 7호선 확장공사시 갈밭들 횡단부분이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 될시 타당성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도시계획도로의 갈밭들 횡단부분의 현장 여건상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 고가도로 개설시 구국도에서 철도까지의 연장이 50m이며 철도보다 구국도의 지반고가 높아 적정구배 6%가 형성되고 7호국도 측으로는 연장이 130m로 적정구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도로의 개설은 울산광역시소관으로 광역시에서 사업시행시 도로의 구조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설계변경 등)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임.
〈김수헌의원 질문〉 ○행정심판위원회가 2001년 4월 23일 본 건과 관련하여 결정보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갈밭들 개발계획수립 배경은 2001. 1. 6 갈밭들에 대하여 개별 개발시 난개발이 우려되어 사실상 개발보다는 난개발방지 계획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으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주민들이 진정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	며 이에 따라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제약관계로 어려움이 많아 부득불 토지 소유자의 개발 욕구를 충족하고 난개발도 방지할 목적으로 갈밭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임.
〈김수헌의원 질문〉 ○민원발생(수천명의 주민들이 LPG 충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밭들 개발계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기에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市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시 우리구 직원이 현장 안내하면서 여러가지 의견 교환시 본건 갈밭들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市관계공무원이 우리구 직원에게 참고코져 사본요구가 있어 전달된 것임.
〈김수헌의원 질문〉 ○갈밭들 LPG충전소 허가는 이미 지난 2000. 8. 8일자로 조건부사업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허가조건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농지전용 불가 예상으로 건축허가를 2차례나 자진철회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답변〉 ○LPG충전사업 허가건은 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사무로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를 별도로 득하도록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이 법률 본래의 의미로서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개시할 것과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하였고 3차 신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 된 바 당시에 사업허가 자체를 불허했으면 오늘날과 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건축허가 및 소방법, 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 허가하였음.
〈김수헌의원 질문〉 ○G.B구역내에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 G.B지역 내로 변경 허가해 줄 용의는?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G.B배치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면 LPG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치계획 기준은 개발 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의 당해도로 동일 방향별로 연장 5㎞이상으로 하고 도로의 신설, 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원주민)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0. 7. 1 G.B관련법 개정후 G.B내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국도 7호선은 동일방향별 연장5㎞(동편4.0㎞, 서편 4.6㎞)에 미치지 못하고 국도 31호선, 구도 2호선, 4호선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이나 배치계획에 부합하지 못하여 배치계획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갈밭들 LPG 충전소 피허가자는 지정당시 G.B 구역 거주자(원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최종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허가서 교부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타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스스로 두달간 착공을 보류하고 주민과 협의토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김수현의원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답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 가목(1)에 규정된 액화석유 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규정하여 별표 3의 시설기준에서 용기충전시설의 (1)안전거리 (라)호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갈밭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를 200m이상 지역으로 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할 용의는?	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 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 유지는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위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준으로 현재 갈밭들은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 하여 안전거리를 200m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불가능함.
〈김수헌의원 질문〉 ○북구청은 단순히 법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입법작용을 통하거나 상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련의 행정행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여 주민들 어느 누구나 법에 의거 공정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임.
〈김수헌의원 질문〉 ○도시계획재정비시 실시설계 선형변경 이의신청후 2차례 취소와 세번째 우량 농지로 허가 반려등 끼	〈김환조 허가과장 답변〉 ○속칭 갈밭들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원인으로 건축담당인 박규영이기 안하고 허가과장이 검토한 사항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워 맞추기로 판단,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갈밭들 개발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 담당자와 과장님의 상반된 답변이유?	○2001. 1. 6 신천동 가스충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내부방침의 기안이며 내용은 신청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로 전용불가하며 당시 시점으로는 농지전용 불가했으며, 갈밭들개발계획은 앞의 LPG충전소건립에 따른 농지전용의 대책인 장기적 도시계획 재정비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후속조치이며 법률적 구속은 없으나 지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며 전체부지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임.
〈김수헌의원 질문〉 ○G.B지역내 LPG충전소허가와 관련해서 서동은 G.B지역내 충전소 배치부분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구 G.B지역내 배치여부?	〈이태식 도시건설국장 답변〉 ○서동에서 까르푸간 G.B구역에 대해 우리구역은 약3.8㎞이며 중구와 걸쳐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준공된 도로가 아니고 개설중이며 G.B구역내 원주민이 거주해야 충전소 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농소2동 가스충전소 업자는 우리구역에 G.B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임.

강동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등 3개 분야

○질문의원 : 윤종오 의원　　○2001. 11. 27(제49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1.강동해맞이 축제에 관한 질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기에 2002년 해맞이 축제를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강동해변은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해변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단순히 여가를 잠시 즐기고 인근지역 관광의 경유코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음. ○울산광역시에서는 강동해변을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보고,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현대자동차의 산업관광과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해양·휴양지로 관광개발할 계획에 있음. ○금년도 강동해변 해맞이 축제를 보다 더 알차게 치루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해맞이 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가졌으며, 지난번 제2회 추경때 의결된 구비 3,000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만원과, 시비보조금, 주민부담 등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축제를 준비하고 있음. ○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윤종오의원 질문〉 ○북구도 강동지역의 미역, 젓갈, 생선회 등을 알리는 바다축제나 노동문화축제 개최나 농소 화훼단지의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의향은?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앞으로 해맞이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강동해변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여름바다축제와 농소화훼단지의 화훼홍보를 위한 꽃축제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윤종오의원 질문〉 2.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북구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농소권, 화봉·연암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권역별로 농소권은 약간 크게 나머지 지역은 현재 북구 도서실규모로 시설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으로 북구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소규모 추진 의향은?	〈정대경 총무국장 답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인구는 건물면적1,650㎡이상(499평), 열람석 350석 이상, 기본장서 3만권 이상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47억3,000만원으로 건물연면적 3,308㎡(1,000평), 열람석 1,000석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지난해 및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음. ○건립규모는 타구 도서관 규모와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1회 지원되는 사업비 60%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감안한 규모임.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1개소 건립한 다음, 권역별 문고는 필요시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됨.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하여, 북구공공도서실 운영은 물론 신축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문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문고자료 구입 및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3.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 ○환경미화원 정원외인력의 증원에 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나, 제도가 바뀌어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의 증원은 상식이라 판단되며, 정원외 인력증원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답변〉 ○우리구 청소업무현황중 환경미화원은 정원 48명으로 효문·송정·양정·염포의 단독주택 문전수거와 전지역 가로청소를 맡고 있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8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수거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범실시하고 있음. ○우리구의 현재 청소 실태는 농소·강동지역은 대행업체가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단독주택은 구청직영으로, 공동주택은 민간대행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상이하게 운영·관리됨으로써 원활한 청소 행정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하여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이럴 경우 현재보다 각 동에 2명씩 더 인력이 필요하며 최소 전체 1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자부 자제 12200-245(2001.4.3)호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력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청소업체의 유휴장비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권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자체 마련한 것임. ○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 업무만을 전담하고, 민간청소 업체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수거와 전 구역 문전수거업무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환경미화원과의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당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분간 현행대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ㅇ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력증원은 어려우며 행자부와 계속 협의하는 등 심도 있는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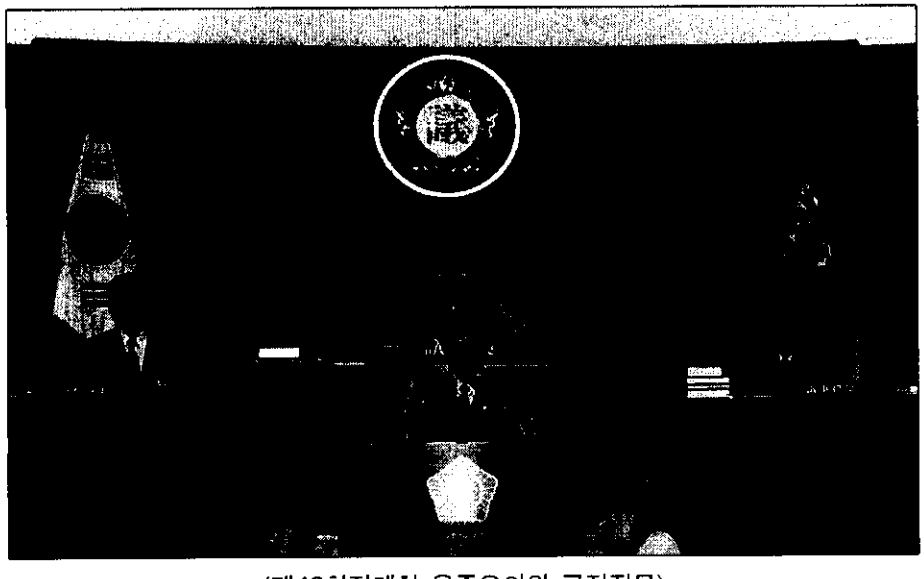

〈제49회정례회 윤종오의원 구정질문〉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와 관련 질문

○질문의원 : 류재건 의원　　○2002. 1. 29(제5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류재건의원 질문〉 ○효문공단은 지금 공장용지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업체도 기업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의 대책 및 추진실적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만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효문공단은 전체 면적의 87.6%가 공장 용지로 개발되어 188개 업체가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장용지 개발시 도로로 개설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으므로 입주를 기피하는 사실임. ○또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농지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용부담금, 산림훼손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절차 간소화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도 사실임. ○또한 구에서는 조속한 공장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효문국가공단 안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도 미착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음.
〈류재건의원 질문〉 ○효문공단은 어디서 주관을 하든 개발이 가시화되어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것 같은데 구청장의 선거공약으로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지난 '95년11월1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방향검토를 요청한 결과 효문공단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 구역으로 제조업의 신규입주는 불가능함을 통보 받았으나, 그 이후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는 2000년10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23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자동차 조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선관련 업종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한 바 있음. ○앞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경우 인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입주도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업의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류재건의원 질문〉 ○효문공단은 지정된지 30여년이 됐으나 현재로는 공단으로서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상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이 관내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구에는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 외에는 특별한 권한은 없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구청의 도시기반시설확보 요청에 힘입어,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 7월 30일부터 200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전체 예산 549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 개설공사를 국비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길이 1.4㎞, 폭20m(4차로)의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도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 103억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류재건의원 질문〉 ○30여년간 효문공단 주민들은 매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부해 왔으나 그 혜택은 전무하여 이제는 납부거부 및 반환요구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은?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답변〉 ○구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울산광역시에 요청 및 건의해서 효문공단 내에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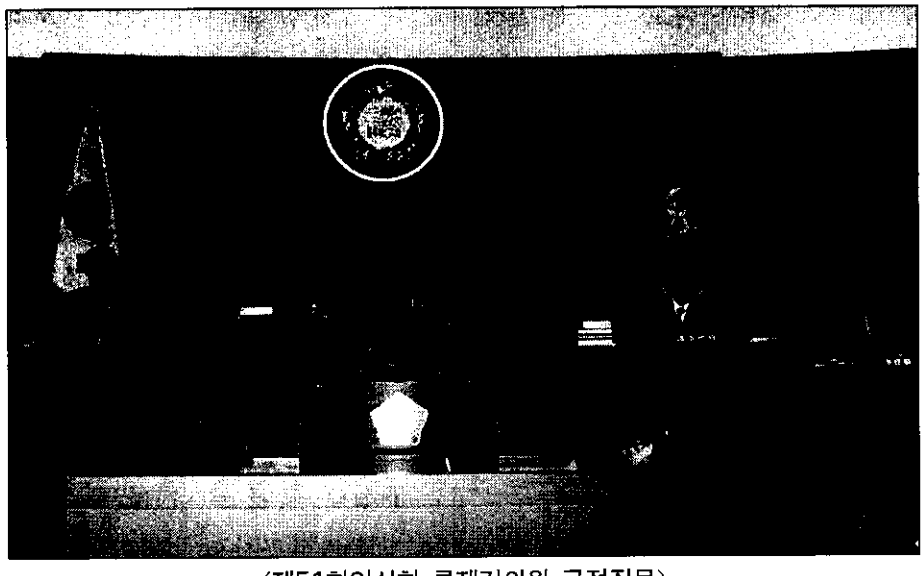

〈제51회임시회 류재건의원 구정질문〉

4.서면질문 및 답변요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질의(농소3동부지)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질문일시 : 2001. 7. 13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북구 상안동 380, 381번지의 2,163㎡에 대하여(농소3동사무소)설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신청지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로서 이는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녹지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 설치가 불가 ○다만, 별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완충녹지 해제)이 될 경우는 가능함.

농정분야(미곡재고량 증가)에 따른 대책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질문일시 : 2001. 8. 8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울산전체와 북구지역의 연간 쌀생산량은?	○울산전체 41,470톤 북구 6,538톤
○울산전체와 북구지역의 연간 쌀소비량은?	○울산전체 94,019톤 북구 11,457톤
○연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울산지역에 공급되는 량은?	○ 52,549톤
○현재 관련업체 및 농가보유 쌀 재고량은?	○농소 RPC쌀 재고량 : 2,362톤 (재고율52.9%) 농가보유 쌀 재고량 : 305톤
○현재 쌀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관련 업계에서는 2001년도 추곡수매 불능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매물량 보관대책은 RPC저장실 2,900톤, 농협창고 1,200톤, 집하장 600톤, 수매증가 공량 1,000톤, RPC부지내 야적 1,100톤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올해의 극심한 쌀판매 부진을 감안하여 농소농협은 미질 향상을 위하여 본격적인 수매계획 수립시 양질의 미곡 중심수매 계획이므로 수매량은 계획량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북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울산전체 또는 북구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량 확대를 위하여 관내기업체에 울산 쌀 이용토록 협조공문 발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지원대책은?	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공무원 1인 1포대 사주기 운동 전개와 언론 홍보 및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주관으로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쌀 소비캠페인을 울산현대백화점 등 주요지역에서 실시하고 2001. 8. 13 농소RPC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간 "울산 쌀 공급계약" 체결식을 가져 64톤의 쌀을 공급토록 하였으며 농협과 상호 쌀 판매를 협조하여 쌀 소비량 증가에 따른 홍보에 최선을 다함.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앞두고 쌀 생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우리구에는 지원계획하고 있으며 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 휴경 농지생산화를 위한 경운비 지원을 계획중이며, 농로포장과 양수장설치·관정개발 등에 투자하여 영농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농소농협의 생산계획인 찰맵쌀 혼합재배확대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도·농간 교류 확대 추진과 기업체·아파트등 협조요청 및 농협인터넷 홈페이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에 쌀소비를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는 동시 향후 주요 농경지에 대한 농로포장 등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쌀 생산농가 보호 대책에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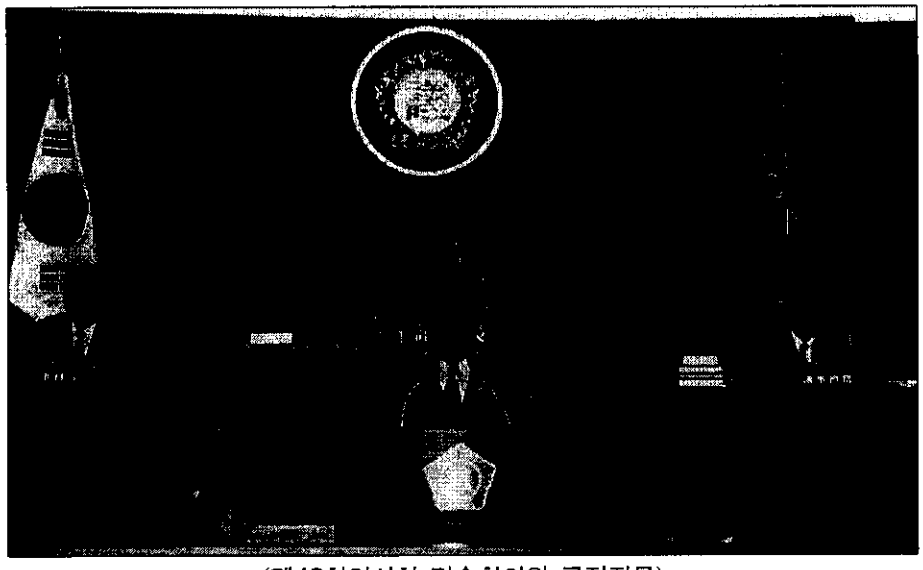

〈제48회임시회 김수헌의원 구정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외 2개분야

○질문의원 : 진한걸 의장　　○질문일시 : 2001. 11. 15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98년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북구관내에 중소기업 유치 추진실적은?	○달천농공단지조성용지에 중소기업체 입주 '99. 9월에 준공하고 83개업체가 정상가동중이며 조기분양위해 저렴한 분양가, 오폐수처리장, 사원후생복지 시설 등 조기완비 등 지원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단지내에 (주)황성테크를 비롯한 10개업체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매출액 1,350억원 수출액 450만달러 올려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전망함.
○앞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	○「1인1기업체 담당공무원 서비스제」실시「중소기업제품안내」책자 발간 및 2002년에는 우수중소기업제품 사이버전시관 홍보계획중이며, 2,520억원 기금을 확충하여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연리 4.5%~5.5% 저리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정홍보지나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경영여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건이 조성되도록 중간역할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은?	○미래형 전략산업인 오토밸리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본격 추진계획중이며 북구공업발전을 위해 매곡지방산업 단지를 조성 중에 있음.
○현대자동차의 미국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공장 설립은 산타페와 EF소나타가 큰 호응이 있어 중산차원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며, 현재로선 테러사태 이후 경기상황으로 상당히 유동적인 실정임. ○현자의 미현지 설립안이 수립되는 대로 북구관내 노동자의 실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관하여】 ○2001년 대비 2002년 보통교부금의 감소원인?	○재원부족액 산정시 기본자료가 되는 기준수요액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27개 측정항목 가운데서 지방위원수, 선거구수,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로 우리 구가 불리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정교부금관련 조례가 우리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	○시조례상 기준수요액 측정항목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타구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할 것임.
○단위비용 산정에 따른 자료와 명확한 근거와 산정기준?	○기준은 울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단위비용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불합리한 조례의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대책?	○앞으로도 타구와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하여】 ○간이상수도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간이상수도 관리인원이 1명이 증원되고 예산지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관계로 시 재정상 현재로써는 간이상수도 관리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생각됨.
○간이상수도 실태 및 연간 소요비용?	○2002년에 우선 긴급한 사업은 - 당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21,000천원, - 주렴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40,000천원 - 수질검사수수료 4,000천원 합계 65,000천원이 필요함.

제2절 4분자유발언

□ 윤종오의원

○ 발언일시 : 제4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2001. 3. 28)

○ 건　　명 :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환경미화원 처우 관련

○ 발언내용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조승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 모순으로 자체 재원의 턱없는 부족과 신설 구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등으로 예산의 균형적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진행될 박광식 부의장의 구민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과 제반 예측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내용은 내년만 되면 구민회관 건립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측면에서 우려가 바로 현실로 나타날 것이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예산승인 당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의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하나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이후 구민들에게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질 정책이라면 입안부터 과감히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곧이어 박광식 부의장님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 대다수 의원과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구청 사격팀의 예산을 5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와 5개 구·군이 다같이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구청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사업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개월의 예산때문에 선수들의 진로문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본의원 개인적 소신으로는 내년도 사격팀의 해체를 전제로 금년 말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여 승인해 주는 것이 선수들의 사기문제나 구청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년여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인원 충원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정해 해결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볼 때 새벽 3시, 4시경에 업무가 시작되고, 과속차량 틈에서 생명을 담보로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전방지휘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도 대부분 가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설 또한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차원의 예산은 구청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미약하기 짝이 없기에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문제점을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직원들의 경우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정원가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서를 광의로 해석하여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활동비, 콘도구입 등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은 노동절, 노동창립기념일 두행사를 합하여 고작 51만원만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위로와 관련해서도 환경미화원은 표창장 1개가 고작이고 구청직원은 표창패는 물론이고 배우자 표창패, 상품권, 위로여행, 기념배지, 공로연수 등 환경미화원과는 너무나도 형평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예산편성 자체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는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꾸준히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금일 저의 4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이 아닙니다만, 가능하다면 오늘 회기 중에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절 진정·건의서 처리사항

1. 처리현황

(2000. 7. 7 ~ 2002. 6. 30)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계	완 료	추진중	불 가
계	38	38	26		12
2000	8	8	4		4
2001	21	21	17		4
2002	9	9	5		4

2. 2000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8건		
○2000. 8. 17 ○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 건의	북구 중산동 1010-1 장이생외 주민일동	○중산동 약수제일, 경동, 약수한라, 효연 아파트 입구 진입도로가 없어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진입도로 개설 요망 함.	○2000.8.22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교통전문가에게 진·출입이 효과적으로 편리하도록 노선 분석·검토를 조회중에 있으며, 노선이 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사업 시행할 것임. ○집행부 이첩
○2000.8.17 ○소각로 가스저감장치 설치 건의	북구 염포동 신전 아파트 502 박종래	○각종 매스콤에 소각로 가스저감장치가 출품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바, 염포동 소각로에도 가스저감장치 설치 요망함.	○2000.8.29 ○현대중공업 환경사업부 울산소각시설의 가스저감장치 설치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발전협의회운영규칙에 따라 주민감시원이 주 2회 순찰 및 측정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서면 통보받아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음. ○집행부 이첩
○2000.8.18 ○일반 주거지역내 공장신축에 대한 진정	북구 연암동 441-11 김훈진외4	○연암동 441-1번지에 코오롱크로텍(주)에서 공장신축을 하는데 각종 공해가 우려되므로 건축허가 취소 요구함.	○2000.8.22 ○건축허가는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분제 공장으로 건축법조례 제25조 제8호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의 규정 에 의거 적법하게 되었음. ○공해 유출시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등 의법조치로 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집행부 이첩
○2000.8.23 ○호계시장 조례 정비시 조례 반영 사항 건의	중구 태화동 787-1 홍상태외 92	○호계동 호계시장 준공 후 상설시장 상인과 민속시장 상인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건의함.	○2000.8.28 ○북구공설시장조례의 개정 시 반영 여부는 어려운 사항임. ○호계시장 개장 후 시장 상인들과 회원들간의 문제점을 상호 협의 처리토록 하겠음. ○집행부 이첩
○2000.8.30 ○진입도로 원상복구 조치 및 진입로 상 건축	북구신천동 294-7 황윤태외 48	○신천동 324-14 제내마을 입구 도로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가	○2000.9.5 ○신천동 일원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모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허가 가능여부 질의		능한지 여부와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이전 등기하여 분쟁이 있으므로 도로를 구비로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함.	두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구에서는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건축허가가 재접수 되더라도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집행부 이첩
○2000.8.30 ○관로설치 시설분담금 조례개정 이전 요금 적용 건의	북구 천곡동 408 원동현대 아파트 자치회장 김수영	○천곡동 408 원동현대 아파트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254,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조례개정 이전 수준인 183,000원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함.	○2000.8.31 ○상수도 급수신청시 공사비 부담은 배수관 분기점에서 신청인 계량기실까지의 인입거리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를 신청인이 부담함.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종전 분담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로 배수관이기 매설되어 있어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님. ○ 상수도사업본부 이첩
○ 2000.11.6 ○ 농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탄원	북구 신천동 317-2 문화청솔아파트 102/108 윤병길외 106	○ 송정동 865-11번지외 277필지(울산공항 주변 농지) 농지소유주들이 재산상의 피해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구역 추가지정 검토 중단 요구함.	○ 2000.11.11 ○ 10.13 구동울산세무서에서 지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가하락에 따른 금전보상 등 의견을 수렴하여 10. 31 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서 제출시 주민 반대여론 및 의견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 집행부 이첩
○ 2000. 11. 14 ○ 북구 농림수산과를 개편 농·축산 전담과 신설건의	북구농촌지도자연합회장 곽진홍외7	○ 광역시 승격 후 우리 북구의 농업인구 및 기반은 그대로인데, 현재 농림수산과 인원은	○ 2000.11.23 ○ 농림수산과를 분리하여 농·축산분야를 전담하는 과설치는 현실적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턱없이 부족하므로 농·축산관계 전담 부서 신설 요망함.	으로 불가 양지 ○농정분야 담당직원 보충 검토중임. ○집행부 이첩

3. 2001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21건		
○2001.2.6 ○신천교 하부도로 공사 시행요청	북구 신천동 244 무지개 타운 101/101 정진욱외 489	○신천동 244소재 무지개 타운1,2차 아파트의 진입 도로가 구 7번국도와 접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경사가 심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있으므로 신천교 아래로 진입도로 개설 요망함.	○2001.3.3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이 필요로 함에 따라 예산확보하여 시행토록 할것임. ○집행부 이첩
○2001.2.17 ○농소3동 화장터 건립반대 진정	북구 상안동 773-13 쌍용아진 1,2,3,4	○농소3동 지역은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정착해 가고 있는 지역이며, 다른 편의시설	○2001.2.23 ○장묘문화개선, 북구 발전을 위해 장묘시설 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후보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이나 문화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화장장 건립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주거 및 생활권 보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함.	지 공모결과 10여곳이 신청되었고, 인센티브 규모, 후보지 등 차후 공개주민 의견수렴 계획임. ○현재 결정된 곳이 없으며,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 ○집행부 이첩
○2001.2.20 ○통·반장 위촉관련 질의 및 건의	북구 화봉동 동아청구아파트 208/207 김인제	○통·반장의 위촉시 주민다수가 참여하여 직선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여 동사무소에 통보,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동장이 임의지정 위촉시 주민다수의 의사에 의거 선출된 자가 있을 경우 정정가능 여부 질의	○2001.2.28 ○임기만료 시 주민의 자율적인 통·반장 위촉 가능토록 민원인에게 회시 및 통·반장 위·해촉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주민홍보토록 동장에게 지시함.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통장의 임기 및 통·반장의 위·해촉관련 주민지도 및 홍보요망함.	
○2001.3.16 ○농소3동 화장장 후보지 선정지 철회 주민연대 진정	북구 상안동 773-13 배두환외 4819	○농소3동 지역의 시례창좌, 새터 유력후보지는 출퇴근시 서동 - 농소간 도로가 주통로로 장의차와 함께 하여야 하며,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임. ○현재의 동구 화장장을 개보수하여 현대식 화장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유력후보지 발표 이후 아파트매매 및 전세계약 등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001.3.20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고 북구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현대식 장묘시설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시와 인센티브 규모 협의 공개, 주민의 견수렴 예정이며, 현재 아무런 결정사항은 없고 앞으로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1. 4. 3 ○신상안교 연결도로 및 통로박스 설치 건의	북구 호계동 383 이채우외6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조기 개설 및 구상안교 서쪽 3-29호선(서동-농소간) 국도 통행박스 설치에 따른 7호국도 잠수교와 연결되는 도로 통행박스 설치 건의 ○7호국도 통행박스 미설치시 3-29호선 도로의 통행박스 설치 반대	○2001.4.12 ○제4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본건예산 전액 삭감 ○신상안교 연결도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통로박스 설치문제는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겠음. ○집행부 이첩
○2001.5.4 ○북구화장장 결사 반대 진정	북구 상안동 358-1 쌍용아진 107/603 강석구외 5027	○북구에는 어느 곳도 화장장을 유치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공정성도 투명함도 기준도 없는 주민투표 일체 거부함.	○2001.5.10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할 것임. ○집행부 이첩
○2001.5.16 ○제2 동천초등학교 건립부지 재선정 요청	북구 상안동 773-13 쌍용아진	○현재 검토중인 상안동 산25번지 일대는 쌍용 아진3단지 앞의 절개지	○2001.5.18 ○강북교육청 소관사항이므로 강북교육청 기획관리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정상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당하므로 아파트 지면과 비슷한 위치의 장소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함.	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음.
○2001.6.1 ○7호국도 일방통행로 원상회복 진정	북구 화봉동 816-1 황양순외 912	○화봉사거리 - 진장사거리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의 부당함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조치로 농민 및 주민 피해가 심각하여 원상회복 진정	○2001.6.30 ○양방통행 환원시 화봉 사거리 신호주기 연장으로 교통체증 현상과 교차로 기하구조상 사고위험성 등 문제점으로 양방통행 환원은 곤란함. ○울산지방경찰청 이첩
○2001.6.1 ○장마철대비 구거 범람 방지대책 건의	북구 천곡동 408 원동현대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건물의 바닥면이 옆을 지나가는 동천강의 바닥면보다 낮게 자리잡고 있어 평소나 장마철에 구거	○2001.6.5 ○천곡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과 비교해 본 결과 우수기 하천(구거) 범람 침수피해 없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대표회의 김수영외 431	의 침수 위험이 많음. ○ 천곡하천을 연결하는 대형 천 신설과 아파트 외곽전체에 1.5m 이상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설치 건의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 이첩
○ 2001.6.8 ○ 집단주거지역의 가스충전소 허가 반대 진정	북구 신천동 430-1 박기서외 517	○ 가스충전소 예정지는 청구아파트와 직선거리 160m로(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현행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별도의 중장기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상업상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분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설치허가 반대함.	○ 2001.6.15 ○ 2.13 건축허가 접수 2.15 불허가처분 5.28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주장 인용,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취소는 불가한 실정임. ○ 민원인의 생활권, 재산권 및 주변농지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1.6.11 ○창평동 체육공원 건립공사에 관한 진정	북구 호계동 41B 6N 한나라당 북구지구당 위원장	○체육공원의 운동장 지반높이가 현저하게 높게 승고되어 일조권 및 통풍지장 우려, 침수위험 예상되며, 진입로개설 또한 마을진출입로와 사각으로 연결되어 인근 농소초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 예견되므로 안전대책 수립 요구함.	○2001.6.27 ○운동장 상단 법면 절토하여 시야 확보 방안 검토, 운동장 조성전 보다 침수위험은 감소 예상되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도폭 3m 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 예상됨. ○집행부 이첩
○2001.8.25 ○농소3동사무소 조속 건립 촉구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 위원장 이부걸	○현 동사무소 임대기간이 내년 5월 시한으로 되어있는 입장에서 오랜 주민숙원인 동사무소가 추천된 부지에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과 예산확보 등 행정적 조치 차질없이 추진 촉구	○2001.9.5 ○울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녹지) 결정(변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였음.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1.9.7 ○연암동 3통 경로당 신축 건의	북구 염포동 34 서진용외 36	○연암동 3통 경로당은 개인건물로 지금까지 년 20만원의 집세를 내고 사용하여 왔으나, 8월말까지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안으로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임. ○현재 독거중인 분들도 많아 경로당이 없어지면 갈곳이 없어지므로 12월 31일 이전에 신축 건의	○2001.9.15 ○연암동 3통 경로당은 완충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법에 의거 건물신축이 불가하며, 구재정상 신축예산 확보 불가하므로 자체 해결요망. ○집행부 이첩
○2001.9.11 ○어촌 자원조성사업비 지원 건의	북구 정자동 81 정자어촌계장 최용만외7	○강동동 전 어촌계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 어업여건에 자원마저 감소추세라 소득이 줄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함. ○울산광역시 다른 구군에서는 지원	○2001.9.14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되고 있는 어촌 지원조성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함.	
○2001. 9. 27 ○ 약수초등학교 앞 버스차고지 건립에 관한 건	울산광역시 교육감	○지난 해 9월부터 남진여객에서 버스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과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차고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바, 교통안전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약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과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청함.	○2001.10.9 ○건축허가 용도와 달리 시공되어 공사중지 명령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심판 청구하여 차후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 이첩
○2001.9.28 ○중산동 갓안부락 소방도로 개설	북구 중산동 421	○메아리학교와 메아리 복지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마	○2001.10.8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나 사업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진정	강성군외 38	을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에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마을내 화재나 기타사고 발생시 주민들과 학생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예상 및 대형사고 발생 우려되므로 소방도로 개설 요망함.	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구의 재정형편상 다소 사업이 늦어짐을 양해바람. ○집행부 이첩
○2001.10.29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탄원	중구 남외동 568-6 (주)영진환경 홍인표외 5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전량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되어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으로 운반 처리되기 때문에 매립장과는 관계가 전혀 없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2001.11.2 ○폐기물의 매립장이나 소각장 반입금지에 관한 규정은 울산광역시조례에서 규정하여야할 사항이며, 관련조례는 관계법령 및 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도록 할 것임.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조례대로 시행되어야하며, 특정사정이 있어 규제하더라도 사업자들의 사업축소, 폐업, 사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01.11.20 ○북구 농소지역 도서관및보건소 유치 건립 요청	북구 상안동 381-1 농소3동 동발전 협의회 문석주	○북구보건소 이용주민들은 대다수가 농소지역 주민들인 실정으로 볼때 북구청사 옆에 건립은 부당하며, 이용자가 많은 농소지역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함이 당연하며, 또한 농소지역은 신흥주거지역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학생수도 증가되고 있	○2001.11.28 ○북구보건소는 현 구청사 뒤편에 실시설계 중에 있어 위치변경은 불가함.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건립계획이 없음. ○도서관은 2002년부터 북부도서관 건립 추진 중이며 부지 지정된 곳은 없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으나 교육문화시설은 전무하므로 앞으로 들어설 교육문화센터나 도서관은 농소지역에 건립 요망함.	○아울러 농소2동 문화의 집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농소3동 문화의 집도 2002년 농소3동사무소 신축시 2층에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농소지역에 북구 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추진중임. ○집행부 이첩
○2001.12.3 ○입찰참가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 책정 건의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박해경	○전자입찰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원가감소 요인이 있는 만큼 입찰 참가신청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실비수준으로 결정해 주기 바람.	○2001.12.6 ○차후 조례개정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 ○집행부 이첩
○2001.12.5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생계비 관련 진정	북구 정자동 258 이덕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생계비 지급 중지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함.	○2001.12.15 ○이덕천은 2001. 12. 12 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 ○집행부 이첩
○2001.12.19 ○소방도로 개설 진정	북구 염포동 392-7 김성봉외 136	○염포동 397-2일원 소방도로 개설이 빨리 시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많으므로 조속히 해결바람.	○2001.12.24 ○각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바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음. ○집행부 이첩

4. 2002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계	9건		
○2002.1.4 ○성원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중재 신청 요청	북구 연암동 402-1 성원 임대아파트 입주민대표	○성원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민과 광토건설측의 입장차이로 채권단협의회 및 서울지방법원에 중	○2002.1.8 ○서울지방법원 및 국민은행, 한빛은행, 산은캐피탈,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의 5개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안동주외1	재 의뢰 요청함.	금융기관(채권단 협의회)에 중재 요청하였음.
○2002.2.4 ○특수학교 편입 부지 관련 진정	북구 화봉동 971-6 안인원외 11	○가칭 특수학교 부지(연암동 1120-2 일원) 편입토지 보상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재검토 요청함.	○2002.2.6 울산광역시교육청 이첩 ○보상가격은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재감정은 불가하며 보상협의에 적극 참여바람.
○2002.3.18 ○과속방지턱 및 인도블럭 설치 요청	북구 상안동 381-1 농소3동 발전협의회	○아남아파트 앞 인도에 경계석 설치로 보행자 보행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블록 설치하여 도로표면보다 인도를 높여 시공 바라며, ○천곡마을입구-아남아파트입구 도로가 경사이며 급커브가 많아 과속운행으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 요망함.	○2002.3.22 ○주차난 및 차량통행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아남, 대동아파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바람.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2.3.18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제도 개선	남구 달동 876-7 건설폐기물 울산광역시 지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맞게 입찰제도 개선 요구함.	○2002.3.22 ○차후 조례개정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임. ○집행부 이첩
○2002.3.29 ○건축허가관련 업무협조 요청	남구 달동 1248-5 근로복지 공단 울산지사	○건설공사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공하다가 산업 재해가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준공검사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의무화 및 조례제정 적극 반영바람.	○2002.4.3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의무제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건축조례는 시조례이므로 구조례 제정은 불가함. ○우리구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시 본내용 관련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고 있음.
○2002.4.8 ○재활용센터에 관한 질의	북구 연암동 370 LG진로 아파트	○동사무소 부지에 재활용센터가 오게 된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2002.4.16 ○공공용지라도 용도에 맞는 가설건축물은 가능하며 현재 재활용센터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입주자대표회장 심의길		이용도 및 호응은 좋으나 주변환경은 개선하도록 하겠음. ○집행부 이첩
○2002.4.10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 협조	북구 매곡동 422-2 농소2동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하영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와 관련여론 수렴 및 주민홍보가 부족하므로 적절한 해결방법 모색 요청함.	○2002.4.16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으며, 청소행정의 세분화 및 업무의 증가로 일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므로 구재정상 애로사항이 많은 바,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집행부 이첩
○2002.5.16 ○재활용교환판매장 이전 요구	북구 연암동 370 LG진로 아파트	○교통난의 초래 및 아파트 주변의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입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2002.5.23 ○재활용교환판매장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입주자대표회장 심의길	재활용교환판매장 부지가 본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전 요구함.	주변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임. ○집행부 이첩
○2002.6.25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방법 및 연기요청	북구 상안동 381-1 농소3동 발전협의회 문석주	○음식물쓰리기 처리수수료 부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연기 요청함.	○2002.6.29 ○부과 연기는 불가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 바람. ○집행부 이첩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가. 운영개요

○운영일시 : '98.10.12부터 연중 계속 실시

나. 운영방법

○기간 : 년중(월~금 매일실시)

○장소 : 의원실 내(의회민원상담실)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 근무시간 : 하절기 - 10 : 00~17 : 00, 동절기 - 10 : 00~16 : 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89-8111), FAX(052-219-7549)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홍보안내판설치 : 청사현관, 승강기내, 의사당복도에 홍보안내판설치

다. 운영실적

구분	운영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기 타	비고
계		339	326	13	
1998년도	1998.10.12 ~ 12. 31	46	42	4	
1999년도	1999. 1. 1 ~ 12. 31	115	110	5	
2000년도	2000. 1. 1 ~ 12. 31	60	59	1	
2001년도	2001. 1. 1 ~ 12. 31	100	97	3	
2002년도	2002. 1. 1 ~ 12. 31	18	18		

○운영반응 :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하므로써 대의기관의 기능수행을 충실히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며, 특히, 개소 1주년('99.10.12)을 맞아 지방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라. 기대효과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주민복리증진 기여
→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 조성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조기해결 도모

〈구민들과 민원상담〉

2. 울산시내버스요금 실사일정 조정건의

가. 개　　요 :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좌석버스 350원(35%) 일반버스 150원(27.3%) 요금인상 요구에 의거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 8월 4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위하여 33개 노선에 총 1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제조사실시계획에 대하여 실제조사 시기가 부당하여 의원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기조정을 건의함.

나. 주요내용

○첫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제조사는 주 이용자인 회사원과 학생이 휴가와 방학으로 실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8월에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울산광역시에서는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10까지 실제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2000년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나,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요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둘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제조사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월초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 함.

다. 건의일시 : 2000. 8. 4

라. 건 의 처 : 울산광역시

울산시내버스요금 실사에 대한 건의문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 8월 4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위하여 33개 노선에 총 13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운송수입금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시내버스운송 수입금 실제조사 시기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울산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인상을 요구하는 좌석버스 350원(35%) 일반버스 150원(27.3%) 요금인상은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의 경영적자 누적과 물가인상을 감안하더라도, 과다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버스요금 인상시 시민과 약속한 서비스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며

첫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제조사는 주 이용자인 회사원과 학생이 휴가와 방학으로 실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8월에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울산광역시에서는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제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2000년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나, 여름철에 실시하는 것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요금 인상을 정당화 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실제조사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월초에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울산광역시의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다.

2000년 8월 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3. 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조례 제정

가. 발의자 및 일자 : 윤종오의원 외 7명(2000. 11. 14)

나. 의결일시 : 2000. 11. 17(제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연수 전 사전평가를 거쳐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호화관광이라는 여론을 불식하기 위함.

라. 주요골자

○적용범위 : 의원 임기 중 국외연수

○위원회구성 :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

○기　　능 :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연수목적지의 적합성,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연수경비의 적절성 등 평가 및 자문

마.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6조

바. 제정효과

○투명성 있는 공무 국외연수 실시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언론사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었음.

4. 북구지역화장장 유치관련 업무추진상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2001. 1. 4 (목)오전	이전계획 발표(시장)	○울산대학대 동구캠퍼스 옥상에서 실시한 새해 해맞이행사 인사말에서 시장이 방어진 화장장 이전계획 발표	
2001. 1. 8 (화)	시·구·군 이전업무 협의	○구청장·군수 업무협의 자료 (공설화장장이전) - 입지선정 : 구·군 공모 - 부지면적 : 10,000평 이상 - 인센티브 : 100억원 - 타단체장 인센티브는 최소 200억~500억 요구 - 북구청장 시재정도 어려우니 100억+α요구	
2001. 1. 10 (수)12 : 00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장묘문화개선 및 연암동 이전 추진 설명 ○장묘문화개선 기본적 입장에는 찬성 (류재건의원 연암동이전 적극 반대)	식당
2001. 1. 11 (목)15 : 00	구청장기자 회견	○구청장 북구에 화장장 유치 기자회견 - 화장장 유치 공식 발표 - 연암동 후보지중 하나일뿐 - 인센티브는 100억+α 일시불 - 정치생명을 걸고 북구에 유치	구청장실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2001. 1.12 (금)14 : 00	제1차성명서 발표	○긴급 의원간담회 실시 -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대처방안 협의 - 의회 제1차성명서 발표 〔따로붙임〕 (요지 : 북구지역한정하지말고 시전역대상으로 주민공모,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문제해결)	의 회
2001. 1.15 (월)14 : 30	구청장기자 간담회	○구청장 기자 간담회(시와 업무조정내용) - 화장장이전 확정 3월에서 상반기안으로 조정 - 유치의사 2~3곳 비공식적으로 밝힘 - 연암동 대책위와 간담회 - 투명한 후보지 선정절차 이행 약속	구청장실
2001. 1. 18 (목)10 : 30	ubc 시사진단	○ubc 시사진단 녹화편집 - 출연(진한걸 북구의회의장, 조승수 북구청장, 이숙자 시보건복지국장, 이수원참여연대 대표) - 방송 : 1. 19(금) 21 : 55분	ubc 방송국
2001. 1. 19 (금)13 : 00	제40회 임시회개최	○제40회 임시회 개최(1일간) - 화장장관련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의 회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제2차 성명서발표	○제2차 성명서 발표(따로붙임) (요지 :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는 주민동의전제, 인센티브는 부산영락공원(1,162억원)이상)	
2001. 1. 30 ~2.2	장묘문화 시설지 실태 조사	*부산영락공원(부산시 금정구 선두구동소재) *광주영락공원(광주시 북구 효령동소재)	의 회
2001. 2. 2 (금)10 : 00	유언서명식 전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식 - 213명 공무원 자발적 참여 ○선진장묘시설 견학 - 8개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8층 회의실
2001. 2. 5 (월)11 : 00	간담회개최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 구청장 인센티브 설명 - 7건 743억 설명, 현금보조 200억 ○장묘문화개선 팜플랫 배포(전세대) ○동별 순회 설명회 개최(2.14일까지 동별40명) ○선진장묘시설 사진전시회(2.15일까지 시신관로비)	의 회 (의장실)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2001. 2. 8 (목)	구정질문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	○구정질문실시(제41회임시회제1차본회의, 박춘환의원, 화장장 유치에관하여) ○북구지역화장장유치관련주민투표실시촉구안의결 - 발의 : 류재건의원외5명 - 주요내용 : 20세이상주민투표, 시설규모등 조감도사 전제시등,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의 회
2001. 3. 10 (토)	건의공문 발송	○화장장관련 업무추진건의공문발송(의장→시장) - 북구지역화장장유치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업무는 광역시장 업무이므로 광역시장이 업무추진요망	의 회
2001. 3. 16	진정서접수	○농소3동 화장장후보지철회 주민연대 진정서 - 제출자 : 북구 상안동 773-13 배두환외4,819명 - 주요내용 : 농소3동 시례창좌, 새터의 후보지 철회요구.	의 회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 처리내용 : 후보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주민동의를 받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	
2001. 3. 19 (월)	인센티브 설명회개최	○화장장 유치 후보지와 인센티브 의회설명 - 후보지 11곳 발표 - 탄력적 인센티브 120억 합의 추가 30억요구 - 8개 주요현안사업 : 1천 70억 합의	의 회 (의장실)
2001. 4. 26 (목)	울산MBC 토론회개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관련 TV 토론회 녹화 - 반대토론자 : 김수헌의원, 이병우시의원 - 찬성토론자 : 조승수구청장, 전홍보시청과장 ○TV토론회 방송 (4. 29(일), 08 : 00~)	울산 MBC
2001. 5. 5	진정서접수	○북구지역화장장 결사반대진정서 - 제출자 : 북구 상안동 358-1 강석구외5,027명 - 주요내용 : 북구지역 화장장설치반대, 공정성 투명성 없는 주민투표 거부.	의 회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 처리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주민의사확인 반영.	
2001. 5. 11 ~5. 12	제43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 - 후보지접수현황11개소(시례동 새터마을, 시례동 창취골, 000동오장골, 000동박씨문중임야, 연암 동탄광촌, 중산동갓안마을, 화봉동용장골, 창평동기내마을, 어물동정자고개, 어물동산두골, 대안동신흥사위고원지대) - 인센티브규모 잠정합의 내용 : 120억원지원, 30억원 추가요구 - 주민투표실시계획 : 공고 13일간, 우편및비밀 투표실시, 만20세이상세대 세대당1표 - 투표결과조치 및 후보지결정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시 유치 ·유치희망동 2개동이상일 경우 입지여건에의거 선정 ○투표방법은 공정성확보를위해 직접투표방법 실시 촉구.	의 회
2001.5.28 (월)06 : 00~ 20 : 00	유치결정 주민투표 실시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후보지 6개동 주민투표실시	6개행정동 29개 투표소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 6개동 : 농소1,2,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 투표인수 : 29,310(세대단위) - 투 표 수 : 17,427(59.45%) - 찬 성 : 2,476(14.37%) - 반 대 : 14,746(85.63%) - 무 효 : 205 ○투표결과조치 : 반대가 85.63%로 북구지역 화장장 미유치결정	

북구지역 화장장 설치논란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최근 울산지역 최대의 화두인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북구지역의 입장과 달리 특정지역이 확정된 것 같이 각종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포되고, 북구의회 대다수 의원이 특정지역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다 음 -

1.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기존의 장묘문화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선진적 장묘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한다.

2. 북구의회가 특정지역 유치를 찬성한 것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지역으로 한정에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적지에 대한 주민공모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현대식 화장장의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충분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북구의회는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주민이 반대하는 유치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01. 1. 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일동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최근 울산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화장장 북구지역 유치에 따른 북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다 음 -

1.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기존의 장묘문화가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한다.

2. 만약 북구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주민동의를 위하여 신설 화장장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 및 최첨단 신설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의 규모, 설계된 조감도 등을 울산광역시가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신설화장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1,162억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2001. 1. 1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일동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촉구결의문

최근 울산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화장장 북구지역 유치와 관련 북구의회의 입장을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북구주민 대다수가 북구지역에 화장장 유치와 관련 혼란스러운 여론이 있어 북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힘으로써 12만 주민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북구주민 전체(20세이상)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는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와 관련 울산광역시는 화장장 시설규모와 조감도를 사전에 제시하여 주민들이 시설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 화장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의 금액 및 배분기준(북구전체사업, 유치부락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화장장 유치지역의 기본 입지로는 집단취락지구와 최소 이격거리를 명확히 하고 진입 전용도로 개설 유무를 밝혀야 한다.

○기타 화장장 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2001. 2. 8

울산광역시북구의회

5.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

가.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2. 9(윤종오의원 외 5명)

○ 심의 및 의결일자 : 2001. 2. 10(제41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기업은 물론 교육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기 실시한 바 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직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공직사회의 직무 특정상 상대평가가 난해하고 현 공직사회의 계급제 집단주의문화 영향으로 개인별 평가에 보수 차등지급은 시기 상조이며 사기저하 우려가 있음.

○ 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원래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공직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직사회 내부불신 및 전체사기 저하 우려

○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법 보완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률적 지급 건의

○ 건의처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관련건의(안)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 계획인 성과 상여금 제도는 원래 취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역기능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 공직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문제점

○민간기업은 물론 교육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기 실시한 바 있으나 문제점이 대두되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에 따른 지급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사회는 비계량적이고 직무의 특성상 상대평가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현 공직사회의 특성상 계급제의 집단주의 문화영향으로 개인별 평가에 따른 보수의 차등 지급은 익숙치 않음(시기상조)

□ 건 의

○현행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당초 도입배경인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역기능이 팽배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직원 상호간의 불신이 가중됨으로서 공직사회 전체적인 사기저하가 심히 우려됨으로

○본 제도는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확보하는 등 운영방법을 더욱 보완하여 시행하든지 아니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여 저하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함.

2001. 2. 10

울산광역시북구의회

6.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반대결의

공군 제8991부대 제5부대에서 양정동 산1번지 일원(효문동 어물동포함)에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울산광역시장에게 의견 조회를 하였음.

가. 발의자 및 일자 : 류재건의원 외 2명(2002. 4. 16)

나. 의결일시 : 2002. 4. 19(제52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다. 제안이유 : 양정동 산1번지 일원(효문, 어물동 포함)에 대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설정 업무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라. 주요내용

-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 행위임
- ○ 주민의 진·출입이 많은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주민반발 및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
- ○ 이 지역은 30여년 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시설 및 군 작전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

마. 조치사항

- ○ 국방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 이송

바. 조치결과

- ○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 군대부대에서 보호구역확장을 철회하였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 반대 결의문

최근 공군8991부대 5부대에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정동 산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군사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함으로 우리의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현재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사유재산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중규제를 하고자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 행위입니다.

2. 이 지역은 2개의 사찰과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등이 있어 주민 진·출입이 많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주민 출입 통제 및 각종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반발 및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 지역은 30여년 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시설 및 군 작전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정동 산1번지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13만 구민의 대표인 북구의회 전 의원은 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일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 업무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7.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 촉구 결의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4. 16(윤종오 외 2명)

○ 심의일자 : 2002. 4. 19(제52회 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2. 3. 23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을 선언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 당초 노사정위원회 대 타협 당시 합의사항을 어기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규정비가 미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 출범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며 합법적 노조인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에 ILO 권고와 OECD 가입국 기준에 맞게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함.

○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구속, 수배, 징계 등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개혁으로 제대로 안착되어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함.

3) 조치사항

○ 국회,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에 결의문이송.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결의문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서 출범을 하고 이에 따른 합법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특히 울산북구는 단체장이 공무원노동조합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에 행자부가 경고조치를 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 만큼 13만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하여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의 물꼬를 크게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보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현정부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추구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대세이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사회적 개혁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공직사회개혁의 기치를 내건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부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권남용을 배제시키는 등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내부투명행정과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결의와 요구 -

하나,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에 ILO 권고와 OECD 가입국 기준에 맞게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구속, 수배, 징계 등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개혁으로 제대로 안착되어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2. 4. 1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5절 의정활동일지

2000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 7(금) ~7.14(금) 〈8일간〉	의사당	제1차 정례회	○'99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2건 심의	
7. 8(토) 12 : 30	비원	간담회	○전·후반기의장단, 구청장, 북구출신 광역시 의원과 오찬 간담회	
7.11(화) 12 : 00	이조 한정식	간담회	○동장이상 간부 공무원과 의원 간담회	
7.12(수) 11 : 00	지방재정 회관 (서울)	현판식	○시·군·구 의장회 현판식 및 지방자치 세미나	
7.13(목) 10 : 30	현대자동차	간담회	○현대자동차(주) 초청방문 본관에서 현황설명청취 및 영빈관에서 부사장과 오찬 간담회	
7.14(금) 19 : 00	풍년횟집	간담회	○간부공무원과 만찬간담회	
7.19(수) 11 : 30	코리아나 호텔	기념식	○울산매일창간 9주년 기념식	
7.20(목) 14 : 00	농협 중앙회	발대식	○울산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21(금) 10 : 00	의장실	간담회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7.21(금) 12 : 00	이조 한정식	간담회	○북구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	
7.21(금) 14 : 00	상공 회의소	공청회	○개발관련 공청회	
7.21(금) 16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7.21(금) 17 : 00	현자구정문 앞	개소식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7.21(금) 18 : 00	지상 레스토랑	후원회	○참여자치연대후원 일일찻집	
7.25(화) 08 : 30	자동차 문화회관	기념식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7.25(화) 14 : 00	정자해변	발대식	○119해상구조구급대 발대식 (동부소방서)	
7.25(화) 18 : 00	일산 해수욕장	기념식	○현대중공업 노조창립 13주년 기념행사	
7.26(수) 13 : 00	강동현장	간담회 및 현장확인	○강동 채석허가와 관련 의원 간담회 및 현장확인	
7.27(목) 12 : 00	송 강 정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27(목) 16 : 00	경 실 련	공청회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관련 공청회	
7.28(금) 16 : 30	시의장실	간담회	○핵발전소반대관련 시·구·군 의장 회의	
7.29(토) 11 : 30	시의회동 3층 회의실	궐기 대회	○핵발전소반대 시·구·군 의원 궐기대회	
8. 1(화) 14 : 00	중구청 회의실	공청회	○울산공항항공기소음측정 관련 공청회(한국공항공단)	
8. 4(금) 11 : 00	의장실	간담회	○울산시내버스요금 실사일정 조정 건의와 관련 의원간담회	
8. 8(화) 10 : 30	중구 의장실	간담회	○중구 의장과 간담회	
8. 9(수) 10 : 00	남구 의장실	간담회	○남구 의장과 간담회	
8.11(금) 11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간담회	○민주평통위원과 대학생 통일 문제 간담회	
8.11(금) 19 : 00	태화강 고수부지	통일축제	○울산연합주관 통일축제	
8.13(일) 11 : 00	정자해변 (신명다리)	환경 캠페인 및 단합대회	○환경 캠페인 및 단합대회 (북구해병전우회 주관)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14(월) 10 : 30	동구 의장실	간담회	○동구 의장과 간담회	
8.14(월) 11 : 30	향리정 (언양)	간담회	○울주군 의장과 간담회	
8.15(화) 10 : 00	문화예술 회관	경축식	○제55회 광복절 경축행사	
8.15(화) 11 : 30	농소고교	체육대회	○제55회 광복절 기념 농소 1·2·3동 친선체육대회	
8.16(수) 10 : 30	한국 기독교회관	의정 세미나	○전국시·군·구의장회 세미나 (강사-박상천, 김기재 국회의원 심익섭, 강형기교수)	
8.17(목) 12 : 00	청하초밥	시·구 의원 간담회	○이병우 시의원 초청 제2선거구 시·구의원 간담회	
8.17(목) 14 : 00	의장실	의원 간담회	○청소업무 민간위탁, 강동 토석채취관련 의원간담회	
8.18(금) 12 : 30	화봉생고기	간담회	○윤두환 전의장 초청 북구의원, 직원 간담회	
8.18(금) 19 : 00	이조한정식	간담회	○현대자동차(주) 총무이사, 민방위과장 등과 간담회	
8.21(월) 18 : 00	정자해변	수련대회	○제3회 북구농업경영인 연합회 하계가족 전진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22(화) 19 : 00	이조한정식	간담회	○민주노총출신 단체장, 시·구의원 간담회	
8.22(화) 20 : 30	시청앞 농성현장	격려 방문	○민주노총 농성현장 격려 방문	
8.22(화) 21 : 00	북구청 8층 상황실	격려 방문	○2000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8.23(수) 11 : 00	송림 자연농원	수련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수련대회	
8.24(목) 11 : 30	의장실	인터뷰	○경상일보 박정훈 기자와 후반기 의정활동방향 등 인터뷰 (인터뷰 후 오찬)	
8.24(목) 16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8.25(금) 10 : 50	주전회마을	간담회	○구·군의회 의장 회의	
8.25(금) 15 : 50	태화호텔 커피숍	간담회	○이상헌 민주당 북구지구당 위원장과 면담	
8.28(월) 11 : 30	시의회 4층 기자실	기자회견	○3개대책위 핵발전소반대기자 회견 (서생면생존권수호위, 울산범시민대책위, 울산시·구·군 대책위)	
8.29(화) 06 : 30	시청광장	격려 방문	○핵발전소반대 명동성당농성 상경단 격려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30(수) 10 : 30	양정 체육공원	한마음 전진대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8.30(수) 14 : 00	의장실	여성 경제인 협의회 내방	○울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등 3명 내방 간담회	
8.31(목) 12 : 00	명동성당	격려 방문	○핵발전소 반대 명동성당 농성단 격려방문	
9. 1(금) 14 : 00	의장실	간담회	○농업기반공사 울산광역시 지사장(전수식)내방 간담회	
9. 1(금) 18 : 30	대청마루	간담회	○전 · 현직 의원 간담회	
9. 4(월) 09 : 30	의장실	간담회	○정석수 전의원 내방 간담회	
9. 4(월) ~9. 7(목) 〈4일간〉	의사당	제35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조례안 13건 심의	
9. 4(월) 12 : 00	이조한정식	간담회	○직장협의회 간부와 오찬 간담회	
9. 4(월) 13 : 50	의장실	간담회	○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선희 책임봉사자 내방	
9. 5(화) 10 : 00	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	보고회	○월드컵준비 시민 보고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 5(화) 14 : 00	효문동 사무소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전달 (효문동 민안추 주관)	
9. 7(목) 18 : 00	농소농협	출판 기념회	○농소농협 30년사 출판 기념회	
9. 8(금) 11 : 00	호계시장	준공식	○호계 공설시장 준공식 (행사후 다과회)	
9.18(월) 12 : 00	화봉 자연농장	간담회	○보건소직원 격려 및 오찬 간담회	
9.21(목) 10 : 00	상안마을	봉사활동	○벼세우기 대민지원 봉사활동	
9.22(금) 10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격려참관	○꽃꽂이 · 수예전시회 참관	
9.22(금) 11 : 00	울산고교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9.22(금) 14 : 00	문화 예술회관	APEC 청소년 기능캠프	○APEC 청소년기능캠프 개회식 (22개국 참석)	
9.23(토) 11 : 00	태화강 고수부지	다짐대회	○사회질서확립 다짐대회 (울산지방경찰청주관)	
9.26(화) 09 : 00	양정초교	운동회	○양정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26(화) 16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9.27(수) 18 : 00	현대중공업 외2	격려방문	○민노총 시·구의원, 단체장 지역 노조사업장 격려방문	
9.28(목) 11 : 30	주렴마을	현판식	○2000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및 표지석 제막식	
9.28(목) 14 : 00	양정 새마을금고	보고회	○염포·양정발전협의회 사업추진 보고회	
9.28(목) 16 : 00	양정동 사무소	보고회	○염포·양정 구정보고대회	
9.29(금) 10 : 00	시의회 3층회의실	지역회의	○민주평통 제9기 울산광역시 지역 회의	
9.29(금) 14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및 의장실	교류 의향서 교환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우호협력교류 의향서 교환 및 의장실 내방접견	
9.30(토) 11 : 00	염포횟집	간 담 회	○구·군 의장단 회의	
9.30(토) 16 : 00	살티농장 (상북)	단합대회	○자동차 부서단합대회	
10.2(월) 14 : 00	의장실	간담회	○북구 자원봉사센타소장 내방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4(수) 10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자치교실	○시민자치교실 의장 면담 (울산민주시민회 주관)	
10.5(목) 15 : 00	울산고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10.7(토) 10 : 00	종하체육관	시민 생활체육 대회	○제3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및 줄넘기대회	
10.8(일) 10 : 00	송정초교	개회식	○제1회 북구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	
10.9(월) 11 : 20	염포 새마을금고	입학식	○염포동 제1기 무룡탑 주부대학 입학식	
10.9(월) 14 : 00	양정동 사무소	심의회	○양정동 주민자치센타 설계심의	
10.9(월) 18 : 30	회원	간담회	○구·군의장단 시장과 면담	
10.10(화) ~10.12(목) 〈3일간〉	의사당	제36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조례안 7건 심의	
10.11(수) 12 : 00	태연재활원	자원봉사 활동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체험	
10.12(목) 14 : 00	북구청 소회의실	간 담 회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법 개선과 관련 의원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0.12(목) 19 : 00	소라횟집	간담회	○의원 및 직원 간담회	
10.15(일) 09 : 00	경주도토락 월드운동장	축구대회	○제4회 북구 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	
10.16(월) 08 : 00	창원사격장	견학방문	○창원사격장방문시찰(전국체전참가 북구사격선수단 격려)	
10.17(화) 08 : 00	양정경로당	위안잔치	○양정 경로위안잔치	
10.19(목) 13 : 30	의장실	간담회	○하재포 국정원조정관 내방	
10.19(목) 14 : 00	의장실	간담회	○여성유권자연맹 서정회 회장외 1명 내방	
10.21(토) 11 : 30	염포초교	위안잔치	○제4회 염포동 경로위안잔치	
10.21(토) 18 : 00	한국콘도 (경주)	연석회의	○전국사회단체출신 시·군·구 단체장 연석회의	
10.22(일) 10 : 00	농소고교	체육대회	○제9회 농소지구 아파트 생활체육연합회 체육대회	
10.25(수) 07 : 00	오치골	단합대회	○양정동 통정회 산행 격려	
10.26(목) 10 : 30	소회의실	간담회	○2000년 감사자료 요구서 협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26(목) 11 : 30	소회의실	설명회	○최근 대북현황 설명회(국정원주관) 및 오찬 간담회	
10.26(목) 12 : 00	아라가든	간담회	○민노당과 민노총 출신 시·군·구 의원 간담회	
10.28(토) 12 : 00	참치명가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10.29(일) 10 : 00	농소고교	체육대회	○제1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10.31(화) 11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심의회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10.31(화) 14 : 00	의장실	간담회	○감사자료 요구 확정 외 당면현안 사항 논의	
11. 2(목) 12 : 20	시의사당 1층로비	오찬행사	○김대중 대통령 울산방문 각급기관 단체장과 오찬	
11. 4(토) 17 : 00	율포횟집 (강동)	간담회	○전·현직의원 간담회	
11.13(월) ~11.18 (토) 〈6일간〉	의사당	제37회 임시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9건 심의	
11.16(목) 11 : 00	무룡경로당	준공식	○무룡경로당 준공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7(금) 10 : 30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 대회	○제3회 울산광역시 농업인 대회	
11.17(금) 14 : 00	염포동 사무소	개소식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1.19(일) ~11.22 (수) 〈4일간〉	금강산	통일안보 견학	○북구민주평통 통일안보견학	
11.23(목) 10 : 3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제2회 북구장애인 복지대회	
11.25(토) ~12.21 (목) 〈27일간〉	의사당	제2차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1.28(화) 13 : 30	KBS홀	여성 한마음 대회	○울산농협 여성한마음대회	
11.28(화) 15 : 00	울산고교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11.29(수) 10 : 00	염포 새마을금고	졸업식	○무룡탑 주부대학 1기생 졸업식	
11.30(목) 11 : 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자원 봉사자 대회	○2000 북구 자원봉사자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 1(금) 09 : 00	시의회 의원휴게실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기자회견	
12. 2(토) 09 : 30	강동· 염포동, 약수마을	현장확인	○강동·염포동 행정사무감사 및 약수마을진입 철도터널 현장확인	
12. 2(토) 17 : 00	농소 새마을금고	이· 취임식	○북구 해병전우회 6대회장 취임식 및 송년의 밤	
12. 3(일) 10 : 00	염포외 3곳	현장확인	○염포동 464-1 소방도로외 3곳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12. 5(화) 15 : 00	양정 새마을금고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2. 6(수) 14 : 00	구.동울산 세무서	개소식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2. 6(수) 17 : 00	지상 레스토랑	일일호프	○핵발전소 반대기금마련 일일호프	
12. 8(금) 11 : 30	송림 자연농원	위로연	○2000년 고령보훈가족 위로연	
12. 9(토) 11 : 30	매곡현대 아파트	개소식	○매곡현대아파트 문화공간 개소식	
12.12(화) 14 : 00	어린이보호 재단시지부	개소식	○아동보호 전문기관 개관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13(수) 13 : 30	시의회의원 휴게실	기자회견	○김창현 전동구청장, 김진영의원 민노당입당 기자회견	
12.16(토) 11 : 30	현대자동차	기념식	○월드카 개발완료 기념식	
12.18(월) 17 : 30	자동차 문화회관	전시회	○연말불우이웃돕기 작품 전시회 (자동차공조회 주관)	
12.19(화) 17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송년회	○직원 송년회	
12.20(수) 14 : 00	효문동 사무소	개소식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2.21(목) 18 : 00	포항횟집	간담회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와 간담회	
12.22(금) ~12.29 (금) 〈8일간〉	의사당	제3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의	
12.22(금) 12 : 00	재활용 선별장	송년회	○환경미화원 송년회	
12.22(금) 18 : 30	동해 숯불갈비	송년회	○자동차 부서 송년회	
12.26(화) 12 : 30	화봉생고기	간담회	○구·군의회 의장 회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27(수) 11 : 00	강동동 사무소	개소식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2.27(수) 18 : 00	재주도새끼 식당	송년회	○농소1,2동 자율방범대 정기 총회	
12.27(수) 19 : 00	황우촌	정기총회	○자연보호협의회 북구지회 정기총회	
12.28(목) 11 : 00	약수마을	준공식	○약수마을 진입로 준공식	
12.29(금) 13 : 30	양정동 사무소	개소식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2.29(금) 16 : 00	파로스 레스토랑	일일호프	○결식아동돕기 및 초등학교 도서 기증 일일호프	
12.29(금) 17 : 30	아라가든	송년회	○의회 송년회	
12.29(금) 19 : 00	로얄예식장	단결의 밤	○울산민족민주민중연대 단결의 밤	
12.31(일) 20 : 00	정자해변	해맞이 행사	○2001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2001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 3(수) 11 : 00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2001년도 신년 인사회	
1. 5(금) 11 : 00	화봉동 제1근린 공원	준공식	○화봉동 다목적구장 준공식	
1. 8(월) 11 : 30	의장실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협의 등과 관련 의원 간담회	
1. 9(화) 19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10(수) 12 : 00	비원	간담회	○화장장 연암동 이전 추진과 관련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1.10(수) 19 : 00	북구청 8층 회의실	신년 인사회	○2001년도 신년 인사회	
1.12(금) 14 : 00	의장실	간담회	○화장장 이전 추진과 관련 의원 간담회	
1.17(수) 11 : 00	보건환경 연구원	개소식	○보건환경연구원 개소식	
1.17(수) 18 : 00	현대호텔 2층 연회장	간담회	○지역인사와의 간담회	
1.18(목) 10 : 30	ubc방송국	토론회	○장묘문화개선 토론회 (ubc 시사진단 - 의장출연)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9(금) 〈1일간〉	의사당	제40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1.19(금) 16 : 30	화봉동 경남은행앞	캠페인	○설날전 상시제한행위 캠페인	
1.19(금) 16 : 30	명촌재활용 분리수거장	설맞이 위로방문	○명촌 재활용분리수거장 위로 방문	
1.20(토) 12 : 00	바다횟집 (서생)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1.30(화) ~2.2(금) 〈4일간〉	부산·광주 영락공원	실태조사	○장묘문화시설지 실태조사	
1.30(화) 14 : 00	덕양산업 지하강당	대의원 대회	○제14년차 덕양산업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1.30(화) 15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2. 2(금) 18 : 30	북구청 8층 회의실	정기총회	○북구참여자치연대정기총회	
2. 3(토) 12 : 00	아라가든	정기총회	○한국광고사업협회 울산지부 제2차 정기총회	
2. 5(월) 11 : 00	의장실	간담회	○화장장 북구유치와 관련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2. 5(월) 14 : 00	송정동 주민자치 센터	개소식	○북구 지역정보센터 개소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 6(화) 11 : 00	북구가정폭력상담소	개소식	○가정폭력상담소 이전 개소식	
2. 7(수) 16 : 00	산하해변	달집살이	○제3회 정월대보름 달집살이	
2. 8(목) ~2.15(목) 〈8일간〉	의사당	제41회 임시회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구정질문	
2. 8(목) 18 : 00	송강정	월례회	○구·군 의장단 회의	
2.13(화) 18 : 3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토론회	○지방자치위원회 토론회	
2.14(수) 10 : 00	화봉공고 운동장	졸업식	○화봉공고 졸업식	
2.15(목) 14 : 00	무룡신협 2층 회의실	정기총회	○제8차 무룡신협 정기총회	
2.15(목) 18 : 20	윤주한정식	간담회	○현대자동차 간부와의 간담회	
2.16(금) 10 : 00	양정초교 급식소	졸업식	○양정초등학교 졸업식	
2.17(토) 12 : 30	LG진로 아파트 열린 문화공간	개소식	○LG 진로아파트 열린문화공간 개소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19(월) 11 : 00	울산고교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2.20(화) 10 : 30	시의사당 3층 회의실	이·취임 식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2.21(수) 11 : 00	울산여성의 전화사무실	정기총회	○울산여성의 전화 제7차 정기총회	
2.21(수) 11 : 30	화봉동 청와회초밥	월례회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월례회	
2.21(수) 14 : 00	남운프라자 18층 연회장	개원식	○울산발전연구원 개소식	
2.21(수) 14 : 00	상공회의소	강연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강연회	
2.22(목) 11 : 00	서울 63빌딩	정기총회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2001년도 정기총회	
2.22(목) 11 : 30	양정동 사무소	정기총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제4차 정기총회	
2.23(금) 10 : 00	市신관 3층 회의실	이·취임 식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임원 이·취임식	
2.28(수) 19 : 00	울산대학교 해송홀	출범식	○민주주의민족통일연합 10기 출범식	
3. 1(목) 10 : 00	문화예술 회관	기념식	○3·1절 기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 3(토) 10 : 00	울산고교 운동장	입학식	○울산고교 입학식	
3. 3(토) 14 : 00	생활과학高 체육관	창립기념	○울산자치연대 창립 기념대회	
3. 5(월) 10 : 30	울산과학大 동부캠퍼스	준공식	○울산과학大 동부캠퍼스 준공식	
3. 5(월) 14 : 00	숲속 어린이집 (양정동)	개원식	○숲속어린이집 개원식	
3. 6(화) 15 : 00	현대自(주) 민주광장	이·취임 식	○현대自(주)노조 집행부 이·취임식	
3. 9(금) 11 : 00	의장실	간담회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의원 간담회	
3.10(토) 10 : 00	진장·명촌 구획정리 지구	개관식	○명촌 평창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식	
3.13(화) 12 : 00	염포횟집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3.15(목) 11 : 00	의장실	위촉식	○공무국외연수평가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3.16(금) 16 : 00	울산고교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3.19(월) 11 : 00	의장실	설명회	○화장장 유치 후보지와 인센티브 관련 설명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21(수) 14 : 3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3.21(수) 15 : 30	市신관 3층 회의실	경제 토론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설명회	
3.22(목) 10 : 00	학생체육관	개회식	○울산 지방기능경기대회	
3.22(목) 14 : 00	의장실	설명회	○추경가예산(안) 설명회	
3.23(금) 18 : 00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이·취임 식	○전교조 울산지부장 이·취임식	
3.24(토) 11 : 00	하이트타운 (반구동)	일일행사	○효정中 축구부 기금마련 일일행사	
3.24(토) 12 : 20	강동농협 2층 회의실	수여식	○유포장학회 제8차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	
3.28(수) ~4.4(수) 〈8일간〉	의사당	제42회 임시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3.29(목) 10 : 00	학생체육관	시상식	○울산 지방기능경기대회	
3.30(금) 14 : 00	상공회의소	심포지엄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심포지엄	
3.30(금) 18 : 00	민노투 사무실 (양정동)	개소식 현판식	○민노투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 3(화) 08 : 30	문화회관	대의원 대회	○현자노조 제14차 정기 대의원대회	
4. 5(목) 12 : 00	호봉사 (농소1동)	위령제	○6·25참전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4. 9(월) 12 : 00	이어도 (동구)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4.10(화) 11 : 30	청와초밥 (화봉동)	월례회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월례회	
4.12(목) 11 : 30	한국TRW (연암동)	대의원 대회	○한국TRW 노동조합 4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4.13(금) 14 : 00	구.동울산 세무서	개소식	○북구공공도서실 개소식	
4.15(일) 11 : 00	제일중학교	향우회	○재울영천 향우회	
4.15(일) 15 : 00	동천체육관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4.15(일) 19 : 00	현대자동차 사택잔디밭	방청	○주부가요열창 방청	
4.18(수) 10 : 30	염포 새마을 금고 회의실	입학식	○무룡탑 주부대학 입학식	
4.20(금) 14 : 30	동천체육관	기념식	○제2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20(금) 19 : 00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입학식	○제7기 청년학교 입학식	
4.21(토) 11 : 00	무룡정 (창평동)	대회식	○북구청장배 남녀초청 궁도대회	
4.21(토) 14 : 00	문수축구 경기장	발대식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 및 대륙간컵 자원봉사발대식	
4.23(월) 11 : 00	기박산성 (매곡동)	의병축제	○기박산성 의병축제	
4.25(수) 19 : 00	KBS홀	법요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4.26(목) -	울산MBC	토론회	○북구지역 화장장 유치관련 TV 토론회	
4.27(금) 14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4.28(토) 14 : 00	문수축구 경기장	개장식	○문수축구경기장 개장식	
4.29(일) 10 : 00	농소고교 운동장	족구대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4.29(일) 13 : 00	금강볼링 센타 (농소1동)	볼링대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5. 4(금) 11 : 00	무룡문화 예술원	기념식	○무룡문화예술원 개원 1주년 기념식	
5. 8(화) 10 : 00	태화강둔치	효축제	○울산MBC 孝축제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 9(수) 19 : 00	처용초밥	간담회	○북구청 출입기자 간담회	
5.10(목) 10 : 30	울산고교	운영 위원회	○울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5.10(목) 12 : 00	동해농장 (연암동)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5.11(금) ~5.12(토) 〈2일간〉	의사당	제43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5.13(일) 06 : 00	호계초교 운동장	달리기 대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	
5.15(화) 15 : 00	市신관 3층 회의실	정책 사랑방	○울산 장묘문화 개선과 지역사회 개발 방안	
5.16(수) 14 : 00	농협울산 본부 6층 회의실	심포지엄	○울산민주시민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5.17(목) 10 : 30	대영교회 (연암동)	위안잔치	○이웃어르신초청 위안잔치	
5.18(금) 14 : 00	상공회의소	창립총회	○울산인터넷기업협회 창립총회	
5.18(금) 18 : 30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	기념식	○P.T.P울산클럽 창립28주년 기념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5.20(일) 09 : 00	효정중학교 (양정동)	체육대회	○현대自 해병대전우회 춘계 체육대회	
5.22(화) ~5.23(수) 〈2일간〉	의사당	제44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3건 심의	
5.25(금) 10 : 00	태화강 고수부지	체육대회	○제3회 사랑나누기 친선축구대회	
5.26(토) 10 : 00	화봉시장 옆 소공원	바자회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	
5.26(토) 14 : 00	코리아나 호텔 2층	시상식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	
5.28(월) 06 : 00	29개 투표소	주민투표	○북구지역 화장장유치 후보지 6개 동 주민투표 실시	
5.30(수) 10 : 30	염포동 사무소	시연회	○윤종오의원 홈페이지 시연회	
5.30(수) 11 : 00	중구청	창립대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창립대회	
5.30(수) 11 : 30	문화회관 체육관	개회식	○효도큰잔치 한마당 개회식	
6. 1(금) 19 : 30	문수축구 경기장	축구대회	○대륙간컵 축구대회	
6. 5(화) 18 : 00	희락복국 (공업탑)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11(월) 11 : 30	북구보건소	개소식	○태연학교내 구강보건실 개소식	
6.11(월) 13 : 30	서부축구 축구장	축구대회	○현대호랑이 축구단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6.13(수) 10 : 30	농소2동 사무소	개소식	○농소2동 신청사 개소식	
6.15(금) 11 : 00	성안구획 정리 37B2N	준공식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 준공식	
6.15(금) 14 : 00	시 신관 3층 회의실	시상식	○제3회 경상보훈대상 시상식	
6.18(월) 14 : 00	농소농협 3층 회의실	시상식 및 연수교육	○2001년 효자·효부시상 및 도덕성 회복 위원 연수교육	
6.18(월) 19 : 00	목화예식장 7층	기념행사 및 이·취임식	○삼일라이온스클럽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	
6.19(화) 11 : 00	북구청 3층 회의실	조인식	○대학유치 협약조인식	
6.20(수) 10 : 00	동구 서부 축구장	체육대회	○육군 제7765부대 2대대 체육대회	
6.22(금) 10 : 00	구청광장	개청식	○북구청사 개청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25(월) 10 : 30	농소농협 3층 회의실	수료식	○농소농협 제11기 주부대학 수료식	
6.27(수) 〈1일간〉	의사당	제45회 임시회	○조례안 1건 심의	
6.28(목) 11 : 00	북구청 3층 회의실	위촉식 및 전체회의	○제2기 제2의건국 범추진 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	
6.29(금) 17 : 00	양정동 사무소 1층 회의실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7. 3(화) 11 : 00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증진대회	○제3회 북구장애인 복지증진대회	
7. 7(토) ~7.16(월) 〈10일간〉	의사당	제1차 정례회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등	
7. 8(일) 13 : 00	정자해변	노래자랑	○KBS 전국노래자랑 "울산시 북구편" 개최	
7.13(금) 14 : 00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토론회	○지방자치 10년 기념 토론회	
7.14(토) 10 : 00	남구청 광장	개청식	○남구청 제2청사 개청식	
7.15(일) 10 : 00	방어진 체육공원	개장식	○방어진 체육공원 개장식	
7.18(수) 11 : 00	코리아나 호텔	워크샵	○제2의 건국추진위원 워크샵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7.19(목) 11 : 00	코리아나 호텔	기념식	○울산매일 창간 10주년 기념행사	
7.21(토) 10 : 00	문화회관	창단식	○현대자동차 배드민턴 동호회 창단식	
7.26(목) -	중구청	투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7.27(금) 17 : 30	정자해변	페스티벌	○제2회 정자해변 재즈 페스티벌	
7.28(토) -	중구청	결선투표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	
7.30(월) 17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8. 1(수) 11 : 00	의장실	간담회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협의와 관련 의원 간담회	
8. 8(수) 11 : 00	농소2동 사무소 앞	준공식	○냉천마을회관 및 경로당 준공식	
8.13(월) 11 : 00	북구청 3층 회의실	조인식	○북구청과 현대자동차간의 쌀공급 조인식	
8.13(월) 18 : 00	산하해변	전진대회	○북구농업경영인 하계가족 전진대회	
8.15(수) 10 : 00	KBS홀	경축식	○제5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8.15(수) 10 : 40	현대차(주) 사택구장	축구대회	○제3회 양정동체육회장배 쟁탈 축구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8.15(수) 11 : 10	농소중학교	체육대회	○농소1동 통대항 동민단합 생활체육대회	
8.20(월) 18 : 00	배아성 연수원	전진대회	○제4회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8.23(목) 11 : 00	북구청 지하상황실	참관식	○2001을지연습 참관행사	
8.29(수) 17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8.31(금) 15 : 00	우가경로당	준공식	○우가경로당 준공식	
9. 1(토) 10 : 30	ubc 방송국	기념식	○ubc Green FM 개국 기념식	
9. 3(월) 12 : 00	청와대 영빈관	간담회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	
9. 4(화) 11 : 00	농소1동 사무소 2층	개소식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사무국 개소식	
9. 5(목) 10 : 00	태화교 밑 게이트볼 구장	게이트볼 대회	○제4회 연합회장기배 게이트볼 대회	
9. 5(목) 11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담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등과 관련 의원 간담회	
9. 7(금) 11 : 00	달천마을 회관 앞	준공식	○달천교 준공식	
9. 9(일) 09 : 00	문수구장	시민걷기 대회	○ubc울산방송 창사 4주년과 FM 라디오 개국기념 시민걷기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12(수) 10 : 30	염포삼거리	제막식	○3포 개항비 제막식	
9.12(수) 12 : 00	송강정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9.13(목) 11 : 00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모터쇼	○2001 부산국제모터쇼	
9.14(금) 09 : 40	경남은행 6층	심포지움	○반핵 울산 심포지움	
9.14(금) 11 : 00	문화회관	전진대회	○2001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9.14(금) 17 : 30	올림피아 호텔 3층	교류모임	○반핵 운동가와 지역인사간의 교류의 장	
9.15(토) ~9.25(화) 〈11일간〉	의사당	제47회 임시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6건 심의	
9.15(토) 14 : 00	천곡중학교 실내체육관	창단식 및 취임식	○북구 배구연합회 창단식 및 회장 취임식	
9. 21(금) 13 : 30	무등파크 호텔(광주)	세미나	○지방의회출범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세미나	
9. 23(일) 10 : 00	천곡중학교 실내체육관	체육대회	○제1회 국민생활체육 북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9. 23(일) 11 : 00	송정초교	체육대회	○제1회 국민생활체육 북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9. 25(화) 11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담회	○보건소 기본설계(안) 설명 등과 관련 의원 간담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9. 26(수) 11 : 00	현대차수출·입부두옆 야적장	제막식	○아산로 기념비 제막행사	
9. 27(목) 17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0. 6(토) 14 : 30	북구청 2층 회의실	창립대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창립대회	
10. 9(화) 14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기념식 및 강연회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3주년 기념식 및 생활환경 강연회	
10.10(수) 13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담회	○보건소 기본설계(안) 설명 등과 관련 의원 간담회	
10.10(수) 15 : 00	현대차 본관 잔디밭	이·취임식	○현대차 9·10대 임원 이·취임식	
10.11(목) 16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0.12(금) 18 : 00	태화강 둔치	기념식	○제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10.13(토) 15 : 00	동천체육관	개회식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10.13(토) 16 : 10	동천체육관	체육대회	○구·군 단체장 줄넘기	
10.14(일) 07 : 00	문수축구 경기장	달리기 대회	○울산사랑 한마음운동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10.16(화) 14 : 00	동구청 대강당	심포지움	○동구의회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0.17(수) 10 : 00	방어진 예비군 교육장	간담회	○2001년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및 간담회	
10.18(목) 11 : 00	양정경로당	위안잔치	○양정동 경로위안잔치	
10.18(목) 16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교류모임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Net-Work 자매결연 교류모임	
10.23(화) 11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담회	○행정사무감사관련 의원 간담회	
10.25(목) 10 : 30	동천체육관	벤처 플라자	○제3회 울산중소기업인대회 및 2001 전국벤처 플라자	
10.25(목) 16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0.27(토) 14 : 00	양정초교	창립총회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10.29(월) 10 : 30	윤종오의원 사무실	수료식	○염포동 노인한글교실 수료식	
10.30(화) 10 : 30	무룡문화 예술원	수련대회	○제2의건국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 및 위원 수련대회	
11. 1(목) 11 : 00	의장실	의회내방	○서산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 북구의회 내방	
11. 3(토) 10 : 30	공설운동장	축구대회	○제1회 경상일보사배 울산 한마음 축구대회	
11. 7(수) 10 : 00	지하민방위 교육장	영양축제	○북구청 신청사 준공기념 영양나라 축제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1. 9(금) ~11.13(화) 〈5일간〉	의사당	제48회 임시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1건 심의 등	
11.10(토) 11 : 00	농소운동장	현장확인	○농소운동장 조성공사 현장 확인	
11.16(금) 10 : 00	동천체육관	한마음 대회	○울산 농·도 한마음대회	
11.16(금) 13 : 30	현대호텔	세미나	○2001년도 학술세미나 (지방정부 경쟁력제고와 지역발전 전략)	
11.18(일) 10 : 0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제2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1.21(수) 19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창립대회	○통일산악회 창립대회	
11.22(목) 11 : 30	송림 자연농원	위로연	○2001년 북구 고령보훈 가족 위로연행사	
11.22(목) 14 : 00	북구청 서편주차장	전달식	○휴경농지 생산쌀 전달식	
11.22(목) 18 : 00	문화회관	정기공연	○제2회 북구풍물연합 정기공연	
11.26(월) ~12.20(화) 〈25일간〉	의사당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고
11.29(목) 17 : 3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2. 1(토) 11 : 30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자원 봉사자 대회	○2001 북구 자원봉사자대회	
12. 4(화) 19 : 00	문화예술회 관문화공간 쉼터	후원행사	○울산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12. 5(수) 10 : 00	문화회관옆 노동대학	졸업식	○무룡탑 주부대학 3기 졸업식	
12. 5(수) 19 : 00	문화회관 소연회실	정기총회	○현대자동차 수지침 봉사회 정기총회	
12. 6(목) 17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기념식	○북울산JC 창립 제11주년 기념식	
12. 6(목) 18 : 00	화이트타운	일일호프	○전공련 노조건설 특별기금 마련 일일호프	
12.20(목) 18 : 00	동광교회	만찬 기도회	○북구 기독교지도자협의회 만찬 기도회	
12.21(금) ~12.27(목) 〈7일간〉	의사당	제50회 임시회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 심의	
12.21(금) 17 : 00	북구청 식당	정기총회 및 송년회	○자연보호북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23(일) 10 : 30	문화회관 탁구장	창단식 및 탁구대회	○북구 탁구연합회 창단식 및 제1회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배 탁구대회	
12.27(목) 11 : 30	민주평통 북구사무실	전달식	○2001년도 불우세대 중·고교생 장학금 전달식	
12.28(금) 11 : 00	철도통행 박스입구	개통식	○북구청사출입 철도통행박스 머릿돌 제막식 및 준공축하 테이프 컷팅 행사	
12.28(금) 15 : 0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2002년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 3(목) 13 : 40	의 장 실	새해인사	○윤두환 국회의원 내방	
1. 3(목) 15 : 00	화봉동 제2 어린이공원	설명회 및 현장확인	○최신식 화장실 설치 설명회 및 현장확인(월드컵문화 시민운동 시협의회 주관)	
1. 8(화) 11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신년 인사회	○북구 관내 기관 및 자치 단체장 신년 인사회(북울산 JC 주관)	
1.10(목) 11 : 00	코리아나 호텔 2층	취임식	○울산매일신문사 정길남 대표이사 취임식	
1.10(목) 16 : 00	시청 3층 상황실	설명회	○평창건설 외자유치관련 GMH사 회장단 시방문	
1.16(수) 17 : 00	양정동 사무소	정기총회	○양정동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1.17(목) 14 : 30	경남은행 울산본부 6층	기념식 및 정기총회	○울산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1.18(금) 11 : 00	농소 미곡 종합처리장	단합대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북구협의회 단합대회	
1.18(금) 11 : 30	농소1동 사무소 2층	정기총회	○새마을 북구지회 2002년도 정기총회	
1.22(화) 12 : 40	동언횟집	간담회	○구의원과 구청 간부 간담회	
1.22(화) 15 : 40	종합건설 본부	간담회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 방문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1.22(화) 19 : 00	민주노동당 북구지구당	운영회의	○민주노동당 북구지구당 운영회의	
1.24(목) 10 : 30	농소농협 3층 회의실	정기총회	○농소농협 제33기 정기총회 (조합원수 1,658명)	
1.25(금) 15 : 3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1.25(금) 19 : 00	문화회관 2층 대강당	정기 연주회	○현대자동차 어머니합창단 정기 연주회	
1.26(토) 11 : 00	천곡중학교 실내체육관	이·취임 식	○농소3동 체육회 제3대 회장 이· 취임식(회장 박춘환 의원)	
1.28(월) 11 : 00	농소새마을 금고 2층	정기총회	○6.25참전 전우기념회 북구지회 정기총회	
1.28(월) 14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평가 보고회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보고회	
1.29(화) ~2. 6(수) 〈9일간〉	의사당	제51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 8건 심의	
1.29(화) 12 : 00	대청마루	간담회	○북구 출입기자와 간담회	
1.30(수) 19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대의원 대회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 임시 대의원대회	
1.31(목) 10 : 30	북구청 2층 회의실	의견청취	○도시기본계획변경(G.B)에 따른 의견청취	
2. 2(토) 13 : 00	동구 대송동 사무소 2층	개관식	○동구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2. 8(금) 10 : 5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간담회	○북구의원과 북구선관위 직원간의 간담회	
2. 8(금) 14 : 00	양정동관내 경로당 2개소	위로방문	○양정동 관내 경로당 위로방문	
2.14(목) 12 : 00	동구 주전 별장횟집	간담회	○구·군 의장단 회의	
2.20(수) 11 : 00	북구청 3층 회의실	정기총회	○북구 생체협 2002년도 정기총회	
2.22(금) 11 : 00	서울63빌딩 국제회의장	정기총회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회 2002년도 정기총회	
2.25(월) 17 : 30	롯데호텔 대연회장	기념식	○울산광역일보 창간 3주년 기념식	
3. 6(수) 11 : 00	의장실	간담회	○자치구 의원 정수조정 (강동동)에 따른 의원간담회	
3. 6(수) 13 : 00	의장실	간담회	○민주노동당 북구지구당 주관 간담회	
3. 6(수) 14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기자회견	○자치구 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북구 의원 기자회견	
3. 9(토) 13 : 00	문화회관	정기총회	○재울 영천향우회 현대차 지회 정기총회	
3.14(목) 19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대의원 대회	○2002년도 민노당 시지부 조직개편 및 대의원 대회	
3.19(화) 11 : 30	이조한정식	준비모임	○울산 시립·국립대학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3.22(금) 10 : 30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취임식 및 정기총회	○한국노총 시지부 제17대 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	
3.23(토) 10 : 30	양정동 사무소	월례회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3.25(월) 10 : 30	농소새마을 금고 2층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2002년도 정기총회	
3.25(월) 14 : 30	근로자 복지공단	간담회	○근로자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방문	
3.27(수) 11 : 00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원식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개원식	
3.31(일) 10 : 00	농소운동장	축구대회	○농소운동장 개장기념 조기 클럽 대항 축구대회	
4. 2(화) 18 : 00	북구지구당	간담회	○북구지구당 운영위원회	
4. 3(수) 18 : 00	문화회관 2층 소강당	정기총회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 계승 사업회 제6차 정기총회	
4. 4(목) 10 : 00	매곡동 (신흥사입구)	캠페인	○공명선거 꽃동산 조성	
4. 6(토) 11 : 00	중산동 (약수마을)	기원제	○2002년도 배 풍년농사 기원제	
4. 6(토) 12 : 00	호봉사내 충효탑앞	위령제	○6.25 참전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4. 8(월) 18 : 00	문화회관 2층 대강당	선발대회	○현대자동차 보디빌딩 선발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 8(월) 18 : 00	지구당 사무실	간담회	○북구지구당 운영위원회	
4. 9(화) 18 : 30	근로복지 회관 1층 공연장	대의원 대회	○민노총 공직선거 출마자 선정 임시 대의원 대회	
4.10(수) 10 : 00	북구청사 앞	기공식	○북구보건소 및 문예회관 건립 기공식	
4.11(목) ~4.19 (금) 〈9일간〉	의사당	제52회 임시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11건 심의	
4.12(금) 08 : 30	문화회관 2층	대의원 대회	○현자노조 제66차 임시대의원 대회	
4.12(금) 12 : 00	구 농소 보건지소	개소식	○자원봉사센터 부설 나눔의 집 개소식	
4.12(금) 17 : 30	효문동 사무소 2층	출범총회	○세종공업 민주노동자회 출범총회	
4.14(일) 10 : 00	천곡중학교 실내체육관	배구대회	○제1회 생체협 회장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4.14(일) 14 : 30	금강볼링장	볼링대회	○제3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4.15(월) 18 : 00	새마을APT 관리사무소	간담 회	○새마을APT 주민대표 간담회	
4.16(화) 08 : 00	문화회관 2층	대의원 대회	○현대자동차 제67차 임시 대의원 대회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4.23(화) 10 : 00	동대산 기박산성	의병축제	○기박산성 의병축제	
4.25(목) 11 : 00	의장실	위촉식	○2001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장 전달식	
4.27(토) 10 : 30	농소운동장	체육대회	○현대자동차 시작팀 체육대회	
4.28(일) 11 : 30	제일중학교	체육대회	○재울 영천 향우회 체육대회	
4.29(월) 15 : 00	농협울산 본부 5층	개소식	○시·국립대학 설립 범시민 추진단 개소식	
5.10(금) 14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설명회	○입후보 안내 및 선거법 설명회	
5.12(일) 10 : 00	농소고교	체육대회	○농소3동 한마음 체육대회	
5.12(일) 11 : 00	신전체육 공원	화합잔치	○신전노인회 화합잔치	
5.13(월) 19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결의대회	○북구지구당 선대위 발족 및 당원 결의대회	
5.16(목) 19 : 00	원 지 원	간담회	○새마을APT 재건축조합 위원과 간담회	
5.17(금) 14 : 00	북구청 2층 회의실	결의대회	○2002년도 월드컵 붐조성 결의대회	
6.19(수) 11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상견례	○제3대 북구의회 당선의원 상견례	

일 시	장 소	행사명	내 용	비고
6.24(월) 12 : 00	해송복집	간 담 회	○의원과 구청장 오찬 간담회	
6.26(수) 11 : 00	약수마을회관 2층	준 공 식	○약수마을회관 준공식	
6.26(수) 11 : 00	북구의회 민원접견실	연 찬 회	○제3대 북구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부 록

- 역대 의장단 명단
- 초대의원 명단
- 초대의원 사진
- 제2대의원 명단
-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 역대 구청장 명단
-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역대 전문위원 명단
- [illegible] 명단
- 사무과직원 명단
- 지방선거현황(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 [illegible]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 명단

구 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2000.7.7 ~2002.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2000.2.21 ~2000.7.6	
제2대 후반기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2000.7.7 ~2002.6.30	

초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운영·건설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운영·내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운영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운영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 소 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엄 포 동

조 승 수

제2대의원 명단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 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1 ~2000.2.21	전반기
2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 및 의장(보궐)
3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부의장(보궐) 및 후반기 의장
4	부의장	강동동	박광식	1955.11.15	1998.7.1 ~2002.6.30	
5	의 원	농소1동	김수헌	1957.11.15	1998.7.1 ~2002.6.30	전반기 운영위원장
6	〃	농소2동	강혁진	1961.10. 1	1998.7.1 ~2002.6.30	
7	〃	효문동	류재건	1961. 2. 5	1998.7.1 ~2002.6.30	
8	〃	송정동	김진영	1964.10.11	2000.6.8 ~2002.6.30	보궐선거 당선
9	〃	염포동	윤종오	1963. 8.14	1998.7.1 ~2002.6.30	후반기 운영위원장

북구지역 전직의원 명단

연번	직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의원	울산시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5.7.1 ~1997.7.14	제5대 경남도의회의원 운영·내무위원
2	의장	울주군 농소읍	한성두	1941. 3.31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의원	울주군 강동면	김성보	1937. 4.4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군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원
4	〃	중 구 송정동	윤두환	1955. 3.5	1991.4.15 ~1997.7.14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교육사회위원
5	〃	중 구 진장동	김두헌	1936. 4.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원
6	〃	중 구 효문동	한기찬	1938. 4.3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건설위원
7	운 영 위원장	중 구 양정동	류재락	1945. 8.15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
8	의원	중 구 염포동	김춘길	1942. 10.10	1991.4.15 ~1995.6.30	초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
9	〃	중 구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운영·건설위원
10	내 무 위원장	중 구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내무위원장
11	의 원	중 구 양정동	진한걸	1953. 11.15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도시경제위간사·운영위원
12	〃	중 구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5.7.1 ~1997.7.14	제2대 울산시의회의원 환경수도위간사·운영위원

역대 구청장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직무대행	황 성 환	1948. 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 승 수	1963. 1.22	1998.7.1 ~ 2002.6.30	
3	민선제2대	이 상 범	1957. 4.15	2002.7.1 ~ 현 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사무 국장	지 방 서 기 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1998.10.1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 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 2001.1.15	〃
3	〃	〃	최종식	1952.10.20	2001.1.16 ~ 현 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 2001.1.15	
4	〃	〃	김찬수	1955. 9.28	2001.1.16 ~ 현 재	

구청 간부공무원 명단

(재임기간 : 2000.7.1~2002.6.30)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구 청 장	정 무 직	조승수	1998.7.1~2002.6.30	
부구청장	지방서기관	이수석	1998.9.26~2000.7.4	
	〃	서관규	2000.7.5~2001.1.8	
	〃	강한원	2001.1.9~현재	
총무국장	지방서기관	김종우	2000.4.1~2000.7.4	
	〃	강종철	2000.7.5~2001.1.8	
	〃	정대경	2001.1.9~현재	
경제사회국장	지방서기관	강종철	2000.4.1~2000.7.4	
	〃	정대경	2000.7.5~2001.1.8	
	〃	노맹백	2001.1.9~현재	
도시개발국장	지방시설서기관	김병규	2000.4.1~2000.12.31	2001.1.1 명칭변경
도시건설국장	〃	김병규	2001.1.1~2001.3.26	〃
	〃	이태식	2001.3.27~2002.1.7	
	지방농업서기관	심두근	2002.1.8~현재	
보건소장	지방의무서기관	박혜경	1997.7.15~현재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열	2000.4.1~2000.7.9	
	〃	황재영	2000.7.10~2001.7.1	
	〃	백용한	2001.7.2~2002.1.30	
	〃	정기원	2002.1.31~현재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석희	1998.10.1~2000.7.9	
	〃	김종열	2000.7.10~2001.1.11	
	〃	신원수	2001.1.16~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오	1999.10.1~2001.7.1	
	〃	이차호	2001.7.2~현재	
지방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순	1999.10.1~현재	
민원봉사과장	지방지적사무관	김실근	2000.4.1~현재	
주민자치센터 운 영 단	지방행정사무관	김지호	2000.9.9~2001.1.15	
	〃	이채석	2001.1.16~2001.9.30	2001.9.30 직제폐지
문화공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채석	2001.10.1~2002.1.17	2001.10.1 직제신설
	〃	송태호	2002.1.18~현재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원희	1999.10.1~2001.1.15	
	〃	백용한	2001.1.16~2001.7.1	
	〃	박상우	2001.7.2~현재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종식	1999.10.1~2001.1.15	
	〃	김지호	2001.1.16~2001.7.1	
	〃	최효원	2001.7.2~2002.1.17	
	〃	박원희	2002.1.18~현재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동훈	1999.10.1~현재	
환경미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옥	1999.10.1~2001.1.15	
	〃	이상찬	2001.1.16~현재	
도시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재영	1999.2.2~2000.7.9	
	〃	조계현	2000.7.10~2001.1.15	
	〃	정기원	2001.1.16~2002.1.30	
	〃	서강수	2002.1.31~현재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임용균	2000.4.1~2002.1.17	
	〃	김종배	2002.1.18~현재	
농림수산과장	지방임업사무관	서광문	1998.12.1~2001.1.8	
	지방농업사무관	서연석	2001.1.16~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건축과장	지방건축사무관	김환조	1999.1.21~2000.12.31	2001. 1.1 명칭변경
허가과장	지방건축사무관	김환조	2001.1.1~2002.1.17	〃
	〃	**박기봉**	**2002.1.18~현재**	
농소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찬수	1999.10.1~2001.1.15	
	〃	박상우	2001.1.16~2001.7.1	
	〃	**조충래**	**2001.7.2~현재**	
농소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찬	1999.10.1~2001.1.15	
	〃	김덕룡	2001.1.16~2002.1.17	
	〃	**최효원**	**2002.1.18~현재**	
농소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원수	1999.10.1~2001.1.15	
	〃	이차호	2001.1.16~2001.7.1	
	〃	**김지호**	**2001.7.2~현재**	
강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우	1999.2.2~2001.1.15	
	〃	조충래	2001.1.16~2001.7.1	
	〃	**성낙화**	**2001.7.2~현재**	
효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차호	1999.10.1~2001.1.15	
	〃	**조계현**	**2001.1.16~현재**	
송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채석	1999.2.2~2001.1.15	
	〃	성낙화	2001.1.16~2001.7.1	
	〃	**김영식**	**2001.7.2~현재**	
양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정기원	1998.10.1~2001.1.15	
	〃	**김현옥**	**2001.1.16~현재**	
염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동욱	1999.10.1~2001.1.15	
	〃	박원희	2001.1.16~2002.1.17	
	〃	**김덕룡**	**2002.1.18~현재**	

사무과직원 명단

□ 사무과장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지방행정사무관	최 종 식	1952.10.20	2001.1.16~현재	

□ 전문위원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지방행정사무관	김 찬 수	1955. 9.28	2001.1.16~현재	

□ 사무직원

연번	직 위(급)	성 명	담 당 업 무	근무기간	비고
1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 의정업무, 종합계획 추진	1997. 7.15~현재	
2	지방행정주사보	김남희	의정업무, 예산, 보안	1997. 7.15~현재	
3	〃	이석원	의사업무, 회의개최	1997. 7.29~현재	
4	〃	서준영	의사업무, 회의개최	1999. 4. 1 ~2000.12.31	전출
5	지방행정서기	김하형	의정업무, 의전업무, 대외협력	2001. 1. 1 ~2001. 6.11	시전출
6	〃	남영호	의정업무, 의전업무, 대외협력	2001. 6.12~현재	
7	지방행정서기보	김용희	서무, 청사관리, 물품관리	1999.10. 1 ~2001. 7.25	8급승진 전보
8	〃	손삼승	서무, 의안처리, 물품관리	2001. 7.26~현재	
9	지방기능9급	김은영	의안처리, 의회홍보	1997.11.15 ~2000.12.31	전출
10	〃	신정자	의전업무, 홈페이지관리	2001. 1. 1~현재	
11	〃	허순자	속기, 녹음	1997. 7.15~현재	
12	지방기능10급	이동천	차량관리	1997. 7.15~현재	
13	〃	엄현주	속기, 녹음	1997. 7.29~현재	
14	〃	민갑규	청사관리, 의회홍보	2001. 1. 1~현재	

지방선거현황(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기초의원(북구)

선거구명	선거인수(부재자)	투표자수(부재자)	유효득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79,943 (1,264)	47,812 (1,171)				46,700	1,112	32,131
농소1동			**이재경**	정치락	신정순	계		
	11,171 (181)	6,667 (167)	**2,504**	2,210	1,814	6,528	139	4,504
농소2동			이찬동	**김재근**		계		
	14,375 (174)	8,244 (166)	3,781	**4,248**		8,029	215	6,131
농소3동			**김대영**	류학열		계		
	14,983 (167)	7,977 (149)	**4,676**	3,058		7,734	243	7,006
강동동			송정조	이상길	**윤임지**	계		
	4,383 (82)	3,296 (76)	908	1,039	**1,260**	3,207	89	1,087
효문동			**류재건**	김종문		계		
	11,977 (198)	7,343 (179)	**4,292**	2,894		7,186	157	4,634
송정동			정수용	**김진영**		계		
	8,555 (152)	5,592 (141)	2,568	**2,926**		5,494	98	2,963
양정동			이경호	**류인목**		계		
	7,666 (140)	4,861 (135)	1,937	**2,852**		4,789	72	2,805
염포동			이상걸	**하인규**		계		
	6,833 (170)	3,832 (158)	1,855	**1,878**		3,733	99	3,001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기초단체장(구청장 · 군수)

선거구명	선거인수(부재자)	투표자수(부재자)	유효득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계	722,806 (17,166)	378,111 (15,653)						371,783	6,348	344,675
중구			한나라당	무소속				계		
			조용수	전나명						
	162,972 (4,217)	81,206 (3,851)	47,457	31,851				79,308	1,898	81,766
남구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계		
			이채익	임동호	김진석					
	234,702 (6,077)	108,734 (5,487)	70,758	9,893	26,679			107,330	1,404	125,968
동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계		
			송인국	이갑용	서진곤	정천석				
	125,305 (3,243)	70,930 (3,023)	12,119	24,289	15,476	18,138		70,022	908	54,375
북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계		
			김수헌	이상범						
	79,943 (1,264)	47,795 (1,171)	22,631	24,494				46,925	870	32,148
울주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계		
			엄창섭	한채화	김종길	박진구	이형철			
	119,884 (2,365)	69,446 (2,121)	30,184	2,760	6,689	26,493	2,072	68,198	1,268	50,418

□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2000.4.13)

선거구명	선거인수(부재자)	투표자수(부재자)	유효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681,718 (15,430)	402,989 (14,221)						398,534	4,455	278,729
중구			한나라당	민주당	민국당	무소속	무소속	계		
			김태호	문병원	유송근	박삼주	송철호			
	155,973 (3,909)	88,904 (3,609)	42,144	5,150	5,463	1,598	33,548	87,903	1,001	67,069
남구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주노동당	계		
			최병국	이규정	차수명	한만우	윤인섭			
	216,271 (5,282)	123,813 (4,827)	64,152	18,251	12,277	7,588	20,594	122,862	951	92,458
동구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용학	이갑용	정몽준					
	122,027 (3,005)	84,201 (2,845)	2,882	29,288	51,346			83,516	685	37,826
북구			한나라당	민주당	민국당	민주노동당		계		
			윤두환	이상헌	서동우	최용규				
	75,413 (1,157)	45,700 (1,067)	19,430	4,170	2,684	18,867		45,151	549	29,713
울주군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계		
			권기술	윤광일	박정근					
	112,034 (2,077)	60,371 (1,873)	40,460	7,736	10,906			59,102	1,269	51,663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광역단체장(시장)

선거구명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자수 (부재자)	유효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계		
			박맹우	송철호	안승천			
계	722,806 (17,166)	378,121 (15,653)	**197,772**	162,546	12,329	372,647	5,474	344,685
중 구	162,972 (4,217)	81,207 (3,851)	**45,410**	32,569	2,113	80,092	1,115	81,765
남 구	234,702 (6,077)	108,730 (5,487)	**63,805**	40,808	2,996	107,609	1,121	125,972
동 구	125,305 (3,243)	70,935 (3,023)	28,200	**39,071**	2,693	69,964	971	54,370
북 구	79,943 (1,264)	47,783 (1,171)	20,174	**25,593**	1,424	47,191	592	32,160
울주군	119,884 (2,365)	69,466 (2,121)	**40,183**	24,505	3,103	67,791	1,675	50,41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광역의원(북구)

선거구명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자수 (부재자)	유효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79,943 (1,264)	47,816 (1,171)			46,701	1,115	32,127
제1선거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계		
			박천동	박병우			
	24,109 (415)	15,557 (384)	**8,847**	6,249	15,096	461	8,552
제2선거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계		
			강석구	이성근			
	29,358 (341)	16,221 (315)	**8,440**	7,469	15,909	312	13,137
제3선거구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계		
			정윤석	윤종오			
	26,476 (508)	16,038 (472)	7,036	**8,660**	15,696	342	10,438